

2024 제22대 총선(국회의원 선거)

# 정책·비전 제안서

- 교육
- 노동
- 사회복지
- 생명존중·자살예방
- 생태·환경
- 이주난민
- 주거·부동산
- 정치개혁
- 한반도·평화
- 청년

| 발간 2024. 01. 04.

| 주최 제22대 총선 정책·비전제안을 위한 기독교시민운동연대

| 문의 02-794-6200 [www.cemk.org](http://www.cemk.org)

**발간일** 2024년 1월 4일

**주 최** 2024년 제22대 총선 정책·비전제안을 위한 기독교시민운동연대

**문 의** 02-794-6200, cemk@hanmail.net

**[www.cemk.org](http://www.cemk.org)**

본 제안서는 (사)기독교윤리실천운동 홈페이지 자료실에서 파일로 내려 받으실 수 있습니다.

# 2024년 제22대 총선 <정책·비전 제안서>를 펴내며

4년에 한 번 치러지는 대한민국 국회의원 선거는 우리 사회 구성원들이 자신의 의견과 요구를 표출하며 정치적 '대리인'을 선출하는 중요한 기회입니다. 따라서 선거를 통해 국회의원과 정당이 국가 권력의 한 축으로서 그 기능과 역할을 책임 있게 수행하고 민생 문제 해결을 위한 법과 제도를 도입하고 추진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이에 '기독교시민운동연대'는 복음의 가치와 공공성을 기반으로 사회 각 영역에서 전문적으로 연구하고 활동해 온 핵심 가치들을 모아 2024년의 현안에 맞게 정리하여 발표합니다. 사회 각 분야별 비전과 주요 정책을 제안함으로써 국회가 성숙한 입법 활동, 정치 활동을 통해 한국 사회가 당면한 문제들을 해소하고, 모두를 위한 더 나은 세상을 만들어 갈 수 있도록 촉구하고자 합니다.

이 자료가 한국 사회가 지향해야 할 비전과, 약자와 이 세계에 정의와 평화가 깃들도록 하기 위한 과제에 대하여 깊이 고민하고 토론하는데 유용하게 쓰이기를 기대합니다. 기독교민들이 건강한 관점과 책임 있는 자세로 22대 총선과 정치에 관심 갖고 참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2024년 1월 4일

2024년 제22대 총선 정책·비전 제안을 위한 기독교시민운동연대

# ■ 목 차

분야	정책	
1	<b>교육</b> 1. 모두를 위한 교육, 학생 중심의 교육 2. 경쟁교육 완화 3. 학교 자율성 확대와 관료제 극복	06p
2	<b>사회 복지 (노인)</b> 1. 실효성있는 노인일자리 프로그램 개발 방안 및 대책대 2. 독거노인 등 고독사 예방 및 존엄한 죽음을 위한 예방적 접근 정책	18p
3	<b>생태 · 환경</b> 1. 기후정의법 제정 2.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탈핵에너지전환정책 3.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공공성 강화 4. 기후위기 적응을 위한 재난 안전체계 마련 5. 기후위기 적응을 위한 농어업정책 6. 난개발 방지 정책 7. 일본 방사성 오염수 해양투기 문제 대응	28p
4	<b>주거 · 부동산</b> 1. 전세제도의 연착륙 2. 부담가능주택의 지속 공급을 위한 청약제도 개편 3. 보유세 강화를 통한 주택의 투자상품 성격 약화	38p
5	<b>한반도 · 평화</b> 1. 한반도 평화를 위한 정치철학적 기반 조성 2. ‘한반도 인권’ 차원의 정책 설정 3. 남북 간 접촉, 협력 재개 및 경험집단 보존 4. 막연하고 일방적 통일론(교육)의 개혁	44p
6	<b>노동</b> 1. 근로기준법, 노동조합법 개정 2.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특별법 3. 노동자 생명안전 적극 보장 4. 노동시간 하한선 규정 5. 노동인권교육 강화 6. 기후위기 시대 정의로운 산업 전환 주도	50p
7	<b>생명존중 · 자살예방</b> 1. 자살예방을 위한 제도 및 법률 구체화 2. 자살예방을 위한 실무역량 구축 및 전문가 양성 3. 생명지원센터(LIFE CENTER)를 통한 위기지원, 유가족지원을 위한 민간협(위탁) 센터 설립	58p

분야	정책	
8	<b>이주 난민</b>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사업장변경 지역제한 철회 및 사업장 변경 자유 보장</li> <li>2. 농어촌 이주노동자들에 대한 인신매매 근절</li> <li>3. 이주노동자의 주거권 보장</li> <li>4. 이주노동자 임금체불 근절 및 대책 마련</li> <li>5. 미등록 이주민 단속추방 중단 및 체류권 부여</li> <li>6. 이주노동자 지원 인프라 확충</li> <li>7. 이주민 건강보험 차별 근절</li> <li>8. 국제기준에 부합하는 난민지위심사 실시</li> <li>9. 인도적체류자의 처우 보장</li> <li>10. 이주민에 대한 자의적 구금 금지</li> </ol>	64p
9	<b>정치 개혁</b>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유권자의 표현의 자유 보장</li> <li>2. 국회의원 선거제도의 비례성 향상 방안</li> <li>3. 정당설립요건의 완화 및 지역정당제도의 도입</li> <li>4. 대통령 및 지자체 단체장 결선투표제 도입</li> <li>5. 선거공영제 확대</li> <li>6. 근로자 및 장애인의 투표권의 실질적 보장</li> <li>7. 국회의원의 과도한 특권 축소</li> <li>8. 고위공직자 인사청문회 제도의 개선</li> </ol>	74p
10	<b>청년</b>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참여•권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정부부처 및 자치단체, 국회자문단, 사회문제 해결 기구에 청년 참여 확대</li> <li>- 청년 정책 제안 플랫폼 운영</li> </ul> </li> <li>2. 교육 - 온라인 학습포털 운영</li> <li>3. 일자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청년 일경험 보장제도 신설</li> <li>- 국민취업지원제도 내에 근로기준법 교육 포함</li> </ul> </li> <li>4. 주거 - 청년주거혁신: 주거안정성과 질적 향상을 위한 지역별 대응 정책</li> <li>5. 복지•문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마음건강검진을 통한 청년 정신건강 향상과 사회적 인식 제고</li> <li>- 1인 가구 소외를 막는 건강한 지역 공동체 문화 형성</li> </ul> </li> </ol>	84p
<b>■ 총선정책제안 기독교시민운동연대 참여 단위 소개</b>		96p

---

## 제22대 총선 정책·비전 제안

# - 교육 -

---

분야	교육
목차	1. 모두를 위한 교육, 학생 중심의 교육 2. 경쟁교육 완화 3. 학교 자율성 확대와 관료제 극복
단체 및 담당자명	(사)좋은교사운동, 한성준 공동대표
전화번호	02-876-4078
이메일	kangtong2@naver.com

## ■ 교육 분야의 현실과 개혁 방향

교사가 학교를 떠나고 세상을 등지는 엄혹한 시대를 살고 있다. <좋은교사운동>은 회원을 대상으로 자기 주변에 휴직을 하거나 사직한 교사의 수를 물었다. 1~2명이 59%로 가장 많았고, 3~4명은 26%, 5~6명은 3%로 나왔다. 7명 이상이라는 응답도 2%가 있었다. 응답 비율을 합쳐 보면 90%가 넘는 선생님들이 주변에서 학교를 떠나는 선생님들을 경험하고 있는 것이다. 교단을 떠나는 교사들의 문제가 생각보다 훨씬 일반적인 문제가 된 상황임을 추측할 수 있었다.

지난여름 전국의 교사들이 거리로 나와 요구했던 것은 교육이 가능한 학교를 만들어 달라는 외침이었다. 더 이상 교사가 세상을 등지지 않고, 학생들이 스스로 몸에 상처를 내고 삶을 마치는 비극이 더 이상 일어나지 않는 대한민국의 교실을 만들어 달라는 요구였다. 그렇다면 선생님들의 공교육 회복 열망이 교권을 보호하는 것을 시작으로 공교육의 회복으로까지 이어지고 있는가. 안타깝게도 교육정책의 제도적 뒷받침이 미비하여 선생님들의 변화를 위한 갈망이 현장의 변화로 이어지고 있지는 못하는 형국이다. 지난 6월부터 10월 사이에 교육부가 발표한 교권 보호 정책이나 공교육 경쟁력 제고 방안, 학생 생활지도 고시, 2028 대학입시제도 개편 시안 등에 대한 현장의 반응은 차갑기만 하다.

이번 22대 국회의원 선거가 정책 중심의 선거가 되길 기대하며, 교육의 영역에서도 정치적 이해관계를 떠나 공교육 회복을 위한 좋은 공약들이 많이 나오기를 기대한다. 우리 교육이 교육 고통의 늪에서 빠져나와 배움의 기쁨이라는 본질을 회복하기를 소망한다. 이를 위해 '모두를 위한 교육, 학생 중심의 교육', '경쟁교육 완화', '학교 자율성 확대와 관료제 극복' 등의 3대 의제를 중심으로 관련 8개의 교육 정책을 제안한다.

### 1. 모두를 위한 교육, 학생 중심의 교육

- ① 정서행동 위기학생을 위한 지원 체계 마련
- ② 갈등의 교육적 해결을 위한 협치, 교육공동체회복위원회

### 2. 경쟁교육 완화

- ③ 수평적이고 다양한 미래형 고등학교 체제와 교육자유특구
- ④ 배움의 질을 중심에 둔 논술형 절대평가 체제 마련과 IB 학교
- ⑤ 대학 서열 해소를 위한 종합 로드맵 제시와 실현

### 3. 학교 자율성 확대와 관료제 극복

- ⑥ 늘봄학교 지역단위 운영 체계 구축
- ⑦ 내부형(평교사) 교장 공모제 확대와 학교장 직선제
- ⑧ 소규모 학교 활성화 방안 마련

# 1. 모두를 위한 교육, 학생 중심의 교육

## ■ 제안 배경 및 필요성

- 학령인구 급감의 시대에 학생 한 명, 한 명의 삶을 위한 교육이 어느 시대보다 중요함.
- 교육계의 다양한 이해관계를 중심으로 교육정책을 논의하면 교육의 주체인 학생은 늘 소외되고, 학생이 소외된 정책은 현장 적합성이나 지속성이 부족한 정책이 되는 경우가 허다함. 이에 학교 내에서 교육 고통에 가장 크게 직면하고 있는 학생을 중심에 두는 교육정책이 필요함.
- 서이초 국면에서 다른 의제에 비해 교사의 교권을 침해하고, 다른 학생의 학습권을 침해할 가능성이 높은 정서행동 위기학생에 대한 지원 방안은 충분히 다뤄지지 않음. 특별히 이들 학생들을 위한 지원 체계 마련을 위해서는 지역 사회와의 협력이 필수적이므로, 이번 총선에서 관련 정책이 공약으로 제시될 필요가 충분함.
- 우리 사회에서 학교폭력 문제는 지난 정순신 변호사 자녀 학교 폭력 논란에서 알 수 있듯이 국민적 공분을 일으키는 사안이나, 응보적 엄벌주의로 일관하는 학교폭력 정책으로 실제 학교폭력 문제의 해결의 실마리는 요원한 상태임. 학교폭력의 증가와 학교폭력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법적 다툼이 증가해 학교는 교육적 기능을 잃고 있음. 이에 갈등을 성장과 배움의 기회로 삼고 학교가 교육기관으로 다시 자리매김할 수 있는 정책 제안이 필요함.
- 학교폭력 사무 일부 교육청 이관 후에도 학교 내 관계적 폭력 문제는 다수 발생하고 있으나 학교의 갈등 해결 역량은 여전히 제자리 상태여서, 학교의 갈등 해결 역량 제고 공약이 필요함.

## ■ 세부 정책 내용 1 '정서행동 위기학생 지원 체계 마련'

- 학교 기반 정서행동 위기학생 예방 및 지원 체제 구축: 모든 학생을 대상으로 한 예방 교육 체제, 10~15% 학생을 대상으로 한 표적집단 중재를 위한 체제, 5% 가장 심각한 문제행동을 보이는 학생을 위한 개별 중재 체제 마련 필요
- 위와 같은 다차원 지원 체계 마련과 지도를 위한 정서행동 위기학생 지원 전문교사 양성과 배치
- 기존의 상담교사 활용 방안이나 심리 상담 위주의 정책 제안으로는 문제 해결이 되지 못함.
- 정서행동 위기학생 지도를 위한 교사 전문성 연수 및 교육청 차원의 문제해결 지원팀 필요
- 학교-교육청-학교 밖 전문기관 연계 지도를 위한 시범 지구 운영
- 정서행동 위기학생의 행동 지원 프로세스를 시행하기 위한 행동관찰 분석실 구축
- 학교-교육청-학교 밖 기관 연계를 위한 지역 사회 전문기관 필요. 단순 심리 상담 지원을 넘어 학교가 지역 사회와 손잡을 수 있는 전문기관 마련이 필요. 소아정신과 전문의, 청소년상담센터의 상담사나 임상심리사 등의 관련 전문기관 확충이 정책적으로 필요함.
- 정서행동 위기학생에 대한 국가 차원의 체계적 지원과 인력 확보를 위한 관련 법률 마련



■ 세부 정책 내용 2 '갈등의 교육적 해결을 위한 협치, 교육공동체회복위원회'

- 학교폭력이든 교권침해든 학교 내 갈등을 교육적으로 해결한다는 것은 갈등을 성장과 배움의 기회로 삼기 위해 학교 내 갈등의 문제를 전문적으로 접근해 전문적으로 해결하겠다는 의미임.
- 오늘의 학교 내 갈등 문제는 복합적인데 학교의 진단과 처방은 학교생활교육위원회(구. 선도위원회), 학교폭력전담기구협의회, 학교교권보호위원회 등으로 나누어 분절적으로 처리하고 있음. 그 결과 문제 해결도 안 되고, 학교는 교육공동체로서의 기능만 약화되고 있는 형국임. 학교 내 갈등의 통합적 문제에 대해 분절식 방법으로 접근해서는 학교 내 갈등의 문제를 풀 수 없음.
- 학교폭력 및 학교 내 갈등에 대한 단위 학교의 교육적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단위 학교 공동체 차원에서 갈등을 교육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논의의 장이 필요하며, 이 논의의 장으로 '교육공동체회복위원회'를 제안함.
- 갈등을 회복적 정의에 입각해 교육적으로 풀어갈 수 있는 교사 전문가, 지역 사회 전문가 양성 및 관련 전문기관 연계가 필요함.
- 갈등 중재 전문가 및 전문기관이 학교 내 갈등 문제에 연결되기 위해서는 '관계 회복 프로그램 고지 의무화'가 필요함.
- 현행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서는 관계 회복을 위한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다는 정도로 표현되어 있어, 학교가 화해를 강제하다는 우려 때문에 적극적으로 관계 회복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없음. 관련 학교 역량 및 교육청 지원도 미비함.
- 교육청 차원의 관계 회복 지원단 활성화, 학교 밖 갈등 해결 전문 기관의 확대 및 학교 연계 등이 필요하며, 강한 처벌 중심의 정책만으로는 학교폭력 문제를 해결할 수 없음.

■ 기대 및 파급 효과

- 정서행동 위기학생들에 대한 사회적 지원 체계 마련으로 교사의 교육권과 학생의 학습권이 안전하게 보장받을 수 있음.
- 정서행동 위기학생 지도에 대한 다원적 지원 체계 구축은 공교육에 대한 만족도와 신뢰도 제고로 이어질 것이며, 이는 학교가 지역 사회와 협력하는 좋은 모델이 될 수 있음.
- 갈등의 교육적 해결 역량 함양은 학생의 전인적 성장을 도모할 뿐 아니라 학교폭력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을 줄이고 보다 안전하고 협력적인 사회 문화를 만들어 내는 데 기여할 것임.

## 2. 경쟁교육 완화

### ■ 제안 배경 및 필요성

- 한 줄 세우기 경쟁교육은 사교육비 급증 및 학교 역할의 왜곡, 입시 위주의 교육과정 운영 등의 문제를 야기하는 한국 교육의 고질적인 문제임.
- 자사고-외고-국제고 존치 문제는 고교 서열화에 따른 과도한 경쟁교육과 사교육을 유발하며, 고교 서열화는 고교 교육과정 운영의 왜곡과 황폐화를 불러옴.
- 자사고-외고-국제고 존치, 내신 고1~3 전 학년 5단계 상대평가 병기, 수능 9등급 상대평가 유지 등의 정책 시행 예고로 학교 현장은 2022 개정 교육과정과 2025년 고교학점제 시행 무력화 등의 문제가 예견되는 바 이에 대한 현장의 우려가 커지고 있음.
- 이에 과도한 경쟁교육을 완화하고 학교 간 서열 체제를 해소할 수 있는 수평적 고등학교 체제 마련이 필요하며, 5지 선다형 한 줄 세우기 상대평가의 한계를 벗어날 수 있는 교육정책 제안이 필요함.
- 우리 교육이 과도한 경쟁교육으로 내몰린 것의 정점에는 대학입시가 존재하며, 5지 선다형 9등급 상대평가 체제 속에서는 미래 사회가 요구하는 삶의 역량을 길러주는 교육이 이뤄질 수 없음.
- 오늘의 대학은 학생 수 감소로 학생 모집이 안 되는 문제와 기존의 대학 서열화 문제, 두 문제를 동시에 겪고 있음. 입시 경쟁교육의 정점에서 한국교육을 가장 왜곡시키는 대학 서열화 문제 해결 없이는 경쟁교육의 문제를 풀 수 없음.

### ■ 세부 정책 내용 1 '수평적이고 다양한 미래형 고등학교 체제와 교육자유특구'

- 2021년 10월 기준으로 고등학교 전체 수 2,375개를 100%로 봤을 때 일반고는 1,615개로 68%, 자사고+외고+국제고+특목고는 237개로 10%에 해당됨. 2022학년도를 기준으로는 전국 자사고가 35개인데, 서울에만 18개가 있어 지역 편중 현상을 보임. (출처: 국회입법조사처 이덕남(2022.08.30.), 자사고와 외고·국제고 개편 정책의 쟁점 및 과제, p. 7~8)
- 학교 다양화, 학교 선택권 확대 차원에서 진행된 자사고, 외고, 국제고 존치는 이미 그 수가 많고 지역별 편중이 심한 문제를 안고 있으며, 초중학교 단계에서의 사교육비 증가와 입시경쟁 강화를 불러와 다양화가 아닌 서열화 문제를 가져왔음.
- 전국 단위 자사고의 지역인재 선발 의무화도 20% 선에 그치고 있어 지역 인재 선발로 인한 지역 교육역량 제고에도 그 효과가 미비할 것으로 예상함. 이에 과도한 수의 자사고, 외고, 국제고 설립 정책과 공약은 고교 서열 문제를 더욱 가속화하고 일반고 황폐화 문제를 야기할 것임.
- 반면 다양한 형태의 일반고는 입시 종속성을 넘어설 수 있다면 다양한 교육과정과 빛깔 있는 교육을 위해 필요할 수 있음. 이에 일반고 교육과정 다양화를 위해 '학교별 맞춤형 교육과정' 수립 퍼실리티 이터 양성 및 지원 등 일반고 중심의 지원 정책이 보다 요구됨.
- 학령인구 급감과 지역 소멸이라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한 교육자유특구 정책 또한 지역별 맞춤형 공교육 선도 역할을 할 수 있기를 기대하지만, 자사고 존치와 연계해 지역 내 또 다른 학교 서열 체제를 만들어 낼 우려가 있음. 지역 인구 소멸 방지책으로 만들어지는 교육특구 내 학교가 다른 지역 학생

유입으로 지역 자체 학생들의 진학의 문은 좁아지고, 타 지역 유입 학생은 학교 졸업 후 다시 수도권으로 몰리는 일이 반복됨. 이럴 경우 입시 경쟁은 가중되고, 사교육비는 증가할 것이며, 교육격차는 더욱 커질 수 있음. 따라서 정파를 떠나 과도한 교육자유특구 유치 공약은 그 실효성을 함께 살펴야 함.(출처: 좋은교사운동 성명서(2023.2.20.), 교육부 10대 교육개혁 정책에 대한 교육 3개 단체의 평가 결과 발표 기자회견)

### ■ 세부 정책 내용 2 ‘배움의 질을 중심에 둔 논술형 절대평가 체제 마련과 IB 학교’

- 2028 대학입시제도 개편 시안에서는 내신이나 수능에 있어 논술형 절대평가 도입을 위한 방안이 구체화되지 못하였지만, 우리 사회 경쟁교육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학생들의 배움의 질을 중심에 둔 평가 혁신 정책이 계속 입안되어야 함.
- 단순 지식 이해를 측정하는 평가에서 문제를 발견하고 해결하는 능력을 측정하는 미래형 평가로의 전환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 초등 저학년 단계부터 논술형 절대평가 도입 로드맵이 제시되어야 함.
- 선다형 평가는 지식 이해 정도를 확인하는 진단 및 형성평가로 활용하고, 총괄 평가는 쓰기, 말하기, 보고서 등의 논술형 평가로 전면 전환되어야 함.
- 평가의 객관성 확보, 내신 부풀리기 방지안, 학교 간 점수 격차 해결 방안 마련을 위해 교사 간 복수 채점, 채점 기준안 개발, 교사 평가 전문성 신장 지원을 위한 교육청 차원의 평가지원센터 설립 등의 후속 정책이 필요하며, 미래형 대입제도 마련을 위한 사회적 의견수렴 과정이 필요함.
- 또한 IB 교육은 논술형 절대평가 도입에 시사하는 바가 큰 유의미한 교육 제도이지만 현재 시도교육청별로 빠른 속도로 경쟁하듯 확산하는 과정에 있어 IB 학교의 지나친 양적 확산 정책에 대해서는 성찰과 검토가 필요함.
- IB 교육 프로그램은 미래 사회 역량 함양, 국제적으로 공인된 양질의 교육 프로그램인 것은 분명하나, 한국의 입시 체제와 고교 서열 체제 속에서 악용될 여지도 분명함. 즉 IB는 ‘양면의 칼’과 같은 제도이므로 교육부는 KB(논·서술형 평가체제) 도입 로드맵을 만들어 가는 것에 주력해야 하고, 학교 서열화, 귀족 교육화가 되지 않도록 어려운 지역부터 순차적으로, 정해진 전체 숫자(KB체제로의 시사점 도출을 위한) 안에서 한시적 운영이 필요함. IB 도입 학교에 특화된 영어, 논술 고액 사교육 시장 개막 가능성이 있으며, IB는 교육 방법과 수준이 문화자본과 학업 역량이 높은 대상으로 개발되어 난이도와 학업 부담이 존재하며, 교육부나 교육청 단위의 탑다운 정책이 아닌 단위 학교 차원의 자율적 도입이 필요함. (출처: 좋은교사운동 성명서(2023.2.20.), 교육부 10대 교육개혁 정책에 대한 교육 3개 단체의 평가 결과 발표 기자회견)

### ■ 세부 정책 내용 3 ‘대학 서열 해소를 위한 종합 로드맵 제시와 실현’

(출처: 월간 좋은교사 11월호(2021.11.), 특집 “대학 서열 해소 3단계 로드맵 실현”, P. 22~25.)

- 대학네트워크 구성을 통한 대학 입시와 대학 체제의 패러다임을 전환하는 로드맵을 제시하는 공약이 필요함. 대학네트워크 참여 대학에 대한 공동 입시, 참여 대학에 대한 전폭적 재정 지원이 이뤄져야 하며 이 과정에서 대학의 교육 자원을 공유하는 대학네트워크를 구성해야 함.
- 참여 대학의 범위를 정하는 데 있어 1단계는 국공립대학과 일부 사립대를 포함한 40여 개 대학, 2단계는 80개, 3단계는 160개 대학으로 점차 확대하는 단계적 로드맵을 제안함.

- 대학네트워크 참여 대학 입학에 위한 입시는 역시 단계별 로드맵을 따라야 함. 1단계에서는 대학네트워크에 참여하는 대학의 정원을 고려한 성적 기준을 별도로 만들어 적용하되 대학네트워크가 활성화 되고 정착될수록 대학 공부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최소한의 성적 기준을 만들어 적용함.
- 대학서열 해소 방안을 법제화하여 정책의 법적 근거를 확보하고 관련 예산 확보도 법안으로 명시할 필요가 있음. 유초중등 교육 예산을 나눠 갖는 방식이 아니라 별도의 고등교육 예산 확보가 필요함.

## ■ 기대 및 파급 효과

- 고교 서열 체제 완화로 인한 사교육비 경감 및 과도한 경쟁교육 완화
- 일반고의 고교 교육 정상화 및 다양한 교육과정 운영, 이로 인한 지역사회 일원으로 학교가 자리매김 할 수 있게 됨.
- 서열 확인이 아닌 학생 성장을 중심에 두는 평가 체제 마련으로 배움의 질 확보 및 미래 사회를 살아갈 역량을 기르는 교육이 가능해짐.
- 국가 차원의 논술형 절대평가 시스템 구축은 2022 개정 교육과정이 지향하는 ‘학생의 자기주도성, 창의력과 인성을 키워주는 개별 맞춤형 교육’, ‘학생의 삶과 연계한 깊이 있는 학습을 위한 교과교육 과정 개발’ 등의 주요 내용을 현장에 안착시킬 수 있게 함.
- 규모 있는 IB 학교 운영으로 한국형 논술형 평가 체제 구축을 위한 실행 아이디어를 도출할 수 있음.
- 대학 서열 해소로 공교육 정상화와 과도한 사교육비 문제가 해소될 수 있으며, 과도한 입시 고통이 해소되어 배움의 본질인 ‘배움의 기쁨’을 회복할 수 있음.
- 지방대학 소멸의 위기를 막고 대학 서열과 입시 성적만을 따른 진학이 아닌 진로에 따른 대학 진학으로 학생들을 미래 사회가 요구하는 역량을 갖춘 인재로 길러낼 수 있음.

### 3. 학교 자율성 확대와 관료제 극복

#### ■ 제안 배경 및 필요성

- 변화하는 시대에 맞춰 학교가 학교 운영과 교육과정 운영에 자율성을 확보하는 것은 필수적인 조치임. 또한 이를 위해서는 학교가 행정 조직으로서의 관료제를 극복하는 것이 선행되어야 함. 그러나 지금의 승진제도로는 관료제 극복이 요원하며, 2023 교육정책 중 늘봄학교 정책이 학교의 자율성에 심각한 어려움을 주고 있어, 이에 대한 대안적 교육정책과 공약 제안이 필요함.
- 부모들이 일과 육아를 병행할 수 있는 사회적 안전망이 부족한 우리 현실에서 돌봄의 사회적 필요는 매우 큰 상황임. 그러나 이 사회적 요구는 부처 간 상이한 프로그램으로 분산되어 지역단위의 통합형 돌봄체계 구축이 되어 있지 못함.
- 또한 돌봄에 대한 필요가 학교로 들어오면서 학교 내 돌봄 업무 과다로 돌봄 업무는 초등 교사 기피 업무 1순위이며, 학부모 수요를 학교가 감당하기 버거운 구조 속에서 학교 구성원 간의 갈등이 첨예화됨.
- 돌봄 사업의 확장이 늘봄학교 시범 운영으로 2023년부터 본격화되었지만 여전히 정책의 지속성과 타당성을 확보하지 못하여 지역별 편차가 크고 예산과 인력 지원도 한계 부딪히고 있음.
- 현행 교장 승진 제도는 학교장 역할을 수행할 실질적 역량을 갖추는 과정이라 보기 어려움. 교장 자격증 미소지자에게 기회가 주어지는 내부형 공모 교장의 비율이 여전히 낮은 수준이어서 교장 승진 제도 개혁에 미치는 영향이 미미함. 반면 기존의 승진제도에 따른 교장 중임은 형식적 중임 절차만 따르고 있어 승진제 개선이 제대로 이뤄지고 있지 못함.
- 또한 교장공모제 심사 시 소수 인원만이 교장 심사 과정에 참여하게 되면서 불공정 시비가 발생함. 학교에서 1순위로 결정한 후보가 교육청 2차 심사에서 뒤집히면서 학교 자치를 침해한다는 비판이 제기됨.
- 2022년 10월 기준 전교생 30명 이하 초등학교가 전체 10%나 될 만큼 학령인구 감소 문제는 심각한 상황임. 또한 학교 소멸이 지역 소멸로 이어지고 있으나 소규모 학교가 학교 자율성을 토대로 창의적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다양한 지원책이 부족한 실정임. 이에 따라 소규모 학교를 위한 지원 방안이 절실함.

#### ■ 세부 정책 내용 1 ‘늘봄학교 지역단위 운영 체계 구축’<sup>1)</sup>

- 좋은교사운동이 3회에 걸쳐 정보공개청구를 한 결과 늘봄학교 시범 운영 학교를 위한 예산 지원 지연 및 편차, 예산 지원의 지연과 편차, 돌봄전담사 등의 전문 인력 지원 부족, 지역 돌봄 체계 구축 미흡으로 인한 학교별 늘봄 사업의 편차와 학교 늘봄 업무 과중, 거점형 돌봄 센터 구축 미흡 등의 문제가 반복되고 있음을 확인함.

1) 좋은교사운동 성명서(2023. 11. 2.) 현장의 목소리를 듣지 않는 늘봄학교 사업 추진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합니다!

[표1] 4월, 6월, 9월 시기별 늘봄학교 시범 운영 현황 비교(단위:개)

시도 교육청	시범 운영 학교 수			아침돌봄 운영 학교 수			틈새돌봄 운영 학교 수			일시돌봄 운영 학교 수			저녁돌봄 운영시간 (19시 이후 운영 학교 수)		
	4월	6월	9월	4월	6월	9월	4월	6월	9월	4월	6월	9월	4월	6월	9월
경기	80	80	74	10	10	6	21	20	2	부 존재	부 존재	미 운영	80	80	12
인천	30	30	30	30	30	30	30	30	30	0	0	0	25	0	24
대전	20	20	20	14	17	17	17	17	17	13	12	8	20	20	8
경북	41	41	41	21	22	25	29	19	33	2	7	8	34	26	30
전남	43	43	50	0	0	1	43	43	13	43	43	미 운영	43	43	43
합	214	214	215	75	79	79	140	129	95	58	62	16	202	184	117

[표2] 4월, 6월, 9월 시기별 늘봄학교 인력 지원 현황 비교(단위:명)

시도 교육청	돌봄전담사			자원봉사자			한시적 기간제 교원			비정규직 행정인력		
	4월	6월	9월	4월	6월	9월	4월	6월	9월	4월	6월	9월
경기	자료 없음	자료 없음	자료 없음	자료 없음	자료 없음	0	자료 없음	56	46	자료 없음	6	15
인천	0	0	0	32	16	0	0	29	29	30	29	30
대전	0	0	0	24	24	24	20	19	19	0	0	0
경북	0	0	0	46	57	67	35	35	35	5	5	5
전남	0	0	0	36	39	38	39	39	44	0	0	0
합	0	0	0	138	136	129	94	178	173	35	40	50

[표3] 9.15자 기준 거점형 돌봄센터 구축 현황

시도 교육청	지역(위치)	명칭	이용 인원	개소 시기	사업 예산
경기	고양이룸학교 삼송캠퍼스	경기형 돌봄거점센터	80명	2024.7	23억
인천	루원지웰시티푸르지오 주상복합상가 C동 201호	서부 거점형 돌봄센터	미정	2024.3	미확인
대전	미정	미정	미정	미정	미정
경북	포항 송림초 별관(2~4층)	포항 거점형 돌봄센터	미정	2024.3	36억 2천만
전남	목포 상동초	거점형 늘봄센터	미정	2024.12	36억
충북	OO초(비공개)	거점형 늘봄센터	미확인	2026.하반기	미확인
충남	미정 (2024년 추진시작)	미정	미정	미정	미정
부산	부산교육청 구포도서관 어린이실	구포 돌봄센터	15명	2023.9.18.	시설비 250만 등

- 정규직 늘봄학교 전담 인력이 지원 공약이 필요함. 비정규직 인력과 자원봉사자를 중심으로 운영하는 방식으로는 질 높은 돌봄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없으므로 돌봄전담사를 확충하거나 돌봄 전담 인력 추가 등의 지원 정책이 추가로 필요함.
- 지역 단위 중심의 총괄 운영 체제를 하루빨리 구축해야 하며 이를 위한 정책 뒷받침이 필요함. 지금의 시범 운영처럼 학교에 모든 돌봄 업무를 부과하는 개별 학교 운영 방식으로는 사업의 지속성을 담보할 수도 없고, 또한 수요자의 요구도 충분히 반영할 수 없음.
- 돌봄은 사회적 필요가 크고 절실한 사안이므로 그에 합당한 정부와 지방정부 차원의 인력과 예산 지원, 늘봄학교 사업에 대한 지역 단위 중심의 협력적 운영 체계 마련이 뒤따라야 함. 돌봄 확대 공약이 실제 사회 변화와 실천으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선심성 확대 공약에 그쳐서는 안 되며, 돌봄 확대에 따른 구체적 인력과 재원 지원 방안이 함께 제시되어야 함.
- 늘봄학교 정책에 대해 일선 학교 현장에서는 2023년 시범 운영 과정에서 발생한 문제에 대해 개선을 요구하는 목소리를 계속 내고 있으나, 교육당국은 늘봄학교 사업을 2024년부터 전국에 확대 시행을 예고함. 현장의 개선 목소리를 외면해서는 늘봄학교 사업은 성공할 수 없으며, 그 피해는 돌봄이 필요한 국민들에게 고스란히 전가됨. 저출산과 학생 수 감소 문제 앞에서 우리 사회의 돌봄 필요에 대해 체계적으로 대응하는 지역 단위 운영 체제를 구축하는 구체적인 정책 공약이 제시되어야 함.

#### ■ 세부 정책 내용 2 ‘내부형(평교사) 교장 공모제 확대와 학교장 직선제’

- 교육청과 교육부만 바라보는 학교장 승진제도로는 교사들의 변화 동력을 모으고 교육 주체 간의 소통과 협력, 지역사회와의 공존을 이끌어내기 어려움.
- 교장 자격증 미소지자에게 기회가 주어지는 내부형 공모 교장의 비율은 2021년 9월 기준으로 2%가 안 되는 여전히 낮은 수준이지만, 내부형 교장 공모제를 통해 역량 있는 평교사 선생님들이 좋은 교장으로서 학교 혁신을 주도한 바 있음.
- 학교 자치와 학교의 교육과정 구성과 운영의 자율성 측면에서 내부형 교장 공모제 확대는 기존의 승진 제도를 기초로 한 관료적 통제와 한계에 새로운 틈을 내는 정책이 될 수 있음.
- 서이초 이후 분리학생 지도 장소와 주체, 학교장의 민원 처리 책임을 두고 학교장의 직무를 법제화하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음. 이미 내부형 평교사 공모 교장들은 기존의 교장 직무에 대해 새로운 교장의 역할을 보여주고 있으며, 교육주체와의 소통과 지역사회 연계 활동에서도 탁월한 성과를 보이고 있음. 이에 새로운 교장의 역할 모델로서도 내부형 평교사 교장 공모제 확대가 의미가 있음.
- 공모 교장 선발 과정에서 학교장 직선제 도입으로 학교 구성원의 참여를 제고할 필요가 있음. 교장선발관리위원회 1차 심사에서 3명의 후보를 결정하면, 2차 심사에서 후보자별 발표와 토론 과정을 거친 뒤 학교 구성원이 투표로 학교장 결정, 교육청 제청(교육지원청의 2차 심사 폐지)의 순으로 진행할 것을 제안함. 이럴 경우 학교 구성원의 의견이 학교장 선택에 적극 반영되고 학교장은 보다 자율적 책임 경영이 가능해짐.
- 학교장 공모 시 학생, 학부모, 교사가 함께 참여해 투표로 학교장을 결정하는 학교장 직선제 방식의 공약을 제안함.
- 기존 승진제도의 개선을 위해서는 현행 교장 중임제도의 개선이 필요함. 현재 교장은 최대 8년을 근무할 수 있으나 공모 교장 경력은 교장 경력에서 제외되고, 초임 4년 근무 후 중임 심사를 받으

대부분 중임을 하게 됨. 참고로 2016년~2020년 5년 동안 17개 시도 교장 중임 탈락률은 1.3%로 중임 심사가 매우 형식적 절차임을 알 수 있음.

- 기존 4년 교장 근무 후 다음 4년은 모두 공모를 통해서만 교장이 되도록 함. 또는 초임 4년 후 중임 심사 시 심사 기준과 심사위원 구성에 있어 현장 일반교사, 학부모, 학생의 참여와 평가가 보장되어야 함. 심사위원에 학부모 및 현장 교사 50% 이상 참여, 심사 기준 시 학교 운영 만족도, 동료교사 평가 적극 반영 등의 보완 정책이 요구됨.

### ■ 세부 정책 내용 3 ‘소규모 학교 활성화 방안 마련’

- 현재 수도권 인구 집중과 학령인구 감소로 전교생 60명 이하의 초등학교가 약 24%에 달함. 학교 소멸이 지역 소멸로 이어지지 않도록 소규모 학교 지원을 위한 특별법 마련 공약이 나와야 함.
- 전교생 60명 이하의 소규모 학교를 소규모 공동체 학교로 지정해 소규모 학교의 장점을 최대한 살릴 수 있도록, 내부형 평교사 교장 공모, 교사 근무 기간과 교육과정 편성에 대한 자율권을 부여함.
- 소규모 학교뿐만 아니라 대안 생활지도 운영 학교, 학교 부적응 학생을 위한 교육과정 운영 학교, 다문화 학생들을 위한 문화다양성 학교 등 다양한 학교들을 소규모 공동체 학교로 지정해 초·중등교육 법이나 시·도교육청의 인사 규정의 한계로 할 수 없었던 교육과정, 학년도, 학년제, 교과용 도서의 사용, 수업연한 등에 대해 새로운 운영을 시도할 기회를 부여함.
- 학생 수 감소 시기에 지역의 다양한 소규모 학교들이 지역의 문제를 끌어안고 그 고민을 학교 교육 과정에 녹여내도록 함.

### ■ 기대 및 파급 효과

- 지역단위 운영 체제 구축으로 사회적 요구가 큰 돌봄의 문제를 정부 차원의 체계적 시스템으로 소화 가능해짐.
- 개별 학교에 집중되는 업무 과부하 문제가 해소되고, 시민의 입장에서는 쉽고 빠른 돌봄 서비스를 받을 수 있음.
- 중앙과 지방 정부 차원의 돌봄 체계 구축은 저출산과 학령인구 감소 문제 해결을 위한 방안이 될 수 있음.
- 내부형 공모제 확대와 교장 직선제 도입으로 선발된 교장은 학교 구성원의 요구와 지역 사회의 특징을 반영해 학교를 운영함으로써, 학교와 지역 사회의 협력적 관계 구축이 가능해짐.
- 수직적 관료적 통제로 인한 학교 교육과정 획일화의 문제에서 벗어나 다양한 학교 교육과정 구성과 운영이 가능해짐. 이는 공교육의 신뢰 회복으로 이어질 수 있음.
- 건강하고 다양한 소규모 학교들이 활성화됨으로써 학교 소멸과 지역 소멸을 예방할 수 있으며, 다양하고 자율적인 교육과정 운영으로 학교 다양화가 가능해짐.





---

## 제22대 총선 정책·비전 제안

# - 사회복지 (노인복지) -

---

분야	사회복지 (노인복지)
목차	<ol style="list-style-type: none"><li>1. 실효성있는 노인일자리 프로그램 개발 방안 및 대책<ul style="list-style-type: none"><li>- 지속가능한 일자리 확보를 위한 전달체계 개선</li><li>- 민간형 취·창업 지원강화</li><li>- 사회서비스형 일자리 확대</li></ul></li><li>2. 독거노인 등 고독사 예방 및 존엄한 죽음을 위한 예방적 접근 정책<ul style="list-style-type: none"><li>- 고독사 위험군 발굴 및 위험 정도 판단도구 개발</li><li>- 사회적 고립 해소를 위한 연결 강화</li><li>- 생애주기별 서비스 연계·지원</li><li>- 고독사 예방관리 정책 기반 구축</li></ul></li></ol>
단체 및 담당자명	기독교윤리실천운동 사회복지위원회, 이재민 위원장
전화번호	02-794-6200
이메일	leejaemin9@hanmail.net

# ■ 사회복지(노인복지) 분야의 현실과 개혁 방향

## 신노년세대의 은퇴에 따른 일자리 수요 및 질적 확대 필요

2023년 1월 기준 국민연금 공표통계에 따르면 우리나라 국민연금 수령인의 평균 수급 금액은 61만 7천 원으로 <국민연금공단>에서 조사한 필요 최소 노후생활비 124만 3천 원의 반도 안 되는 금액을 받고 있으며, 이들 중에 130만 원 이상 수급하는 비율은 5.1%밖에 되지 않아 연금만으로 노후를 보장받지 못하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노인들은 은퇴 이후에도 생계형수입 및 자기 성취를 위해 일자리를 찾고 있으며, 2023년 <통계청>이 발표한 '1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60대 이상 취업자가 전월 대비 가장 큰 폭으로 증가하였고, 전체 취업자 증가분의 97.3%가 60세 이상으로 구성되어 노인들의 일자리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최근 신노년 세대의 은퇴자가 늘어나고 있어 노인일자리사업의 변화가 요구된다. <한국노인인력개발원>의 '신노년 세대 노인일자리 수요 추계'에 따르면 2020년 전체 노인인구 727만 중 2024년에는 신노년세대가 은퇴인구의 절반 이상을 차지할 것으로 전망된다.(한국노인인력개발원, 2019). 노인일자리사업에 새롭게 참여하게 되는 인력은 '베이비붐 세대'로서, 다양성을 띄고 있으며 욕구 수준이 높기 때문에 적절히 지원해 줄 수 있는 전문가 확보가 요구된다. 특히 노인일자리사업은 매해 공고를 통해 새로운 사업 참여자를 모집하고 있어서 연속성 및 전문성 있는 사업 운영을 위해서는 종사자들의 역량 강화가 필수적이며, 노인인력사업의 질적 성장을 위해 종사자를 대상으로 한 역량 강화 교육 체계 마련이 필요하다.

## 독거노인 및 1인 가구, 고립된 개인에 대한 예방적 정책 및 지원 프로그램 구축

또한 한국은 과거 출산억제정책으로 외동자녀가 많아졌고, 80년대 이후 이혼율 급증, 민주화 이후 개인주의적 가치관이 확산, 1998년 IMF 경제위기로 인한 직장, 금전 문제 발생 등으로 인간관계 단절이 심화되어 왔다. 그리고 이는 2000년대 이후 독신자, 이혼, 독거노인 등 독거세대의 증가로 고독사 문제로 이어졌다.

대한민국의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항'에 의하면 "고독사"란 가족, 친척 등 주변 사람들과 단절된 채 홀로 사는 사람이 자살·병사 등으로 혼자 임종을 맞고, 일정한 시간이 흐른 뒤에 발견되는 죽음을 말한다. 독거노인의 고독사와 장애인의 고독사는 가끔씩 방송과 언론의 조명을 받지만 일자리를 잃거나 사회에 적응하지 못한 독신 30~50대 중장년 남성의 고독사 문제에 대해 상대적으로 신경을 덜 쓰기도 한다. 경기불황이 장기화되면서 30대~40대 고립·은둔자들의 고독사도 점점 늘고 있다. 무관심 속에서 홀로 사망한 상태이므로 발견이 늦어지는 경우가 일반적이며 이 때문에 대부분 시체 상태도 비교적 좋지 못해 발견한 사람이나 수습하는 사람, 수습 이후 특수청소를 담당하는 사람과 청소 현장 녹화 영상을 시청하는 시청자까지 적잖은 정서적, 심리적 트라우마가 남을 수 있다.

2019년 <통계청>이 조사한 대한민국의 사회적 고립도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10%)을 훨씬 뛰어넘는 27.7%로 나타났다. 이 조사에서 청년층의 37%는 '큰돈을 빌릴 곳이 없다'고 답했고, 15%는 '몸이 아파도 집안일을 부탁할 사람이 없다'고 답했다. 한국의 사회적 돌봄 시스템은 주로 영유아와 노인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고독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독거세대를 대상으로 예방적인 접근이 매우 중요하며 지역사회 지원을 통해 노인과 고립된 개인을 정기적으로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 지원과 도움을 제공하는 프로그램을 구축하여야 한다. 또한 독거세대 구성원들에게 다양한 사회프로그램을 적극적으로 참여하도록 권유해야 한다. 예를 들어, 공동 식사 행사, 이웃 모임, 자원봉사 프로그램을 통해 개인 간의 유대감을 형성하고 공동체 의식을 키워 고독사를 예방하여야 한다.

# 1. 실효성 있는 노인일자리 프로그램 개발 방안 및 대책

## ■ 제안 배경 및 필요성

- 노인들의 일자리에 대한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노인일자리사업의 규모도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2020년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 사업 통계 동향에 따르면 2004년 35,127개의 노인일자리사업이 2020년 769,605개로 2,090.92% 증가하였음.
- 예산규모 또한 2004년 210억 원의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예산이 2020년 1조2천억 원으로 큰 폭으로 상승한 것을 확인할 수 있으나(한국노인인력개발원, 2020) 노인일자리사업의 양적 증가에 비례하여 노인일자리사업의 질적 성장도 이루어지고 있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음.
- 노인일자리사업 중도 포기 인원이 2017년 52,994명에서 2020년 85,903명으로 증가하였으며, 중도 포기 원인으로는 고령화로 인한 건강악화가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지만, 급여 및 적성·근무조건 불일치 등의 원인으로 이탈하는 비중도 커서, 노인일자리사업의 질적 성장을 위해서는 노인일자리사업 중도 포기를 줄일 수 있게 참여자의 만족도 향상과 다양한 노인일자리사업 제공이 필요함.
- 최근 신노년 세대의 은퇴자가 늘어나고 있어 노인일자리사업의 변화가 요구됨. 한국노인인력개발원의 '신노년 세대 노인일자리 수요 추계'에 따르면 2020년 전체노인인구 727만 중 2024년 에는 은퇴인구의 절반 이상을 차지할 것으로 예측됨(한국노인인력개발원, 2019).
- 한국노인인력개발원의 보고서에 따르면 신노년 세대의 특징은 교육수준이 높고 건강하며 욕구수준이 높아 준 전문적 혹은 특정 기술을 활용하는 일자리를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특히 노동취약계층인 고령자를 위한 일자리 확대 차원에서, 그리고 국가 재정 효율성 확보 차원에서 민간형 노인일자리에 대한 사회적, 정책적 중요성은 앞으로도 확대될 것으로 보임.
- 민간형 노인일자리사업은 전체 인구의 약 13%를 차지하는 베이비붐 세대의 은퇴와 노년기 진입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면서 그 중요성과 필요성이 더욱 확대되고 있음.
- 우리나라 근로자의 평균 퇴직 연령이 55세인 점을 감안할 때 우리나라 60세 이상 노년 세대는 노동시장에서 자의반 타의반으로 퇴출당하는 세대라고 볼 수 있는데 공적연금 제도마저 미성숙하여 안정적인 노후 소득을 보장하기 어려워 은퇴 이후에도 일하고자 희망하는 고령층 비중은 더욱 확대될 것으로 예상됨.

## ■ 세부 정책 내용

- [추진전략 1] 지속가능한 일자리 확보를 위한 전달체계 개선
  - ① 사회적 경제조직 등 수행기관 다변화
    - (신규 진입 유도) 사회서비스 전문분야의 사회적 협동조합 등 적극적 연계를 통한 신규 수행체계 발굴 및 진입 유인
    - (수행기관 지원 확대) 수행기관 진입 활성화 및 역량 강화를 위해 초기투자비·인력 지원, 전문가 컨설팅 등 집중지원 추진

② 지역 거버넌스 기반의 수행체계 활성화

- (지역거버넌스 구축) 지역사회 수요 및 지역 여건에 맞는 일자리 제공을 위해 지자체 중심 사업운영 모형 도입
- (지역별 지원체계 강화) 지역 내 일자리 창출 지원·연계를 위한 중앙기관(한국노인인력개발원) 네트워크 구축 등 지원체계 강화

③ 담당자수행기관 역량강화

- (담당자 교육체계 구축) 노인일자리 사업 이해도·전문성 향상과 업무 역량 증진을 위한 필수교육 체계 마련 및 채용 기준 개선
- (수행기관 역량강화) 노인일자리 유형, 기관경력 등에 따른 필요역량강화를 위한 단계별 교육체계 설계
- (참여자 역량개발 지원) 체계적 교육훈련으로 고용가능성 향상 및 양질의 일자리 연계를 위한 참여자 역량개발 지원 강화

○ [추진전략 2] 민간형 취·창업 지원강화

① 민간기업·구직노인에 대한 직간접적 지원강화

- (장기고용 유도) 시니어인턴십으로 경험이 축적된 노인이 인턴십 종료 이후에도 지속 고용될 수 있도록 '장기취업유지형' 지원 확대
- (온라인 플랫폼 활용) 노인(공급자)과 구인기업(수요자)이 온라인을 통해 직접 노인일자리에 참여하는 방식을 도입하여 사업 효율화 추진

② 다양한 근무조건·직종의 민간일자리 활성화

- (탄력 일자리 발굴·확대) 노인의 특성·욕구(근로능력, 희망시간 등) 반영하여 근무조건이 유연한 '탄력 일자리(Flexible Job) 확대 보급
- (노인 전략직종 선정·보급) 기업 채용수요 등을 고려해 근무조건이 우수하고 질 좋은 일자리를 '노인 전략직종'으로 선정·보급

③ 창업형 시장경쟁력 확보 및 자립 기반 마련

- (시장경쟁력 확보) 시장형 사업단의 시장경쟁력 확보를 위한 성장지원 확대 및 수익성 검증 강화
- (자립역량 강화) 창업 준비 중인 수행기관에 대해 지원 일몰(예: 5년) 전제로 초기투자비를 지원하는 '일몰자립제' 도입 검토
- (판로확보) 시장형사업단 등 노인생산품의 안정적 판로확보를 위해 공공기관 및 온라인 등 판로지원 확대
- (제도개선) 시장형사업단에 대한 충분한 초기지원을 위해 공익활동 이상 수준으로 지원액 상향 검토(연 267만원 → 297만원)

④ 비즈니스 단계별 성장지원 서비스 강화

- (비즈니스모델 검증 지원) 경영지도사 등 지역별 전문 자문단을 구성하여 신규 사업계획 타당성 검토 등 지원
- (성장지원센터 기능 확대) 신규 사업단에 전담 비즈니스 코치를 지정하여 진입단계부터 성장단계별 밀착 지원 추진

⑤ 민간형 일자리 사업 개선 방향 검토

- (취업형 일자리 개편) 향후 사업 운영 및 타 사업과의 연계·차별화 등 제도개선을 위한 시니어인턴십 등 개편방안 연구 추진
- (고령자친화기업 내실화) 사업 개편('23. 인증형 중심 운영) 이후 지원 강화 및 제도 내실화 방향 모색을 위한 중장기 추진방향 재설계

○ [추진전략 3] 사회서비스형 일자리 확대

① 사회서비스형 비중 확대 및 제도 개편

- (비중 확대) 신노년세대의 경험·역량을 활용할 수 있는 사회서비스 영역의 일자리 양적 확충
- (제도 개편) 근무기간 확대 및 소득 기준 외에도 활동역량, 자격·경력 등 전문성 중심으로 참여자 선발기준 개선

② 지역 문제해결 등 사회서비스 신규영역 발굴

- (지역사회 문제해결) 돌봄, 안전 등 지역사회에 필요한 사회서비스 영역의 일자리 발굴 지속.
- (공공기관 협업) 공공기관 중심으로 베이비붐 세대의 전문성·생애 경력을 활용할 수 있는 활동처 및 직무개발 확대
- (사회서비스 종사자 등 연계) 공급이 부족한 사회서비스 영역에 관련 전문 교육 이수 또는 자격 보유한 참여자가 업무 보완 역할

③ 민관 협력형 사회서비스 선도모델 활성화

- (규모 확충) 기업 사회공헌 기금 등 외부자원과 공적 지원(예산)을 매칭한 '사회서비스형 선도모델' 지속 확충
- (참여기업 확대) 참여 유도, 전략적 홍보 등 공공·민간 참여 확장
- (우수사례 확산) 사회서비스 영역에 기업의 사회공헌기금과 공공 부문 예산 등을 활용한 일자리 모델 개발 및 확산
- (사업운영 체계화) ESG성과지표 기반으로 사업영역(참여기업)·추진방식 명확화 및 효율적 실적관리 등
- (사회공헌 연계 활성화) 기업 사회공헌을 거시적이고 전체적 관점에서 연계할 수 있도록 민간단체 협약 등 연계·협력 강화

④ 참여자 직무교육 지원으로 사회서비스 공급 역량 강화

- (직무교육 체계 마련) 사회서비스 분야에서 돌봄, 요양 등 중심으로 노인 적합 직종 개발 및 참여자를 위한 직무교육 지원
- (지침 개선) 참여자 직무교육 지원체계를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수행체계별 역할 명확화(노인일자리 사업 운영안내 지침 개선 등)

■ 기대 및 파급 효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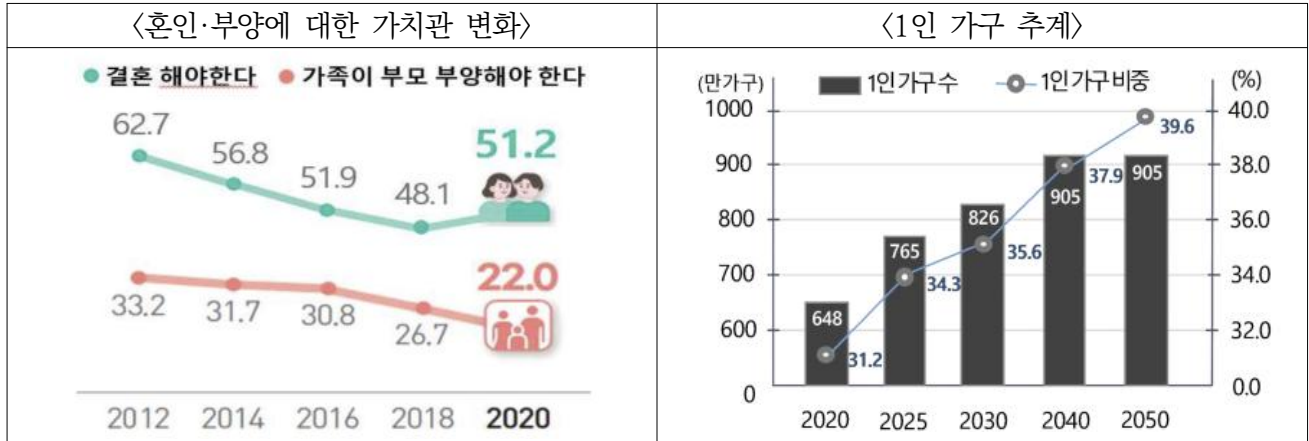
- 다양한 근무조건·직종의 일자리 활성화를 통한 노인들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
- 노인의 특성·욕구(근로능력, 희망시간 등)와 소득 등을 반영 근무조건이 유연한 '탄력적인 일자리를 확대 보급함으로써 안정적인 노후생활 보장

## 2. 독거노인 고독사 예방 및 존엄한 죽음을 위한 예방적 접근 정책

### ■ 제안 배경 및 필요성

○ 사회구조 변화에 따른 개인의 고립 및 단절 심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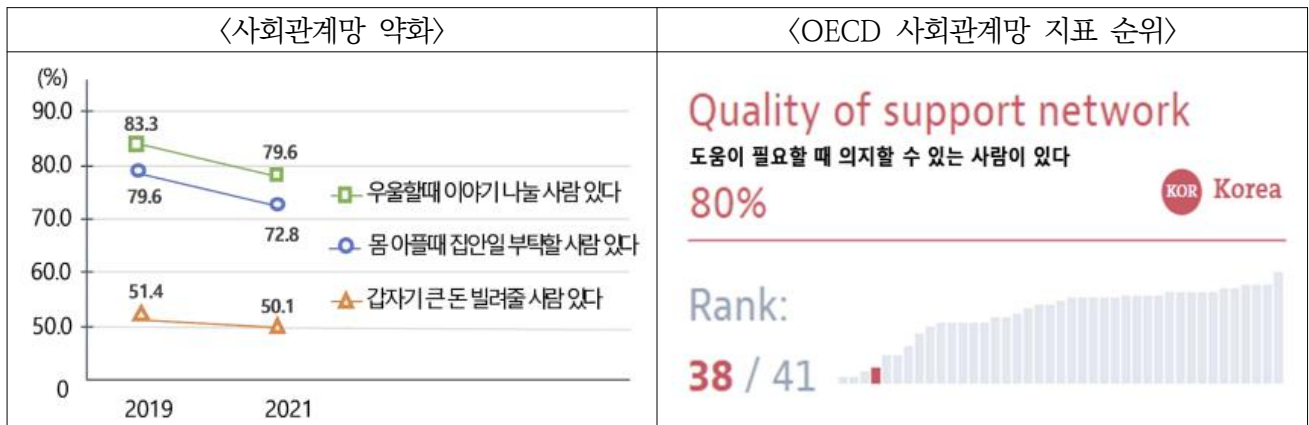
- 가족돌봄 약화 : 혼인 부양에 대한 가치관 변화, 1인 가구 중심의 가족구조 변화로 전통적 가족돌봄 기능 지속 약화



\* 자료: 통계청, 「2020년 사회조사 결과」, 「장래가구추계: 2020~2050년」

○ 사회관계망 약화 : 개인주의 문화 확산,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 장기화 등에 따라 사회 구성원 간 고립·단절 심화

- 2022년 OECD 사회관계망 지표(도움이 필요할 때 의지할 수 있는 사람이 있다) : OECD 평균(91%), 한국(38위/80%), 영국(22위/93%), 일본(29위/89%)



\* 자료: 통계청, 「2021년 사회조사 결과」 / OECD, 「Better Life Index 202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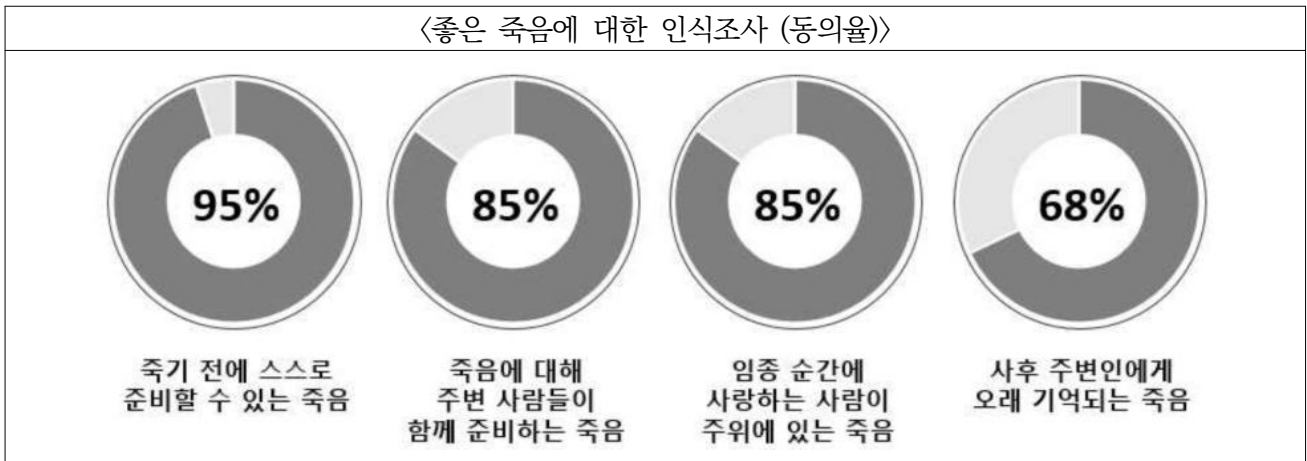
○ 고독사 증가 : 생전 사회적 고립이 장기화되어 사망까지 이어질 경우, 누구의 지원도 없이 사망 후 발견되는 고독사로 직결됨.

- 2021년 우리나라 고독사 발생은 총 3,378건으로 최근 5년간 증가추세(증가율 연 평균 8.8%)로서, 심각한 사회문제임.

○ 존엄한 죽음 보장 필요 : 고독사는 인간의 존엄이 훼손되는 사망형태로서, 존엄한 죽음을 보장하기 위한 사회적 시스템 구축과 정책이 필요함.

- 국민이 존엄과 가치는 출생부터 사망에 이르기까지 보장되어야 하며, 이에 대한 제도적 기반 마련이 필요함.

\* 헌법 제10조 :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



\*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죽음의 질 제고를 통한 노년기 존엄성 확보 방안, 2018」

○ 고독사 예방·관리 체계는 아직 미흡한 수준

- (대응기반 미약) 고독사 예방·관리를 위한 거버넌스로서 중앙부처-지자체-유관기관간 업무 네트워크 미약

- 위험군 발굴, 상담·조사, 서비스 연계·지원, 모니터링 등 고독사 예방·관리의 전 단계를 포괄하는 체계적 협업 시스템 미구축

- 고독사 통계 분석, 정보시스템 운영, 정책 지원 등을 통해 중앙부처·지자체를 각각 지원할 수 있는 전문기관도 없는 상황

- 지자체 내 고독사 업무 담당부서 불명확, 인력부족으로 고독사 예방·관리 업무 수행을 위한 전문성 및 협업 미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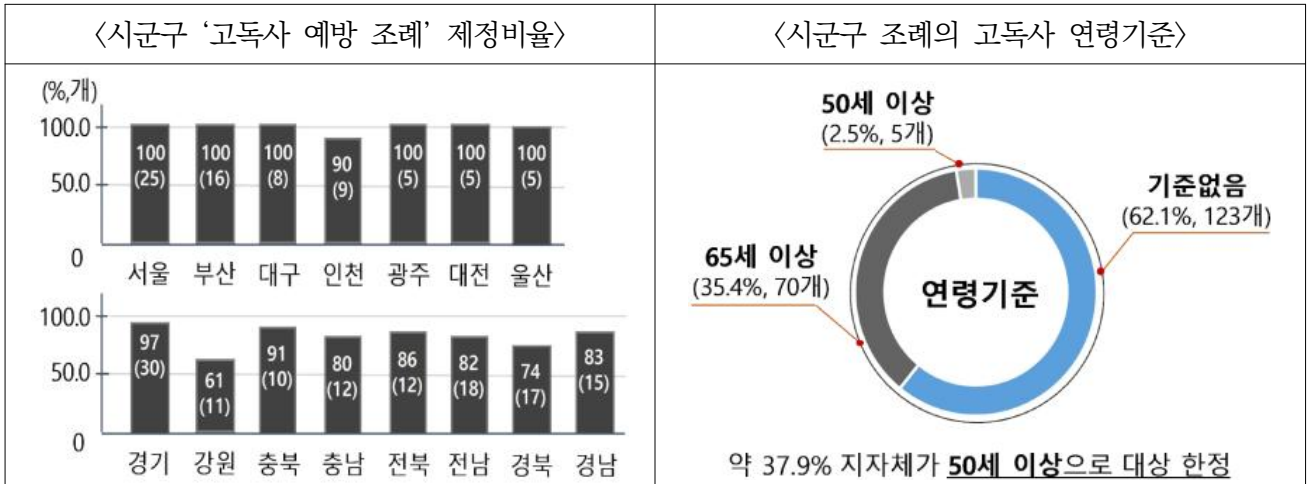
\* 229개 시군구 고독사 업무 담당인력은 총 251명(전임70명, 타업무 겸임181명/2022. 10월 기준)

\* 고독사 예방에 필요한 다양한 분야별(건강관리, 돌봄 등) 서비스가 이미 여러 사업을 통해 시행 중이나, 대상자 중심의 서비스 연계조정 미흡

○ (법률-조례 불일치) 대부분의 시군구(198개)가 ‘고독사 예방 조례’를 시행 중이나, 일부는 고독사 범위를 법률과 상이하게 규정

\* (예시) 법률은 연령 기준을 적용하지 않으나, 198개 시군구 중 75개(37.9%) 시군구는 연령 기준으로 고독사 범위를 제한(50세 이상 : 2.5% / 65세 이상 : 35.4%)





\* 자료: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law.go.kr), 2023.4월 기준

- 고독사 해결방안에 대해 최근 정부는 많은 관심을 보이고 있음.
- \*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지킬 수 있도록 하는게 복지의 출발”(대통령, '23.1.9. 복지부 업무보고)
-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5월 18일(목) 관계부처 합동으로 마련한 ‘제1차 고독사 예방 기본계획 (2023~2027년)’을 발표하였음.
- 이번 기본계획은 촘촘하고 두터운 약자복지 구현을 위한 대표 정책으로서, 임종 순간까지 인간의 존엄을 보장\*하기 위한 고독사 예방 최초의 기본계획임.
- 정부는 2027년까지 전체 사망자 100명당 고독사 수 20% 감소('21년, 1.06명 → '27년, 0.85명)를 목표로, 고독사 위험군을 발굴·지원하기 위한 인적·물적 안전망을 최대한 동원할 계획임.
- 정부가 5개년 계획에서 내세운 추진전략은 ①고독사 위험군 발굴 및 위험 정도 판단, ②사회적 고립 해소를 위한 연결 강화, ③생애주기별 서비스 연계지원, ④고독사 예방관리 정책 기반 구축임.
- 일상생활 속에서 고독사 위험군을 발굴하기 위해 고독사 예방 게이트키퍼를 양성하고, 고독사 취약 지역을 대상으로 위험군 발굴조사를 실시하며, 고독사 위험군의 특성을 반영한 고독사 위기정보 및 발굴모형을 개발함.
- 고독사 위험군의 사회적 고립을 해소하기 위해 일부 지역에서 시행 중인 ‘고독사 예방·관리 시범사업’을 확대하여 지역별 실정에 적합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건강·취업 등 위기요인 해소에 필요한 생애주기별 서비스를 집중 연계·제공함.
- \* 39개 시군구를 대상으로 지역 주도형 서비스(안부확인, 생활지원 등) 제공('22.8월~'23.12월)
- 고독사 위험군 사례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 통합사례관리사를 확충하고 고독사 정보시스템을 구축하는 한편, 중앙 및 지역 단위로 사회적 고립 예방·지원센터를 지정하여 고독사 예방·관리를 위한 민·관 협력체계를 구축을 추진함.

## ■ 세부 정책 내용

### [정책제안 1] 고독사 위험군 발굴 및 위험 정도 판단도구 개발

- 인적 안전망 등을 활용한 고독사 위험군 발굴시스템 구축
  - 고독사 예방 게이트키퍼 양성제도를 통한 누구나 쉽게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신고체계 구축
  - 시군구별 고독사 위험군 발굴 조사 추진
- 복지 사각지대 발굴시스템과 연계한 고독사 위험군 발굴
  - 고독사 위험군 발굴에 필요한 행정정보 입수확대 및 고독사 위험군 발굴을 위한 모형개발
- 고독사 위험 정도 판단도구 개발
  - 고독사 위기 점검표 개발 및 자가진단 체크리스트 개발을 통한 고독사 예방

### [정책제안 2] 사회적 고립 해소를 위한 연결 강화

- 지역주민 간 연결을 촉진하는 지역공동체 공간 조성
  - 고독사 취약 지역 내 공동체 공간 조성과 지역 내 문화기반시설을 연결 공간으로 활용
- 사회관계망 형성을 통한 지지체계 구축 및 주민관계망 형성
  - 1인 가구 사회적 고립 예방을 위한 사회관계망 형성 지원
  - 사회적 유대 강화를 위한 주민관계망 형성 지원
- 정보통신기술(ICT)을 활용한 연결 및 안부 확인
  - 대화형 인공지능(AI)을 통해 사회적 고립 완화
  - 실시간 원격점검 및 스마트기기를 활용한 안부 확인
  - 공공임대주택(LH) 내 거주하는 고독사 위험군의 응급상황 신속파악을 위해 스마트홈 플랫폼 구축

### [정책제안 3] 생애주기별 서비스 연계·지원

- 청년 위험군을 위한 정서 및 취업 지원
  - 고립·은둔 청년 발굴 및 청년 위험군에 대한 정신건강관리 강화지원 체계 마련
  - 구직단념청년 예방·관리 등을 위한 취업 지원 강화
- 중장년 위험군의 일상생활 문제 관리지원
  - 보건소 방문건강관리 대상 확대를 통해 중장년 위험군의 만성질환 관리 및 생활습관 개선 추진
  - 중장년 맞춤형 생활지원서비스 신설
  - 개입거부 중장년에 대한 사회참여 유도 모델 마련
  - 조기퇴직한 중장년 대상 재취업 지원 강화
  - 중장년에게 필요한 평생교육 강화

- 노인 위험군에 대한 지역사회 돌봄 지원
  - 의료·건강관리·돌봄 통합지원 서비스 제공
  - 노인맞춤돌봄 특화서비스 등 연계·제공
  - 노인 위험군에 대한 지지체계 구축
  - 사전 장례준비를 위한 지원 강화
- 사망자·유가족 등에 대한 사후지원
  - 시신 인수자가 없는 고독사 사망자에 대한 공영장례 확대
  - 고독사 유가족·관계자 지원
  - 고독사 사후지원 보장 보험상품 개발

#### [정책제안 4] 고독사 예방관리 정책 기반 구축

- 고독사 예방관리 수행체계 구축
  - 사회적 고립 예방·지원센터 지정
  - 지자체 업무수행 기반 강화
  - 고독사 예방·관리 업무를 위한 정보시스템 구축
  - 주기적인 고독사 사망자 및 위험군 실태파악
- 지역 주도형 서비스 신설 지원
  - 고독사 예방 서비스 전수조사 실시
  - 지역 주도형 서비스 도입·운영을 위한 지원 강화
- 고독사 예방 법·제도개선 및 인식 강화
  -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을 통한 고독사예방 제도 구축 법적 근거 강화
  - 고독사 예방·관리 활성화 강화를 위한 정책제안 및 의견수렴회 개최
  - 고독사 예방의 날 지정 및 사회적 고립 예방 캠페인 추진
  - 사회적 고립 예방 포럼 구성·운영을 통한 시민 인식 강화

#### ■ 기대 및 파급 효과

- 건강·취업 등 위기요인 해소에 필요한 생애주기별 서비스를 집중 연계·제공을 통한 고독사 예방 및 존엄한 죽음 보장
- 고독사 예방·관리 시범사업을 확대 및 정착을 통한 지역별 실정에 적합한 서비스를 구축
  - 고독사 위험군 사례관리 강화를 위한 지방자치단체 통합사례관리사를 확충 및 고독사 정보시스템 구축
  - 중앙 및 지역단위 사회적 고립 예방·지원센터 지정 및 고독사 예방·관리를 위한 민·관 협력체계 구축

---

## 제22대 총선 정책·비전 제안

# - 생태·환경 -

---

분야	생태·환경
정책명	1. 기후정의법 제정 2.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탈핵에너지전환정책 3.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공공성 강화 4. 기후위기 적응을 위한 재난 안전체계 5. 기후위기 적응을 위한 농어업정책 6. 난개발 방지 정책 7. 일본 방사성 오염수 해양투기 문제 대응
단체 및 담당자명	기독교환경운동연대, 임준형 사무국장
전화번호	02-711-8905
이메일	greenchurch@hanmail.net

## ■ 생태·환경 분야의 현실과 개혁방향

### 심각해져 가는 기후재난

2018년 폭염, 2020년 호우피해, 슈퍼태풍과 강력해진 산불 등을 비롯해 기후재난의 상황이 해를 거듭할수록 뚜렷해지고 있다. 그로 인해 사상자가 생기고, 심각한 피해를 입는 이들이 발생하고 있으며, 삶의 터전을 잃고 이재민이 되거나 삶의 근간이 되는 농토와 어업권에 피해를 입는 이들도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기후재난의 상황에서 우리의 과제는 두 가지이다. 첫 번째는 기후재난의 파국을 막기 위한 최소한의 노력인 '탄소중립'을 달성하는 것, 두 번째는 기후재난의 상황에 처한 이들과의 공생을 위한 '기후위기 적응'이다. 두 과제 모두 국가적인 노력이 필요한 상황이지만 현 정부의 대응 태도는 미온적이다 못해 역행하고 있다.

### 기후위기 대응이 불가능한 정책방향 1 - 핵발전소 중심의 탄소중립 정책

지난 정부의 2030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이하 2030 NDC)는 2030년까지 2018년 배출량의 40%를 감축하는 것이었고, 그 목표의 달성을 위해 다양한 분야의 감축 방안을 제시하고 시나리오를 작성한 바 있다. 물론 이 역시 기존의 산업구조를 탈피하거나 제대로 된 전환의 방향을 제시하지 못했고, 감축목표치 자체가 낮다는 비판에 직면했었다. 게다가 방법 역시 빠른 시일 내에 상용화되기 힘든 기술에 치중했다는 지점에서 비판받았다. 그렇게 비판에 직면했던 지난 정부의 정책보다도 이 정부의 기후위기 대응정책은 더욱 불성실할 뿐 아니라 목표의 달성에 도움이 되지 못할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온실가스를 배출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핵발전을 늘리겠다고 선언하고, 노후핵발전소를 폐쇄하지 않는 것을 통해 핵발전 비중을 높여 석탄발전 등의 화석연료 발전을 줄이겠다고 한 것이다. 이는 핵발전소 1기를 세우는데 드는 기간과 비용, 그리고 사회적 갈등을 생각했을 때도 그렇고, 추후 발생하는 사용 후 핵연료라는 고준위 핵폐기물의 처분도 그렇고, 전혀 현실성이 없는 방안이다. 더불어 핵발전으로 석탄화력발전을 대체하기 위해서는 핵발전소를 수 십 기 더 건설해야 한다는 사실을 생각한다면 가능하지 않은 대책이다. 더불어 한국의 핵발전소 기술이 유럽의 그린 텍소노미가 제시한 핵발전소 안전 기준에 도달할 가능성이 없고, RE100에 핵발전이 포함되지 않는 등의 이유로 인해 자국 내에서도 재생에너지에 대한 수요가 높아져 갈텐데 이에 대한 대책 등은 전혀 포함하고 있지 않다. 더불어 성장하던 재생에너지 산업에 대한 지원과 투자를 끊어 성장동력을 망가뜨리는 상황에까지 이르고 있다.

### 기후위기 대응이 불가능한 정책방향 2 - 공공성의 약화

기후재난은 공공영역 강화와 더불어 기후적응을 위한 연구 및 정책대응이 필요하다. 그러나 현 정부는 재생에너지와 기후위기 대응 R&D 예산을 삭감하는 등 거꾸로 가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기후위기 상황이 극심해질수록 극한의 기후들이 반복적으로 나타나고, 그로 인한 고통은 사회적 약자에게 더 큰 고통을 안겨준다. 전기와 가스 등의 공공요금에 인상되는 것은 극한 기온에서 생존을 위협하는 약재가 되고 있다. 더불어 공기업의 적자해소를 위해 추가 요금 인상 논의가 지속되고, 게다가 공공영역에 대한 민영화 추진이라는 이야기가 끊이지 않는 상황이다. 이는 고통을 가중시키는 정책방향임은 물론이고, 공공의 영역의 축소가 가져올 비용 상승이 기후위기 대응 의지마저 꺾을 수 있는 상황이다.

### 기후위기 대응이 불가능한 정책방향 3 - 재난대응 시스템 오작동

매년 심각한 재난이 찾아오지만 이에 대한 대비나 대응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 재난 대응 매뉴얼이나 프로세스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여러 차례 확인했으며, 이로 인해 수많은 이들이 기후 재난으로 인해 목숨을 잃었다. 정부는 책임을 떠넘기기 급급했으며, 사실상 재난에서 컨트롤타워는 존재하지 않았다. 이는 수많은 인재로 이어졌으며, 기후위기가 지속적으로 재난을 불러올 것이라는 사실을 인지한다면 현재 재난 상황의 컨트롤타워 부재가 얼마나 심각한 위기를 낳을 수 있는지 불을 보듯 뻔한 상황이다. 기상관측을 통해 여름과 겨울의 상황이 대략 예측이 가능하고, 이를 통해 이미 수차례 경고가 된 부분에 대해서도 현 정부는 대응에 실패하는 모습을 여러 차례 보여주었다.

### 기후위기 대응이 불가능한 정책방향 4 - 농어업 정책 부재

농민과 어민을 비롯한 인간 생존의 기본이 되는 먹거리의 생산자들은 현재 기후위기의 최전선에 놓여있다. 기후위기가 초래하는 여러 변화로 인해 작물의 생장 환경이 극단적으로 바뀌는 사과 과수원을 차치하고서라도 폭염과 폭우, 홍수해, 태풍, 한파와 같은 조건들은 작물의 생장에 심각한 영향을 끼치고 한해 농사를 망치는 원인이 되기도 한다. 어업 역시 해양산성화와 산호초 백화, 해수온도 상승과 해류의 변화 등으로 인해 기존의 어업이 불가능하게 되고, 어족자원의 상실과 같은 상황으로 이어지기도 한다. 이러한 상황에도 정부의 대응정책은 딱히 존재하지 않는다.

### 생태계 파괴와 생물종 다양성 상실을 부추기는 난개발

기후위기 상황에서 생물종 다양성 및 생태계 보전 자체가 중요한 의미가 되고 있다. 자연적인 원시림, 개울로부터 시작하여 작은 하천에서 큰 강, 그리고 하구의 갯벌로 이어지는 물줄기, 논과 저수지, 둠벙, 호수 같은 습지, 들판과 풀꽃 이 모든 생태계가 다양한 생물종이 공존한다. 이는 상호간의 이해를 바탕으로 서로 조화로운 생태계를 이루는 방식을 발견하고 짧게는 수 십 년 길게는 수 천 년, 수만 년간을 발전시켜 온 결과물이다. 이러한 조화를 깨뜨릴 때 찾아오는 변화는 생물종 멸종으로 이어지거나 장기적으로는 생태계의 생명력을 상실시키는 방향으로 이어지게 마련이다. 작은 훼손을 넘어 대규모 개발공사가 진행될 때 일어나는 폐죽음, 그리고 그로인해 벌어지는 연쇄작용들은 인간의 삶에까지 영향을 미친다. 하지만 환경부의 규제기관으로서의 역할을 기대할 수 없는 상황이며, 정부와 국회, 지자체에 이르기까지 선심성 개발공약들을 남발하고 있다.

### 윤석열 정부 일본 방사성 오염수 대응의 문제

일본 정부의 일본 방사성 오염수 해양투기가 진행 중이며,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오염수의 상당량을 공유지인 바다에 투기하려는 계획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현 정부는 안전검증도 되지 않은 방사성 오염수를 바다에 투기하는 일본 정부에 대해 대응하거나 검증을 요구하기는커녕 묵인했다. 심지어 정부의 예산을 투입하여 오염수의 안전성을 홍보하는 자료를 만들거나 일본 정부의 편을 들어 자국민들을 비난하는 태도까지 보였다. 이로 인해 많은 어민들과 수산업자들이 고통을 겪고 있고, 시민들이 두려움에 떠는 상황이다. 정부는 국제해양법 관련 제소 등을 통해 막아볼 수 있었던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전혀 고려하지 않았고, 해양투기 외의 다른 안전한 방식에 대한 요구 등도 가능했던 상황에서 한국 정부는 전혀 그런 노력을 기울이지 않았다.

# 1. 기후정의법 제정

## ■ 제안 배경 및 필요성

- 전 지구적 기후위기 상황 극복을 위한 국가 차원의 방안 마련 필요
  - UN을 통해 각 국가의 기후위기 대응 탄소감축계획 요구 되고 있음
  - 한국의 경우 2030년 감축목표치 40%가 부족하다는 지적이 끊임없이 제기되었으나 현정부는 이마저도 달성 불가능을 이유로 조정하려고 감사원 감사 결과를 근거로 시도 중인 상황
- 정의로운 기후위기 문제 해결 필요
  -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이 국회를 통과했으나 여러 가지 면에서 문제점이 지적되고 있음
  - 그간 탄소배출로 부를 축적해온 기업들의 책임에 대한 문제제기에도 불구하고 산업계는 감축목표치에서 그리고 '녹색성장'이 법안에 반영됨을 통해 오히려 책임을 벗어나 더 많은 부를 축적할 수 있는 기회를 얻음
  - 가장 심각한 피해에 직면하게 될 당사자들(농민, 청소년 등)에 대한 정의로운 전환의 구체적인 방안이 법안에 반영되어 있지 않음

## ■ 세부 정책 내용

- 2030 NDC 50% 이상으로 상향 및 감축 방안 및 경로 명확화
  -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치의 현실화 필요
  - 경로와 방향 등을 명확히 제시하여 지속적으로 사회가 나아갈 방향을 제시
  - 기술공학적 해결방식 상용화 전까지 목표 수치에 반영중지
- 기후위기 시대 정의에 걸맞는 법으로의 개정 필요
  - 기업의 그린워싱 내지는 새로운 부가가치 창출이 아닌 그간 발생한 기후위기의 책임을 위해 그간 기후위기에 기여한 만큼의 비용을 지불하는 일종의 '삭개오세'가 필요
  - 삭개오세를 통해 징수한 세금을 정의로운 전환을 위한 비용과 피해구제를 위해 사용
    - 삭개오세 : 세리 삭개오가 회심 후 가난한 자의 구제를 위해 절반의 재산을 쓰고, 속여 빼앗은 것은 네갑절을 갚겠다고 한 것처럼 탄소배출에 영향을 미친 이들이 기후위기에 기여한 만큼의 비용을 지불하는 것을 세금제도로 반영하자는 제안
  - 사회 전환의 구체적인 방안을 고려하고, 큰 피해가 예상되는 이들을 구제할 세부적인 방안을 법령에 반영
  - 산업부문 감축목표치 상향 및 기업별로 감축 방안 및 실행계획 제출 등을 요구할 수 있는 법안 마련

## ■ 기대 및 파급 효과

- 기후위기 대응의 남은 10년 가량의 시간을 위한 구체적 목표가 수립되어야 기후위기를 막을 수 있고, 기업과 사회 전반의 긍정적인 변화를 추동할 수 있는 상황이 됨
- 정의로운 기후위기 대응을 통해 일어날 피해를 최소화하고 공존과 공생의 기틀을 마련할 수 있음

## 2.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탈핵에너지전환정책

### ■ 제안 배경 및 필요성

- 기후위기 상황에 적합한 에너지 전환 정책 필요
  - 탄소 배출저감을 위한 탈탄소정책은 필수불가결한 상황
  - 에너지 부문의 탈탄소 정책을 위한 시급한 방향의 전환이 필요함
  - 대규모 토목건설이나 주민수용성이 떨어지는 발전소의 경우 건설기한으로 인해 탄소중립으로 가는 경로 달성이 불가능하게 만드는 요인이 될 가능성이 있음
- 국제적 추세에 적합한 에너지 전환 정책 추진이 요구됨
  - RE100 캠페인 등 전세계적으로 수많은 기업들이 참여한 가운데 국내 부품기업들 역시 이러한 요구에 발맞추어야 하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국내 인프라가 받쳐주지 못하는 상황임
- 국가에너지기본계획 전면 재검토 필요
  - 향후 발전소 건설 및 관련 시설 설비 건설에 영향을 주는 기본 계획에 있어 기술발전과 산업구조 변화에 따른 에너지 절감이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에너지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이라 예상하여 계획을 수립함
- 신규원전 추진 중단, 노후원전 조기폐쇄와 더불어 조속한 탈핵이 필요
  - 탈원전 선언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구체적인 탈원전 로드맵이 부재하고, 정부의 탈원전 정책은 2080년이 한참 지난 다음 달성되는 것으로 목표를 설정함에 따라 미래 세대에게 핵발전과 핵쓰레기의 위험과 처리를 떠넘기는 상황
  - 소형모듈원전(SMR) 등 크기만 작은 핵발전소를 기후위기의 대안이 될 수 있는 것처럼 선전하고 국민들을 속이고 있음
-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 탈석탄이 절실함에도 불구하고 신규 화력발전소가 지속적으로 건설중임
  - 삼척 블루파워를 비롯한 건설중인 석탄화력 발전소로 인해 자연환경 파괴(맹방해변 침식 등) 및 다양한 문제가 발생 중임에도 민간 발전사가 건설하고 있는 발전소를 중단시키거나 백지화할 수 있는 법령과 방안이 미비
- 재생에너지로의 전환을 위한 진흥책 및 구체적 로드맵 마련 필요
  - 재생에너지로의 전환을 위한 개인, 지역, 기업, 국가적 계획이 없고, 장기적 계획도 부족
  - FIT(발전차액지원제도)나 설치비용의 지원 등이 미약하고, 개인의 참여에 대해 제한적이라 유인책으로서의 역할을 못함

### ■ 세부 정책 내용

- 탈석탄법 제정
  - 2022년 국회의 국민동의청원을 통해 5만 명이 동참하여 탈석탄법 제정을 촉구했고, 그로 인해 금번 21대 국회의 과제로 떠올랐으나 국회가 이를 통과시키지 않고 계류 중에 있으나 21대 국회 회기 중 통과 가능성 현저함, 차기 국회의 중요 과제로 삼아 제정필요



- 국가에너지기본계획 전면 재검토
  - 에너지 기본 계획을 전면 재검토하여 현실화
  - 에너지 수요감축 및 효율화 방안을 고려하여 기본 계획 다시 수립
- 탈핵 에너지 전환 기본법 제정
  - 신규원전 추진 중단, 노후원전 조기폐쇄, 설계수명 미만의 원전 조기폐쇄 가능토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한 탈핵기본법 마련(국가에너지기본계획의 수요감축분 반영하여 조기폐쇄)
  - 탈석탄을 위해 신규 석탄화력발전소 건설 중단이 가능토록 법령 제정, 단 매몰비용의 보상 등을 법령을 통해 명시
  - 재생에너지 100%로 발전 할 수 있는 여건 마련을 위해 연도별 목표치 수립 및 유인책 마련
  - 재생에너지가 생태계를 훼손하지 않도록 환경저감대책 법안에 반영

#### ■ 기대 및 파급 효과

- 탈핵, 탈석탄 사회로의 전환을 통해 핵사고와 기후위기의 위험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계기가 마련 됨
- 재생에너지 100% 달성을 통해 에너지 원료 수입국의 지위를 벗어나고 안보의 측면에서 위험을 낮춤

### 3.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공공성 강화

#### ■ 제안 배경 및 필요성

- 기후위기 상황의 최전선 공동체를 지키기 위한 수단 필요
  - 기후재난 상황에서 가장 큰 피해를 입을 가능성이 큰 사람들을 돌볼 법적 수단이 필요한 상황
  - 에너지 빈곤층을 비롯한 사회적 취약계층이 더 큰 재난에 직면하거나 생명의 위협을 당할 상황으로부터 보호해야 함
  - 재난의 상황에서 공공성의 약화는 공동체의 존립에 위기 상황을 초래할 수 있음
- 교통정책의 경우 공공성의 강화가 민간영역에 두는 것보다 탄소 감축에 필수적임
  - 지역의 경우 인구소멸 등으로 인한 버스 운행 감소 및 다양한 문제를 준공영제를 통해 해소해왔으나 일부 목적과 다른 방식으로 왜곡되어 운영되거나 파행을 면치 못하는 경우들이 많음
  - 준공영제 역시 비용대비 효율의 측면에서 건강한 대안으로 작동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음
  - 인구감축으로 인해 운영이 힘든 경우가 대부분인 지방과 마을버스 등은 여전히 노선이 사라지는 경우가 많음
  - 자연스럽게 자가용 이용 인구가 유입되고, 탄소배출 증가의 주된 원인이 되는 경우임

#### ■ 세부 정책 내용

- 에너지 공공성 강화
  - 에너지 기본권 중심으로 에너지 공급정책 재수립
  - 기업 및 부유층 책임강화
  - 에너지 빈곤층의 상황에 대한 개선
- 전기, 가스, 수도 민영화 금지
  - 민간 주도의 경쟁은 요금인하 및 효율화 효과 없고, 특히나 재난상황에서 요금인상을 막을 수 없는 위험성이 존재하므로 민영화를 막을 필요가 존재함
  - 전기, 가스, 수도 등의 생활 유지에 필수적인 부분들은 공기업의 방만 경영의 문제나 도덕적 헤이가 아닌 이상 정부가 적자를 보전할 수 있고 공공성을 유지할 수 있는 체계가 필요
- 공공교통 정책 강화
  - 지방과 동네를 도는 마을버스의 경우 완전공영제 등을 통해 유지 및 공공성 강화필요
  - 광역교통망의 경우 철도를 이용한 공공교통망의 강화를 꾀할 필요가 있음
  - 승용차보다 공공교통이 편리한 체계 검토 및 구축 필요

#### ■ 기대 및 파급 효과

- 최소한의 생존여건 구축
  - 공공성이 강화된 체계 및 공적 영역에서의 관리를 통해 에너지 빈곤층과 같은 기후위기 상황의 최일선 공동체가 최소한의 생존여건을 구축할 수 있음
- 탄소배출 감축
  - 공공성을 기반으로 정부 혹은 지방자치단체의 통제가 가능한 경우 탄소배출 감축을 위한 노력을 기울이기 편리한 구조 마련 가능

## 4. 기후위기 적응을 위한 재난 안전체계 마련

### ■ 제안 배경 및 필요성

- 기후재난의 심화
  - 기후재난의 양상이 다양해지고, 극한 기후의 발생 빈도수 높아짐
  - 극한 기후로 인한 재난 상황의 다양한 양상 모두에 대비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에 가까운 상황
  - 제방 등의 대비책이 무용지물이 되는 경우 발생
- 재난 안전체계 마비
  - 현 정부의 재난 컨트롤타워 부재
  - 재난 안전을 위한 비상체계 미비하거나 작동 실패

### ■ 세부 정책 내용

- 재난 대비시스템 강화
  - 기후위기 적응의 일환으로 재난 예측을 위한 시스템 강화
  - 홍수 대비를 위한 하천제방정비
  - 가뭄 대비를 위한 물 관리 체계구축
- 기후위기적응을 위한 위원회 신설 및 대응계획 수립
  - 재난 안전 전문가 및 기후변화의 영향에 관한 전문가, 도시 및 도로, 하천제방 등 각 분야의 전문가를 망라한 위원회를 구축
  - 위원회를 통해 지역의 세부적인 기후적응 과제를 만들어 재난에 선제적 대응 필요
  - 재난 상황에서 불가피한 피해발생시 안전계획을 자치단체별로 수립하고 이행계획 발표 및 훈련 등을 통해 공무원 및 시민들의 대응능력 상승
- 정부의 재난 안전 책임강화 및 책임자 처벌
  - 재난안전 주무부처의 책임을 강화하고 관리미흡 또는 대응 실패로 인한 인명사고 발생 시 주무부처 최고 책임자에 대한 처벌 규정 강화

### ■ 기대 및 파급 효과

- 재난 대비시스템 강화를 통해 사전예방
  - 재난대비 시스템의 강화를 통해 극한상황의 기후재난으로 인한 피해를 줄임
  - 인명 및 재산 피해를 사전 예방함을 통해 사회적 비용 감소
- 정부의 재난 대비 책임 강화
  - 재난 상황에서 책임강화를 통해 책임자의 적절한 대응을 기대

## 5. 기후위기 적응을 위한 농어업정책

### ■ 제안 배경 및 필요성

- 기후재난 상황에서 식량난 위험 증가
  - 기후 요인으로 인한 농수산물 생산량 감소 위험 존재
  - 식량자급율이 낮은 대한민국의 경우 식량이 안보의 위협으로 비화할 수도 있음
- 먹거리 부분 탄소배출량 감소정책 부재
  - 삶에 필수적인 부분이지만 농업부문 탄소배출량이 적지 않은 비중을 차지함
  - 규모가 있는 농어업의 경우 화석연료를 통한 생산이 주요한 상황이므로 이를 해결할 대안이 필요함

### ■ 세부 정책 내용

- 농어민기본소득
  - 먹거리를 책임지는 이들의 생계가 무너지지 않도록 삶의 안전망을 마련
  - 기후재난으로 인한 농어업 실패의 책임이 생산자들에게 전가되지 않는 체계구축
- 식량 자급률 상향을 위한 방안마련
  - 식량안보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자급율 제고 및 농어업을 통한 먹거리 생산의 지속가능체계 구축
- 농어업 탄소배출 감축을 위한 로드맵마련
  - 탄소배출 저감을 위한 노력을 기울일 수 있도록 인센티브 제도 등 고민 필요
  - 농기계 및 선박의 탄소배출 등을 감소시킬 방안을 마련하여 전환해갈 구체적 경로 제시

### ■ 기대 및 파급 효과

- 지속가능한 농어업
  - 지속가능한 농어업을 통한 사회적 비용감소
- 식량자급률 제고를 통한 외부위협 감소
  - 식량자급율의 제고를 통해 물가 상승을 비롯한 위험요인을 통제, 식량 안보문제로 이어질 수 있는 위험차단
- 농어업 탄소배출 감축
  - 실질적인 먹거리 생산에서 탄소배출량 감축을 통해 기후위기 대응

## 6. 난개발 방지 정책

### ■ 제안 배경 및 필요성

- 난개발로 인한 생태계 파괴 심화
  - 국립공원 혹은 생태자연도 1등급 지역도 개발의 대상으로 전략
  - 생물종 다양성 감소와 산림파괴로 인한 탄소배출 심각
  - 무분별한 파괴가 결국 인간의 피해로 이어지는 상황 발생(산사태, 어업권 상실, 지하수 고갈 등)
- 선심성 공약과 예타면제로 인한 개발 계획 난립
  - 보전을 위해 다양한 규제가 존재하지만 환경영향평가 등을 무력화할 수단이 여전히 존재함
  - 공공의 생태계 서비스 측면이 무시당하고 일부사업자의 돈벌이 수단으로 전략
- 생태계 보전 및 생물종 다양성 보전을 위한 정책부재
  - 생태계(ecosystem)에 대한 이해부족으로 인한 규제정책의 미비
  - 보전필요성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놓은 정책의 부재로 인해 개발에 대한 탐욕을 제어할 방법이 없음

### ■ 세부 정책 내용

- 국립공원 개발 제한
  - 국립공원은 기본적으로 보전을 원칙으로 한 공간임을 기본 전제로 국립공원법 개정
  - 상업적 목적을 위한 형상 변경 원천 금지
- 선심성 공약 중단 및 예타 면제 금지
  - 국회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장들의 선심성 개발공약 중단결의
  - 예비타당성 및 환경영향평가 강화를 통한 개발제한
  - 환경영향평가 강화 및 환경영향평가서 조작 등 처벌강화
  - 개발로 인한 공공성의 저해나 피해가 드러날 경우 구상권을 통해 보상체계 마련 및 복구
- 생태계 보전 및 생물종 다양성 보전을 위한 정책 수립
  - 생태계 보전 및 생물종 다양성 보전을 위한 협약 등을 통해 국제사회와 한 약속을 지키기 위한 정책을 실행

### ■ 기대 및 파급 효과

- 국립공원을 비롯한 보전가치가 높은 지역의 보전
  - 미래세대가 향유할 자연자원을 지키고 보전함
  - 국립공원 등의 상업적 활용가능성 배제를 통해 공공의 이익을 증대시킴
- 선심성 공약 중단 결의를 통한 무의미하고 무분별한 개발 중단
  - 공익성과 수익성이 없는 사업의 추진으로 인한 비용의 낭비를 줄임
  - 지역의 애물단지로 전략할 위험이 있는 사업 원천 배제
- 생태계 보전 및 생물종 다양성 보전을 통한 생태계 서비스
  - 공공의 이익을 위한 생태계 서비스의 유지와 보전을 통해 행정 비용감소 및 안전증대

## 5. 일본 방사성 오염수 해양투기 문제 대응

### ■ 제안 배경 및 필요성

- 일본 방사성 오염수 해양투기
  - 후쿠시마 핵사고 이후 지속적으로 발생 중인 핵폐기물 중 액체 방사성 폐기물인 사고 후 핵연료 냉각수의 해양투기 진행 중
  - 상당한 양의 오염물질을 포함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검증되지 않은 정화장치인 다핵종제거설비(ALPS)를 통한 정화를 전제로 해양투기계획을 수립하고 발표
  - 전체 과정에서 주변국가 및 직접적인 영향을 받을 태평양 연안 국가들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강행
  - 검증을 주도한 국제원자력기구(IAEA)는 방사성물질의 인체영향, 생태계 영향 등을 평가할 전문가 집단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국제원자력기구의 발표를 근거로 투기 결정
  - 가장 값이 싸고 일본 입장에서 간편한 해양투기 외에 다른 대안 염두에 두지 않음
- 한국정부의 부적절한 대응
  - 자체적 검증 노력 대신 일본정부와 도쿄전력의 주장을 무비판적으로 수용
  - 국가 예산을 통해 일본 정부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홍보대응 문건 및 영상 제작 배포
  - 일본의 해양 투기로 인한 불안 해소를 위해 해양투기를 막았다면 지출하지 않아도 될, 혹은 국제사법 시스템을 통해 배상요구까지도 가능할 수산물의 방사성 물질검출 등을 위한 검사 비용 등 지출하지 않아도 될 예산의 편성과 지출이 이루어짐

### ■ 세부 정책 내용

- 정부부처 압박
  - 일본 방사성 오염수 관련 대응에 적극적으로 나섰어야 했던 부처를 중심으로 대정부질의 등을 통한 압박
  - 국정조사 등을 통해 의사결정과정을 면밀히 살피고 책임자의 부정이나 비위 발견시 고발 등의 조치
  - 정부가 적극적으로 대응에 나서도록 압박 실시
- 일본 수산물 전면 수입금지 실시
  - 일본 방사성 오염수 해양투기 중단 시까지 일본산 수산물 및 수산가공품의 수입을 전면 금지하는 한시적 특별법 결의
- 피해가 예상되는 어민, 수산업자 보호정책 실시
  - 해양투기가 시작됨에 따라 피해를 당하는 어민과 수산업자들의 피해를 보상하는 정책 마련 및 보상금 지급

### ■ 기대 및 파급 효과

- 해양투기 중단
  - 정부의 제소 등이 이루어진다면 국제 해양법 등의 절차를 통해 해양투기 중단 혹은 가처분을 통한 일시 중지도 가능한 상황
- 안전하고 깨끗한 해양생태계 보전
- 안전하고 깨끗한 먹거리 보장, 방사성 물질로 인한 피해 예방



---

## 제22대 총선 정책·비전 제안

# - 주거·부동산 -

---

분야	주거/부동산
목차	1. 전세제도의 정착률 2. 부담가능주택의 지속 공급을 위한 청약제도 개편 3. 보유세 강화를 통한 주택의 투자상품 성격 약화
단체 및 담당자명	희년함께, 작성자(이성영 전 토지정의센터장), 담당자(김덕영 상임대표)
전화번호	010-3887-6160
이메일	hgakor@daum.net



## ■ 주거·부동산 분야의 현실과 개혁방향

주거와 부동산 문제는 역대 선거의 승패를 좌우할 정도의 파급력이 있는 이슈이다. 2024년 총선을 앞두고 수도권 메가시티, 신생아청년 우대 대출, 그린벨트 해제 등 부동산가격 상승을 유도하는 정책공약들이 쏟아지고 있다. 총선이 다가올수록 용적률 완화 공약이 여야 구분 없이 경쟁적으로 지역을 도배할 가능성이 크다. 하지만 국민들의 욕망을 자극하는 대중추수주의적 정책으로 총선 경쟁을 하기에는 대한민국의 상황이 심상치 않다.

GDP 대비 가계부채(전세보증금 포함) 비율은 압도적으로 OECD 1위를 차지하고, 경기순환에 따라 거품이 빠져야 할 부동산가격은 정부의 떠받치기 정책으로 인해 거품이 빠지지 않고 있어 한국 경제의 체질을 쇠약하게 만들고 있다. 한국의 독특한 제도인 전세제도는 부동산 경기 상승 국면에서는 주택 가격과 전세보증금의 거품을 키우고 집값 하락 국면에서는 전세사기로 인해 수많은 청년·신혼부부들이 전 재산을 잃게 만들며 빚더미에 앉게 만들고 있다. 반면 저소득층에게 내집마련을 돕기 위해 만들어졌던 주택청약시장은 소수에게 막대한 시세차익을 얻게 해주는 로또시장, 투기판으로 변질되어 국민들의 사행심을 조장하고 있다. 부동산의 투자상품적 성격은 더욱 강화되어 하루의 절반 가까운 시간을 보내는 일터와 노동의 가치를 하찮게 여기고 하루바삐 부동산 투자 성공을 통해 경제적 자유를 얻어 일터를 탈출하겠다는 꿈이 신성시 여겨지는 사회로 변질되고 있다. 대한민국의 성장기를 이끌었던 근면·성실·협동의 가치는 퇴색되고 사회가 함께 만든 노력의 결과물을 개인이 먼저 가져가려고 하는 지대추구 사회로 추락하고 있다.

간신히 선진국에 들어선 대한민국 호를 전복시킬 수 있는 저출생과 지역소멸이라는 삼각파도가 몰아치고 있는 시점에 진행되는 2024년 총선은, 급격히 노쇠해가고 있는 대한민국의 체질을 근본적으로 개편하는 몸매 좋은 약을 약속하는 선거가 되어야 한다. 유권자들의 욕망을 자극하는 사탕발린 공약이 아닌 대한민국의 체질을 개선할 수 있는 정책 경쟁이 일어나야 하는 중차대한 시기이다.

주거/부동산 분야에서는 전세사기 피해 구제대책과 함께 전세제도를 떠받치는 정책의 구조 개편을 통해 전세제도의 연착륙을 유도해야 한다. 소수에게 막대한 혜택을 주는 로또가 되어버린 청약구조를 적정한 가격의 주택을 지속적으로 공급할 수 있는 청약구조로 개편해야 한다. 근본적으로 토지보유세 강화를 통해 지대추구를 근절하여 투자상품이 되어버린 주택을 삶의 터전으로 되돌려놓아야 한다.

# 1. 전세제도의 연착륙

## ■ 제안 배경 및 필요성

- OECD 선진국에서는 찾아보기 힘든 전세제도가 한국에서 유지되는 이유는 전세자금대출 보증, 전세보증보험 등 전세주택에 대한 정부의 과도한 인센티브가 기여한 바가 큼
- 과거 세입자들의 주거비를 낮추어주고 내집마련의 디딤돌이 되었던 전세제도는 현재는 득보다 실이 더 커진 상황임. 주택가격 상승기에는 전세보증금이 갭투기의 마중물이 되어 주택가격을 폭등시켜 내 집마련을 더욱 어렵게 만들고, 주택가격 하락기에는 깡통전세로 인한 전세보증금 미반환 사건/사고를 빈번히 발생시키고 있음.
- 전세의 존속 여부는 시장에 맡겨두되, 정부는 전세에 대한 과도한 정책적 인센티브를 서서히 줄여나갈 필요가 있음

## ■ 세부 정책 내용

- 전세자금대출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포함
  - 전세자금대출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에 포함시켜 전세자금대출이 과도하게 나가 전세보증금을 끌어올리는 역할 방지
- 전세자금대출의 정부 보증한도 축소
  - 전세자금대출의 정부 보증한도를 축소하여 은행은 대출에 대해 엄격히 심사 하도록 유도해야 함
- 전세보증보험의 보호한도 하향
  - 현재 주택도시보증공사의 전세보증보험 보호한도는 전세보증금이 주택가격의 90%까지 보호해주고 있지만 임차인의 전세보증금 보호를 위해서는 주택가격과 전세보증금의 갭이 더 벌어지도록 유도해야 함. 전세보증보험 보호한도를 주택가격의 70% 수준까지 낮춘다면 주택가격과 전세보증금의 갭은 최대 70% 수준으로 벌어질 수 있기에 전세보증금 보호한도를 하향하여 전세주택을 반전세, 보증부월세 주택으로 전환하도록 유도할 필요 있음
- 월세 인센티브 강화, 임대차 보호법 강화를 통한 주거비 급등 방지
  - 갑작스러운 전세주택의 축소는 저금리 기조에서 전세에 익숙해진 시민들이 주거비 압박을 느낄 수 있기에 월세에 대한 세액공제 등 월세에 부과하는 정책 인센티브와 임대차 보호법 강화를 통해 전세에서 반전세, 보증부 월세로 전환했을 때 주거비 급등을 방지해야 함

## ■ 기대 및 파급 효과

- 양질의 임대사업자 형성
  - 전세가 보편화된 한국에서는 갭투자를 통한 시세차익을 얻으려는 소규모 임대사업자 중심이 되어 있지만 월세 수익이 발생하면 운영관리를 통한 임대수익을 얻으려는 양질의 임대사업자들이 양산될 수 있음

## 2. 부담가능주택의 지속 공급을 위한 청약제도 개편

### ■ 제안 배경 및 필요성

#### ○ 분양주택의 로또화

- 대부분의 분양주택은 분양가상한제 적용으로 시세보다 저렴하게 아파트를 구입할 수 있어 무주택자들의 내집마련 기회로 활용되고 있음. 하지만 대기자(청약통장 가입자 수 약 2,800만, 청약 1순위 1,200만 명 이상)에 비해 공급물량이 매우 부족해 소수의 청약당첨자에게 수억의 시세차익이 발생하는 분양주택의 로또화 현상 발생하고 있음. 정부 주도의 택지공급 및 분양가상한제 적용 목적이 국민들의 주거안정이라면 무조건 저렴한 가격으로 소유권을 넘기는 방식은 지양할 필요가 있음. 시세보다 저렴하게 공급해 부담가능한 주택으로 공급하는 것은 유지하되 추후 매각 시 공공에 환매토록 하여 시세차익을 개인이 전부 가져가는 방식이 아닌 시세차익을 공공과 나누는 방식으로 분양주택 공급 전환 필요

#### ○ 한시적인 부담가능주택

- 현재 신혼희망타운·나눔형 공공분양주택 등 일부 공공분양주택은 저렴하게 주택을 공급하면서도 과도한 시세차익을 막기 위해 지분공유·수익공유 모델로 설계되었지만 이마저도 수분양자에게만 적용되어 1회성 부담가능주택으로 머물고 있음

### ■ 세부 정책 내용

#### ○ 공공분양주택의 지분공유·수익공유·토지임대부 주택의 전면 공급

- 공공택지를 통해 공급하는 공공분양주택 물량은 지분공유·수익공유·토지임대부 주택 등으로 공급하여 시세보다 저렴하게 내집마련을 할 수 있도록 하되 추후 매각 시 공공과 시세차익을 나눔으로 과도한 불로소득에 대한 기대를 차단해야 함

#### ○ 1회성이 아닌 지속적인 부담가능주택 공급

- 한번 부담가능주택으로 공급한 물량은 환매 후 시장가격으로 시장에 파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부담가능주택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법 개정 필요

### ■ 기대 및 파급 효과

#### ○ 분양주택의 로또화 방지

- 청약 당첨만 되면 수억의 시세차익 발생하는 아파트 단지의 청약경쟁률을 언론이 보도하면서 국민들의 사행심이 더욱 강화되는 악순환이 발생하고 있음. 상당부분의 토지불로소득 환수를 통해 대규모 투전판이 되어버린 청약시장을 실거주자들이 내집마련을 하는 시장으로 되돌려 놓을 수 있음

#### ○ 저소득층의 자산형성 지원

- 부담가능주택의 재고가 쌓이고 부담가능주택을 무주택 저소득층 중심으로 배분하면 저렴하게 거주하면서도 시세차익의 일부를 얻을 수 있기에 저소득층의 자산형성을 지원하는 효과 발생

### 3. 보유세 강화를 통한 주택의 투자상품 성격 약화

#### ■ 제안 배경 및 필요성

- 지대 환수가 미약한 한국의 조세 구조 위에 아파트 중심으로 환금성이 높아져 주택의 상품화 경향 심화
  - 입지적 요인으로 발생하는 지대 환수가 미약한 한국의 조세 구조와 지속적인 경제의 고성장 국면으로 인해 기본적으로 주택의 투자수익률이 좋음. 여기에 저금리 국면, 전세자금대출 등 대규모 유동성 공급이 더해져 주택의 사용가치보다 투자가치적 성격이 강화되어 가격의 급등락 변동 폭이 커짐
- 보유세 강화/거래세 완화 중심의 조세제도 개편을 통해 부동산의 투자수익률을 떨어뜨려 사용가치의 성격을 강화하고 투자가치의 성격을 약화시켜야 함

#### ■ 세부 정책 내용

-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 추진
  - 현재의 공시가격은 조세·복지 등 사회 여러 분야에 활용되고 있지만 50~70%의 낮은 시세반영률과 유형·가격대별 현실화율의 차이가 있어 조세부담 및 복지혜택의 불형평·불균형 문제를 해결할 수 없기에 유형·가격대별 현실화율의 차이를 줄이고 시세의 8-90% 수준으로 공시가격을 올리는 로드맵 재추진 필요
- 공정시장가액비율 폐지
  - 조세의 부과는 반드시 법률에 의하여야 한다는 조세법률주의는 대한민국 헌법 제59조에 규정되어 있지만 공정시장가액비율이라는 제도를 만들어 행정부 자의적으로 세금을 조정하고 있음. 공정시장가액비율 제도를 폐지하여 조세법률주의를 확립할 필요 있음
- 토지 중심의 보유세제 원칙 확립
  - 부동산 불로소득의 핵심은 토지에 있으며 건물에 대한 세금 부과는 주택신축과 리모델링 등에 페널티를 주는 효과가 있기에 토지를 중심으로 보유세제를 개편할 필요가 있음. 토지 중심의 보유세제 개편을 통해 토지불로소득 환수와 도심토지의 밀도 있는 사용을 유도할 필요 있음

#### ■ 기대 및 파급 효과

- 땅이 아닌 땀의 가치가 존중받는 사회
  - 대다수 국민의 꿈이 주식과 부동산으로 큰 돈을 벌며 하루속히 경제적 자유를 얻겠다는 사회는 성장과 성숙이 일어나기 어려운 사회가 됨. 토지불로소득에 대한 환수는 불로소득이 아닌 노동소득의 가치를 우대하고 땀 흘려 일하는 사람들이 존중받는 사회의 토대가 됨



---

## 제22대 총선 정책·비전 제안

# - 한반도·평화 -

---

분야	한반도·평화
목차	1. 한반도 평화를 위한 정치철학적 기반 조성 2. '한반도 인권' 차원의 정책 설정 3. 남북 간 접촉, 협력 재개 및 경험집단 보존 4. 막연하고 일방적 통일론(교육)의 개혁
단체 및 담당자명	기독교활동가, 윤환철
전화번호	010-5341-0008
이메일	goodngo@empal.com

## ■ 한반도·평화를 위한 개혁방향

기반이 흔들리는 통일·한반도 담론, 신속한 변화와 대응이 절실한 한반도

2021년, 북한은 ‘로동당규약’을 개정하면서 그들의 통일 이론이라고 할 수 있는 이른바 ‘남조선 혁명론’을 ‘당면과제’에서 삭제하였고, 이후 이국(異國) 입장을 강화하고 있다. 우크라이나 전쟁과 미국의 단기적 이해관계에 따라 조성된 북중러에 대한 견제는 그 3개 국가의 협력을 강화하여 북한의 발사체 계 발전을 앞당기는 아이러니를 낳았다. 대한민국은 전 유럽을 합한 것보다 더 많은 포탄을 우크라이나에 제공한 셈이 되었고, 결과적으로 남북의 포탄이 우크라이나에서 교차되는 진풍경을 보고 있다.

대한민국의 공론장과 공교육, 정부는 이러한 변화에 아랑곳없이 분단 이래 효능감을 갖지 못한 통일론, 특히 고토회복의 흡수통일론에만 매달려 내부 설득조차 실패하면서 집행을 위한 집행이라는 무한 궤도를 벗어나지 못한다. 윤석열 대통령은 후보 시절 ‘선제타격’을 외마디 구호로 내놓았고, 시대착오적인 ‘힘에 의한 평화’라는 선동적 어휘를 정책이라며 제시한다. 대한민국은 안보에 있어 내부적으로 최악의 상황에 놓여있다.

평화를 열망하는 시민사회는 한반도 평화라는 높은 수준의 난제와 각종 정책들에 합리성이 결여된 정부라는 이중고를 겪고 있다. 시민들의 선택은 평화를 향한 더 급진적 개혁이 될 수밖에 없으며, 이는 체제 자체와 분단에 대한 정치철학적 이해를 새로 하고, 과거에는 합리적이라고 생각해 왔으나, 분단 극복에 효능을 보지 못하는 정책과 지향 자체에 대한 개혁에 나서야 한다.

아무리 둘러봐도 현재의 정부여당이 이러한 작업에 나설 의도나 실력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면 야당들이 나서서 그 보완재, 미래의 준비에 나서야만 한다. 진정한 정치인이라면 자신의 집권에만 골몰할 것이 아니라 모든 정치적 임기에 책임을 느끼고 상응하는 주도면밀한 행동을 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이 제안서를 받는 후보들은 자신들의 입장이 무엇이든 시민사회의 경고와 우려를 경청해주기를 바란다. 웬만하면 시민사회는 중립적 언어에 머물고 싶다. 그러나 이번에 왜 그렇지 않은지 스스로를 돌아보기를 권고한다.

# 1. 한반도 평화를 위한 정치철학적 기반 조성

## ■ 제안 배경 및 필요성

- 이른바, '분단 모순'은 헌법상 영토조항으로 대표되는 대결적 흡수통일론을 전제로, 남북 간 평화적 접근이나 협력을 추진하는 실행적 모순(모순에 따른 모순)을 노정한다. 이는 경합하는 정파들 간 상반된 입장은 물론, 같은 정파 내에서도 양립 불가능한 정책 이력(대북 제재와 소통 = 현 정부가 제시한 원칙)을 내세우는 구체적 모순을 낳고 있다.(이는 이후 세대에 대한 교육, 외국인에 대한 설명을 불가능하게 한다)
- 통일부는 '상호 존중에 기반 한 남북관계'를 추구한다고 명시한다. 그렇다면 그에 상응하는 대북 메시지, 대국민 메시지, 조치, 제안, 협력사업 유지 이력(履歷)이 나타나야 한다. 명시와 이력이 상반될 때 그 명시는 거짓이다. 이런 현상이 반복되는 것은 안보와 평화 문제가 기밀로 둘러싸인 특수지역의 영역인데다, 남북 간 오랜 적대 관계가 접근은 어렵고 깨기는 쉬운 상태이기 때문이다.
- 시민들은 정파들이 득표만을 목표로 한다는 가정이 불가피하기 때문에(최악의 정파가 표준이 됨) 이 정책 제안을 진지하게 듣는 정파는 협력적 평화의 개념을 적극 전파하는 것이 '표'의 숫자로만 계산될 최악의 정치 지형에서도 그 국민들로 인하여 평화를 지향을 잃지 않게 하는 것이다.

## ■ 세부 정책 내용

- 헌법 내의 모순(특히 제3조와 제4조)을 바로잡는 것을 목표로 이를 공론화 해야 하며
- 개정 이전까지 입법·사법·행정부 공동으로 본 건에 한하여 헌법적 제약의 예외를 선언함으로써 자유로운 학문을 보장하고, 교육과정의 실효와 효능을 기하여야 한다.

## ■ 기대 및 파급 효과

- 분단의 일방에 갇힌 논의에서 벗어남으로써 분단 문제를 해결할 효능을 갖추게 될 것이다.
- 본원적 합리성은 대북 협상력을 높이고, 차세대와 국제사회에 대한 유효한 호소에 성공함으로써 세대 간 협력, 국제 협력을 이끌어낼 수 있다.
- 대북 관계를 긴장~위기 국면에서 벗어나게 하지 못하다가 '총풍' 사건과 같이 위험한 뒷거래를 시도하거나, 이해당사자들을 무시하고 개성공단을 폐쇄하는 등 '정책'이라고 하기 힘든 현상을 감소시킬 수 있다.



## 2. '한반도 인권' 차원의 정책 설정

### ■ 제안 배경 및 필요성

- [분류문제]정부는 '남북 간 인도적 문제'의 범주에 대북인도적 지원, 이산가족, 납북자, 북한인권 증진, 북한이탈주민 지원을 포함하고 있다. 이는 개념적 타당성은 어느 정도 인정되나 대상, 위치, 정책 추진의 방향으로 볼 때 재분류할 필요가 있다. 대북 인도지원과 이산가족 상봉은 사실상 교환조건인 경우가 많았기에 하나로 묶을 수 있다. 납북자, 국군포로는 이산가족의 범주에 넣어 상봉한 경험이 있다. 그러나 북한(내) 인권 증진은 북한 당국이 압박으로 받아들이며, 국제적 협력도 필요하기에 분류(와 이에 따른 담당 부서)를 달리해야만 한다.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은 그 현실이 국내의 특수 취약계층이므로 사실상 내국인의 인권과 복지 증진으로 연결되기에 정책 역시 연계하는 것이 타당하다.
- [한반도 인권] 한반도의 인권 참상은 6.25 전쟁으로 인해 극에 달했다. 인민군과 국군, 미군(연합군)에 의한 민간인 희생과 학살이 있었다. 이산가족 역시 일방의 문제가 아니다. 따라서 이 문제의 이름은 '한반도 인권'이 합당하다. 정확한 조사가 불가능한 '북한 내 인권'에 관한 예산과 인력을 배정하고 조사와 해원이 가능한 남한 내 학살 문제를 도외시하는 것(그래서 피해자 스스로 힘겨운 자력구제에 나서게 만드는 것)은 '인권'을 대결의 명분으로 삼아 대중을 호도하고 인권 의지를 소모하는 것이다. 따라서 대한민국이 먼저 '한반도 인권' 차원의 정책 방향을 세우고, 향후 남북 협력이 심화될 때 한반도 전역에서 벌어진 인권 참상을 밝히고 해원하는 축차(逐次)적 접근이 타당하다.

### ■ 세부 정책 내용

- 북한 당국과 직접 협상해야 하는 대북인도적 지원, 이산가족(납북자, 국군포로 포함)은 통일부가 추진한다.
- 북한(내) 인권 증진은 외교부 등 국제협력 부서가 주무를 맡도록 역할을 조정한다.
- 북한이탈주민의 남한 정착 지원은 통일부가 계속 담당하되, 국내 취약계층과의 역차별 논란을 피하기 위해 특혜에 대한 공론장을 열어두어야 한다.

### ■ 기대 및 파급 효과

- 이후 남북 관계 회복시(현재 통일부의 정책 목표임) 보다 많은 이산가족 상봉 기회를 얻을 가능성이 높아진다.
- 국제 공조를 통해 북한 내 인권 문제에 대한 실효성 있는 압박 조치가 가능하다.
-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특혜가 공론장에서 논의되고 인정될 때, 대국민 이미지가 개선되며 정착 사업의 실효성도 제고된다.

### 3. 남북 간 접촉, 협력 재개 및 경험집단 보존

#### ■ 제안 배경 및 필요성

- 정책 목표 수립과 수립대(일관성) 형성도 과제이나, 그렇게 형성된 정책 목표를 남북 간 접촉에서 합의에 도달하게 하여 관철하는 협상 역시 수많은 노하우가 필요하다. 현 정부는 통일부 내에 축적된 고위 교류협력 경험집단을 해체함으로써 매우 중요한 역량을 스스로 무너뜨렸다. 이는 남북 관계에서 정책 주도권을 스스로 놓아버리는 비합리적 행위이며 나아가서 (실패가 뻔한)접촉을 하지 않겠다는 숨겨진 의도를 의심케 한다. 따라서 현 정부로 하여금 해체된 인적 역량을 당장 복원시키도록 강력하게 요구하여야 한다. 그 방법은 민간 싱크탱크 등을 활용하여 경험집단을 모으고 그들의 경험을 학술전략적으로 정리하며 다음 세대의 협상가들을 양성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 ■ 세부 정책 내용

- 정부여당은 통일부의 대북협상 관련 부서(남북대화 사무국 등)의 위상과 인원, 부여된 직무를 최소 상태로 복원하고 더욱 보강하여야 한다.
- 위 사항이 관철되지 않을 시, 야당은 민간 싱크탱크나 대학(원) 등을 지정하여 동 전문가들의 경험과 노하우를 보존하고, 이를 더욱 발전시켜 한반도 관련 이슈마다 정책을 생산하게 하며 협상 전문가 양성기관으로 발전시켜야 한다.

#### ■ 기대 및 파급 효과

- 수십 년간 축적된 협상 경험과 노하우가 사라지지 않고 차세대에 전달됨으로써 시대적 변화에 따른 기회를 포착하고 한반도 문제를 해결하는 인적 자원을 잃지 않게 된다.
- 관련 민간 연구기관의 역량을 제고하고, 생산된 학문적 성과의 효능을 극대화 하게 된다. 차후 국제 분쟁이나 분단과 통합이 반복되는 지구의 사례에도 유용성을 인정받을 수 있으며, 학술적 국제화, 우리 학자들의 해외 진출에도 도움이 된다.

## 4. 막연하고 일방적인 통일론(교육)의 개혁

### ■ 제안 배경 및 필요성

- ‘분단 모순’과 이에 따른 ‘정책 모순’은 분단도, 그것을 극복하는 방안도 합리적 설명을 불가능하게 한다. 이는 헌법 체제하의 공교육 현장에서 분단을 극복하는 혁신적 교육을 제한하며, 교육에 필요한 철학적·이론적 배경조차 그 유용성을 제한하게 됨으로써 국가 전체를 평화에 관한 무능력 집단으로 만들고 있다.
- 그 결과 한반도는 현존하는 세계 최장의 분단 기간을 갖게 되었고, 차세대에게는 충분히 이해되지 않는 현상을 근거로 대결과 그에 따른 희생만을 강요하게 되어 세대 간의 협력도 방해한다.
- 통일 문제가 공교육을 벗어나면 예비군 훈련 등 불가피한 경우 외에는 외면하는 주제가 되는 이유도 같은 맥락에 있다. 당대는(분단을 유발한 세대는 이미 노년이므로 청장년을 기준으로 함) 후세대에게 보다 나은 한반도 상황을 넘겨주는 것을 목표로 이 문제를 끊임없이 논의해야 할 의무가 있다.

### ■ 세부 정책 내용

- 위 제1항에서 제시한 ‘헌법적 제약의 예외’를 통일교육(공교육, 평생교육, 공직사회, 법률, 교역 등) 인정하여야 한다.
- 중등 교과로 추가적 시수 부담을 주지 않는 한 학기 이상의 ‘한반도 평화’ 주제를 이수할 수 있도록 하는 교육과정을 고안하는 연구과제를 발주한다. 단 실행은 자유롭고 합리적이며 무한의 상상력을 발휘할 수 있는 기반을 전제로 한다.

### ■ 기대 및 파급 효과

- 학생 및 일반인들이 한반도 문제에 대해 느끼는 지적·현실적 피로감이 완화되고 창의적이며 유용한 전망을 갖게 함으로써 공론장을 활발하게 하고 참여가 증가한다.(정치의 본질)
- 효능감 있는 평화(통일)의 모델들이 경합하여 논의의 장이 풍성해지고 보다 우수한 정책, 실현경로의 도출을 기대할 수 있다.
- 관련 학문과 교육 예산이 하나마나한 연구교육에 소진되지 않고 변화에 기여하는 산출을 기대할 수 있다.
- 보람있는 교실, 평생교육은 타 분야에도 긍정적 파급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

## 제22대 총선 정책·비전 제안

# - 노동 -

---

분야	노동
목차	<ol style="list-style-type: none"><li>1. 근로기준법, 노동조합법 개정</li><li>2.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특별법</li><li>3. 노동자 생명안전 적극 보장</li><li>4. 노동시간 하한선 규정</li><li>5. 노동인권교육 강화</li><li>6. 기후위기 시대 정의로운 산업전환 주도</li></ol>
단체 및 담당자명	영등포산업선교회, 송기훈 사무국장
전화번호	02-2633-7972
이메일	ydpuim@gmail.com

## ■ 노동 분야의 현실과 개혁방향

### 현대 사회 노동의 현실

지난 21대 총선에서 더불어민주당은 노동권 보장 등 다수의 노동공약을 제시했으나 그 이행의지가 의문스러울 정도였으며 최저임금과 비정규직, 산업재해 분야 공약은 다소 미흡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정의당이 노동현실을 반영한 충실하고 구체적인 공약을 제시한 반면 당시 미래통합당을 비롯한 우파계열의 정당에서는 주요한 노동이슈 관련 공약이 부재하였고 산업재해 근절을 위한 공약이 전혀 없었으며 심지어 주휴수당 폐지 같은 노동권을 침해할만한 공약들이 제시되기도 하였다.

한편 2014년 지방선거 이후 서울시와 경기도를 비롯한 수도권 지방자치단체는 노동정책을 적극적으로 펼쳤다. 노동정책 담당 부서가 설치되었고 다양한 노동행정이 펼쳐졌다. 10여 년간 적극적으로 펼쳐온 지자체의 노동행정은 대부분 노동자 지원기구 설립과 예산을 지원하는 제도의 정비로 집중되었다. 그 사이 코로나와 세계경제 침체 등으로 내수경제는 하강곡선이 그려졌고 새로 당선된 서울시장과 대통령의 정책들은 그간 지방자치단체들이 다져온 기구와 제도 중심의 노동정책들에 안 좋은 영향을 미치고 있는 상황이다.

### 노동문제는 곧 인간의 문제

노동개혁과 시장의 유연화라는 명목으로 진행되어온 정부의 정책들은 점점 증가하는 하청노동자, 특수고용노동자, 돌봄노동자, 플랫폼노동자, 프리랜서노동자 같은 불안정하거나 새로운 형태의 노동자들의 입장을 대변하지 못하는 상황이다. 특별히 코로나시기 필요 이상의 업무를 감당해야 했던 특수고용노동자인 배달노동자, 물류노동자 들에게 발생했던 과로사 같은 부분이나 OECD국가 중 산업재해 1위라는 오명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정책은 이러한 현상들을 보완해 주기 보다는 오히려 악화시키는 방향으로 치닫고 있다.

이것은 앞으로 노동시장에 투입될 미래세대들을 포함, 노동시장에서 활발히 활동하는 세대들에게 좌절감을 주고 있으며 그것은 고스란히 사회의 불안과 폭력, 특별히 소수자를 향한 혐오와 멸시로 변질되어 나타나고 있다.

### 실효성 있는 노동 정책 도입 및 노동자 생명 안전망 구축

산업안전 3법을 강화하는 일과, 노동시간의 하한선을 규정하는 일은 노동자의 생명이 위협에 처하지 않도록 막는 방파제의 역할을 할 것이다. 또한 이번 총선을 통해 꾸려질 21대 내각에서는 노동인권교육과 기후위기 시대 노동조합 과 더불어 주도하는 정의로운 산업전환 등 다가오는 미래에 대한 실효성 있는 노동정책들을 다뤄야 할 가장 중요한 시기라고 생각된다.

# 1. 근로기준법, 노동조합법 개정

## ■ 제안 배경 및 필요성

- 변화된 노동환경에 따라가지 못하는 법체계 개선 필요
  - 기존 노동법은 5인 미만 사업장의 노동자를 보호하지 못함은 물론이고 특수고용 노동자, 플랫폼 노동자의 급증 등 변화된 노동환경을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
  - 해당 노동자들은 낮은 임금, 높은 노동 강도, 불분명한 법적 지위의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플랫폼 노동자의 경우 노동권 개선을 위한 교섭대상을 찾기조차 어려운 상황이다.
- 임금근로자를 넘어 모든 일하는 사람들에게 노동권 보장 필요
  - 개별적인 노동법 분야에서 주 52시간제 확립, 공휴일 유급보장, 직장 내 괴롭힘 제도 도입 등 비임금 근로자(특수고용, 프리랜서 계약, 영세 자영업자, 무급가족노동종사자 등 모든 일하는 사람에게 전면적인 노동권 보장이 절실하다.
  - 특별히 5인 미만 사업장까지 근로기준법이 전면 적용되어야 할 것과,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타인의 사업 또는 경영을 위하여 노무를 제공하는 자로 개정할 필요가 절실하다.
  - 청년을 위한 권리는 단순히 '고용될 수 있는 권리', '일할 수 있는 권리'로 대표되어 왔으나, 평생학습시대와 고령화 사회에서 청년 시기는 오히려 탐색과 실패의 시기로 주어져야 함

## ■ 세부 정책 내용

- 노동법체계 밖에 존재하는 노동자들을 근로기준법상 노동자성을 인정받을 수 있도록 법령 제정
  - 플랫폼 노동자, 돌봄 노동자, 가사 노동자 등 근로기준법 사각지대에 있는 노동자들의 노동자성을 인정할 수 있도록 법령 제정
  - 노동자성을 밝히기 위한 종속성 판단에 대한 입증책임 전환
- 5인 미만 사업장 근로자도 보호 받을 수 있도록 근로기준법 개선
  - 국민의 휴식권을 보장하는 공휴일에 관한 법률 보장
  - 법정근로시간과 시간 외 근로에 대한 가산임금, 연차유급휴가, 직장내 괴롭힘 금지법, 육아휴직 등 보장
  -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 ■ 기대 및 파급 효과

- 근로기준법이 모든 노동자에게 차별 없이 적용
- 새로운 노동 형태로 노동법 밖에서 일어나는 착취 구조를 와해시킴 기본소득제도

## 2.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특별법

### ■ 제안 배경 및 필요성

- 고용유연과 인건비 절감을 이유로 비정규직 고용형태의 일반화 고착
  - 동일 노동, 동일 임금의 원리에 대한 법·제도 개선이 이루어지지 않음
  - 간접고용 노동자의 고용불안과 중간착취에 대한 개선이 이루어지지 않음
- 양극화와 사회적 불평등 해소를 위한 노동정책 필요
  - 고용안정률을 높이기 위한 일시적인 정책이 아닌 근본적인 방안이 필요
  - 정규직-비정규직 양극화로 상징되는 노동시장의 이중구조에 대한 개혁 필요
  - 공공부문 정규직화로 일어나는 갈등 완화를 위한 제도 개선 필요

### ■ 세부 정책 내용

- 공공부문 정규직전환 확대
  - 정규직 전환을 미루고 있는 소수의 기관들을 조사하여 정규직 전환 추진
  - 공공부문에서 다시 비정규직을 채용하는 일이 없도록 비정규직 고용 사전심사제 운영
  - 사회사의 전환노동자에 대한 차별적인 처우를 조사하여 개선
  - 민간위탁분야 정규직전환 의무화 추진
  - 현행법 준수를 위한 적극적인 노동행정 실행
  -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이 정규직 신규채용을 대신하지 않도록 규제 마련
- 민간부문 정규직전환 실행
  - 원청 직접고용 의무화 단계적 추진
  - 비정규직 사용사유제한 제도 도입
  - 비정규직 정규직전환 컨설팅단을 운영하여 노사에게 정보 제공, 자문, 교육 등을 지원

### ■ 기대 및 파급 효과

- 직접고용을 통한 근로기준법에 규정된 노동자 보호의 의무 강화
- 비정규직 남용과 차별 완화, 노동인권 증대
- 노동자의 고용안정성 증가로 조직몰입, 서비스지향성, 직무만족 등 조직 성과에 긍정적인 영향

### 3. 노동자 생명안전 적극 보장

#### ■ 제안 배경 및 필요성

- OECD 가입 국가 중 산재사망이 여전히 높은 순위에 있다. 건설업 사망자가 50%가 넘는 상황
- 2021년 1월 ‘중대재해처벌법’이 공포되었지만 전체 사업장의 80%에 해당하는 ‘5인 미만 사업장’은 적용대상에서 제외되고 있다. 또한 ‘50인 미만 사업장’ 역시 그 적용기간을 계속해서 유예하는 상황이다. 처벌대상과 경영책임자 범위도 대표이사나 안전담당이사로 느슨하게 규정하고 있는 실정
- ‘위험의 외주화’를 야기하는 도급금지 대상을 넓히고, 업무상 질병기준에 추가된 ‘정신적 스트레스’를 직장 내 자율적 분쟁해결에 맡기는 것이 아니라 효과적으로 규율할 필요

#### ■ 세부 정책 내용

- 건설안전 특별법 제정
  - 계약 형태와 관계없이 모든 노동자에게 적용하여 안전보장을 그 최우선 순위에 둠
  - 발주자, 설계자, 시공자, 감리자 모두에게 안전관리 책임법으로 규정 및 위반에 대한 형사책임을 지게 함
  - 다단계 하도급으로 인한 비용절감, 공사기간 단축 등 산재핵심요소 예방 목표
- 산업안전보건법 개정
  - 사망 또는 중상해가 일어난 공정 또는 재해발생사업장은 도급을 금지하고 직접고용하도록 강제
  - 산재 은폐방지, 산재 발생을 확인한 노동자, 의료진, 소방서, 경찰관 등에 신고의무 부과
  - 경비, 미화원 등 휴게와 수면 공간에 대한 기준 강화
- 중대재해처벌법 강화
  - 사업장 규모에 관계없이 중대재해처벌법 전면적용
  - 경영책임자 등 실권자 책임 강화

#### ■ 기대 및 파급 효과

- 근로기준법이 모든 노동자에게 차별 없이 적용
- 새로운 노동 형태로 노동법 밖에서 일어나는 착취 구조를 와해시킴 기본소득제도



## 4. 노동시간 하한선 규정

### ■ 제안 배경 및 필요성

- 1개월간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노동자는 건강보험 직장가입 대상제외, 1주 동안의 소정근로 시간이 15시간 미만인 초단시간 노동자는 주휴수당, 무기계약 전환, 퇴직금에서 제외
- 소정근로시간을 주 15시간 미만으로 계약 후 준비시간을 포함 실제 노동시간은 15시간이 넘는 경우 발생, 쪼개기 계약의 확대, 투잡 등 중복노동을 하는 경우 노동자 인권 보장의 어려움

### ■ 세부 정책 내용

- 초단시간 노동자들에 대해서, 노동시간에 비례한 주휴수당과 유급 연차휴가 보장, 공휴일에 쉴 수 있는 근로기준법 개정
- 고용보험 등 사회보험도 당연가입 대상으로 전환
- 공공부문부터 초단시간 노동자 고용 제한, 주15시간 노동시간 하한선 규정 보장

### ■ 기대 및 파급 효과

- 초단시간 노동자의 권리 보장
- 노동시간 하한선 규정, 시간 쪼개기 방식의 고용 규제

## 5. 노동인권교육 강화

### ■ 제안 배경 및 필요성

- 노동에 대한 사회적 인식 개선 필요
  - 노동, 노동자, 노동조합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넘어 불온화하는 사회풍토
  - 청소년, 노동에 대한 부정적 인식 팽배
  - 노동인권 감수성 부재로 나타나는 노동의 물질화
  - 교육수준별 서열화를 통한 노동의 차별
- 형식적 노동교육
  - 학교 교사들의 낮은 노동인권교육 수강률
  - 부족한 노동관련 교육 시간, 내용
  - 일부 교과서들에 나타난 노동 현실의 왜곡된 사례 존재
- 10대 노동권 침해 현실
  - 근로계약서 미작성, 임금 체불, 최저임금 미만 임금지급 등의 문제
  - 폭언, 폭행에 노출
  - 특성화고 현장실습 사망사고 증가

### ■ 세부 정책 내용

- 교육과정에 노동교육 의무화
  - 노동교육 추진을 위한 교육 주관 기구 지정
  - 학년별 체계적인 노동교육 진행
  - 이론적 교육과 실제 사례를 통한 배움을 병행하여 진행
  - 노동교육을 위한 교사 양성
- 청소년 노동교육에 대한 법령 제정
  - 청소년 노동교육에 대한 정의 규정
  - 노동교육 관련 교육기관의 지정, 전문가 양성, 교육 표준안 개발 및 보급 기준 마련
  - 청소년 노동교육 의무화를 반영한 청소년보호법 개정

### ■ 기대 및 파급 효과

- 청소년들의 건전한 노동관 확립과 안전한 근로조건에서 정당한 노동을 할 수 있도록 한다.
- 사회 안에 팽배한 노동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고 청소년들을 민주시민으로 성장하게 한다.

## 6. 기후위기 시대 정의로운 사회전환 주도

### ■ 제안 배경 및 필요성

- 지속가능한 경제 체제에서 석유, 화학, 원자력 노동자들의 노동권 보장
  - 온실가스 감축 정책으로 인해 석유, 석탄산업 등 많은 공장들이 이산화탄소 배출에 제한을 받지 않는 저비용 국가들로 공장이 이전 중에 있고, 이에 따라 일자리 감소가 불가피하고 그에 따른 대책마련이 시급한 상황
- 기후위기 대량실업 상황 보호
  - 이미 다가온 기후위기 앞에서 현재의 산업구조는 급격한 변화를 요청받고 있다. 석탄, 석유 중심 산업들은 빠른 전환을 요청받고 있으며, 그에 따른 대책을 마련하지 못할 경우 그 피해와 책임은 고스란히 노동자에게 전가될 것이다.
- 기후위기 산업전환이 기후위기의 주범인 기업을 중심으로 한 '기업을 위한 전환'으로 변질되고 있음.
  - 노조법 개정을 통해 기업별로 대응할 수 없는 산업별, 업종별 협약체계 구축
  - 사용자 단체범위 확대, 교섭의제 확대, 국제기준에 부합하는 파업권 보장 등 노동자와 노동조합이 정의로운 산업전환을 주도할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한다.

### ■ 세부 정책 내용

- 기후정의 기본법, 노조법 개정
  - 기후정의 원칙에 부합하는 온실가스 감축 목표 법제화
  - 모든 산업전환 과정에 노동자, 지역사회의 주도적 참여 보장
  - 노사 공동결정제도 도입을 통해 고용안정 대책, 직업훈련 지원 등을 수립
- 기후위기 노동자 보호법 제정
  - 일자리를 잃은 노동자들을 위한 대안적인 고용 제공
  - 실업보험을 통한 수입의 보전
  - 공공부문/서비스 부문의 일자리 창출과 새로운 산업육성을 통해 공동체 지원
  - 일자리를 잃은 노동자 우선고용 및 교육 및 재훈련의 기회 제공
  - 지속가능한 생산 방식을 위한 연구 개발

### ■ 기대 및 파급 효과

- 기후위기 노동산업구조의 급격한 변화 가운데 실업 및 사회 위기 발생을 줄인다.
- 기업 주도가 아닌 노동자-지역사회 주도로 기후위기에 대비하고 사회 발전에 기여하는 운동을 이끌어낸다.

---

## 제22대 총선 정책·비전 제안

# - 생명존중·자살예방 -

---

분야	생명존중과 자살예방
정책명	<ol style="list-style-type: none"><li>자살예방을 위한 제도 및 법률 구체화<ul style="list-style-type: none"><li>현재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자살예방법)의 실효적인 평가와 함께 실행을 위한 제도적 보완 필요</li><li>자살대책기본법(가칭), 지역구별 자살예방사업 의무조항 등</li></ul></li><li>자살예방을 위한 실무역량 구축 및 전문가 양성<ul style="list-style-type: none"><li>현 자살예방 인력에 대한 고용, 자격, 지원이 부족한 상황</li><li>생명 전문가(LIFE KEEPER), 지역생명네트워크 인력(LIFE CO-Woker)</li></ul></li><li>생명지원센터(LIFE CENTER)를 통한 위기 지원, 유가족 지원을 위한 민간협(위탁) 센터 설립</li></ol>
단체 및 담당자명	생명문화 라이프호프, 장진원 상임이사
전화번호	02-2138-0807
이메일	lifehope21@hanmail.net

# ■ 생명존중과 자살예방을 위한 개혁방향

[한국사회의 심각한 자살문제]

○ 13,352명이 자살을 하고 있고, 하루 약 37명이 자살하는 나라

2021 사망원인통계 <b>13,352</b> 명 자살사망자 수	2021 사망원인통계 <b>26.0</b> 명 자살률	2021 사망원인통계 <b>36.6</b> 명 하루 평균 자살사망자 수	2021 NEDIS <b>36,509</b> 명 자해/자살시도자 수	2020 OECD자살통계 <b>24.1</b> 명 OECD 한국자살률	2020 OECD자살통계 <b>11.1</b> 명 OECD 국가평균
-------------------------------------------	-------------------------------------	-----------------------------------------------	---------------------------------------------	----------------------------------------------	---------------------------------------------

○ 자살은 1인당 4억9백만원(전체 약5조4천억)의 사회경제적 비용 초래

## + 자살은 개인의 문제만이 아닌 사회적 문제이므로 적극적 대응 필요

자살은 1인당 4억 9백만원(전체 약 5조 4천억)의 사회경제적 비용 초래

- 자살의 경제적 손실 추산 결과 **인당 409백만원**(보건사회연구원, '22년), '11년 추계에 비하여 **인당 1억원 이상 증가** (인당 294백만원, 전체 약 4조 7천억, 예정치)

자살시도로 인한 후유증, 유족의 신체·정신질환 등 고려 시 자살의 사회적 비용은 추계된 규모보다 클 것으로, 자살예방을 위한 정책적 대책 필요

○ 자살은 남은 가족, 주변인에도 부정적 영향 끼쳐 적기 개입 필요

자살유족은 일반 사망보다 강한 심리·사회적 고통을 경험, 자살위험 남성 8.3배, 여성 9.0배 (Hedstrom 외, 2008)

- 가족을 포함한 친척·친구 등 주변인의 자살을 경험한 사람은 우울감·트라우마 등으로 자살위험 상승

### 심리부검 면담 결과보고서('15~'21)

심리정서상태

유족의 **83.3%**가 사별 후 우울증상 경험, 자살 사별 유족은 다른 사별 유족 (예: 사망을 예상할 수 있었던 사별)에 비해 높은 수준의 고통

자살위험

유족 중 **59.5%**가 자살사고 있다고 응답, 사별 기간 3개월 이하(61.2%), 25개월 이상(61.5%)에서 높게 나타났으며, 유족이 부모일 때 자살사고 응답비율(69.2%) 높게 나타남

한 명이 자살하면 **평균 6명의 유족 발생**, 특히 가장의 죽음은 감정적인 어려움에 경제적 어려움까지 더해 유족은 복합적인 어려움에 직면할 수 있음

자살사고로 인한 악순환 방지를 위해 적시에 적극적인 지원 필요

○ 코로나19이후 사회경제적 변화로 인해 탄탄한 생명안전망 조성 필요

☑ **코로나19 장기화로 일상생활 제약, 대인관계 단절, 사회적 고립 등으로 인한 정신건강 위기 신호 발생**

우울증	('19) 796,364명 → ('20) 837,808명 → ('21년) 910,785명(+8.7%)
공황장애	('19) 182,725명 → ('20) 196,443명 → ('21년) 221,131명(+12.5%)
불안장애	('19) 718,143명 → ('20) 747,143명 → ('21년) 819,080명(+9.6%)(건강보험심사평가원)

☑ **국가적 재난 시기 사회적 긴장·국민적 단합·재정지원 등으로 자살률 일시적 감소할 수 있으나, 2~3년 후 자살률 반등 가능성 대비 필요**

우리나라	('19) 13,799명 → ('21) 13,352명 (↓ 3.2%)
미국	('19) 47,511명 → ('21) 48,152명 (+1.3%)
영국	('19) 5,691명 → ('21) 5,583명 (↓ 1.9%)
일본	('19) 20,169명 → ('21) 21,007명 (+4.2%)

☑ **코로나19 이후 사회경제적 변화는 자살사망과 직·간접적으로 연결되므로, 자살률 급증 가능성에 대비하여 정책 점검 및 사회안전망 강화 필요**

○ 자살의 대부분은 40~60대 발생, 10~30대 자살률 증가

○ 경제적·신체적·정신적 요인이 복합적인 자살동기

☑ 자살동기는 정신적 문제(39.8%), 경제생활 문제(24.2%), 육체적 질병(17.7%) 순(2021년 기준)

☑ **코로나19 이후 '20년 정신적 문제 증가하여 39.8% 차지, 경제생활 문제·육체적 질병 문제는 감소 추세**



☑ **성별, 연령에 따라 자살의 동기는 다소 차이**

- **남녀 모두 정신적 문제(남32.1%, 여57.0%)가 가장 높지만, 남성의 경우 경제생활 문제(30.2%)와 큰 차이는 없음**
- **여성의 경우 전연령대에서 정신적 문제가 1위, 남성의 경우 11세~30세는 정신적, 31세~60세는 경제적, 61세 이상은 육체적 질병 문제가 1위**

☑ **자살률은 실업률, 상대적 빈곤율과 높은 상관관계**

- 1997년 외환위기, 2002년 카드대란, 2008년 금융위기 등 계기로 자살률은 상승한 뒤 높은 수준을 유지하는 경향



## ■ 생명존중 및 자살예방을 위한 정책제안

### ■ 제안 배경 및 필요성

- 한국사회의 자살예방정책에 대한 평가 및 실현을 위한 정책적 지원 및 보완 요청
  - 제5차 자살예방기본계획[2023-2027]은
    - ① 자살사망자 수를 30% 감소
    - ② 지역이 주도하고, 지역 특성에 맞춘 자율적 자살예방사업 진행
    - ③ 자살위험이 상대적으로 높은 자살 시도자와 자살유족에 대한 사후 개입 강화
  - 자살예방의 원인, 세대, 지역별 세분화와 함께 인식개선, 위기개입, 사후관리를 통합적으로 관리
  - 기존 자살예방기본계획의 목표 달성을 실패한 사례처럼, 중앙정부차원의 기본정책 제안만으로는 실제적인 자살예방효과를 기대할 수 없음
- 자살예방을 위한 다각적 접근이해 및 현장 중심의 정책적 필요
  - 한국사회의 자살원인에 대한 지속적인 연구 및 지원이 매우 적음
  - 자살은 한 가지 원인이 아닌 다양한 원인에 기반 한 만큼 예방을 위한 다양한 접근시도
  - 자살예방 인력에 대한 관리, 전문가 양성이 전문한 상황 속에서 실제적인 업무의 한계성
- 자살예방을 위한 지역 및 시민 밀착형 전문기관의 설립
  - 한국사회의 자살의 심각성의 원인 중 자살유족 및 고위험군 관리의 부족
  - 자살의 경우 사회적 인식 및 낙인으로 인해 공적서비스(위기지원, 상담, 정신과 치료)를 이용하는 것에 부담을 가지고 있음
  - 자살예방을 위한 사전, 위기지원, 사후관리를 통합할 서비스 확충의 필요성

### ■ 세부 정책 내용

- 자살 예방을 위한 제도 및 법률 구체화
  - 현재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자살예방법)의 실효적인 평가와 함께 실행을 위한 제도적 보완 필요
  - 자살대책기본법(가칭), 지역별 조례 발표 및 자살예방사업 의무조항 등
    - : 2011년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이 통과되었지만, 실제적인 자살감소 및 목표를 달성한 적인 없음에도 불구하고 지원 및 사업에 대한 고민이 전혀 없는 상황임
    - : 현 자살예방법은 자율법에 근거한 조례적 성격으로 이해되고 있으며, 이에 대해 자살예방을 위무로 하는 법률(언론, 위험물접근, 정보동의 등)이 필요하며, 대통령 직속 대책위원회 설립 등을 건의 중

○ 자살예방을 위한 실무역량 구축 및 전문가 양성

- 현 자살예방 인력에 대한 고용, 자격, 지원이 부족한 상황

- 생명 전문가(LIFE KEEPER), 지역 생명네트워크 인력(LIFE CO-Worker)

: 자살예방은 누가하는가 ○ 현장에서는 실행인력 뿐만 아니라 전문 인력이 전무한 상황이며, 자살예방관련 업무 유지기간이 1년 미만으로 나타나고 있다.

: 자살예방인력에 대한 경력인정(사회복지/정신간호사 등)이 불가하며, 업무를 위한 전문 매뉴얼 및 전문가 그룹이 없기에, 대부분 정신과의사에 치우친 정신관련 업무에 집중되고 있다.

○ 생명지원센터(LIFE CENTER)를 통한 위기지원, 유가족지원을 위한 민간협(위탁) 센터 설립

- 한국사회의 자살경향(1998-2008-2012-2018)을 보면, 1998년 IMF급증 당시 유족 및 고위험군 관리가 되지 못한 상황에서 지속적인 자살위기 고위험군이 치료받지 못한 상태로 방치되었으며, 한국사회의 정신건강이 무너졌다고 할 수 있다.

- 자살예방은 모든 영역에서 도움과 지원이 필요한 사업이다. 이에 고위험군, 유가족, 자살 시도 후 관리 등을 통합하여 생명지원센터를 거점별로 설립하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제도가 요청된다.

■ 기대 및 파급 효과

○ 자살문제는 한국사회의 건강성과 삶의 질을 좌우하는 중요한 지표라고 할 수 있다.

더 이상 개인의 문제가 아닌 사회적 문제로의 인식을 통해 삶의 질을 회복할 수 있다.

○ 자살예방을 위해서는 심리적 정신과적 문제, 경제적 위기, 교육 및 사회 통합 등 많은 분야와의 협력을 통해서 이룰 수 있다. 즉 자살예방은 생명문화를 기반으로 한 미래 세대에 가장 중요한 가치이다. 이를 통해 미래 사회에 대한 삶의 기대와 희망을 줄 수 있다.

○ 정책지원과 효과적인 예산운영은 실제적인 자살감소에 영향을 줄 수 있다.





---

## 제22대 총선 정책·비전 제안

# - 이주난민 -

---

분야	이주 난민
목차	<ol style="list-style-type: none"><li>1. 사업장변경 지역제한 철회 및 사업장 변경 자유 보장</li><li>2. 농어촌 이주노동자들에 대한 인신매매 근절</li><li>3. 이주노동자의 주거권 보장</li><li>4. 이주노동자 임금체불 근절 및 대책 마련</li><li>5. 미등록 이주민 단속추방 중단 및 체류권 부여</li><li>6. 이주노동자 지원 인프라 확충</li><li>7. 이주민 건강보험 차별 근절</li><li>8. 국제기준에 부합하는 난민지위심사 실시</li><li>9. 인도적체류자의 처우 보장</li><li>10. 이주민에 대한 자의적 구금 금지</li></ol>
단체 및 담당자명	기독교법률가회(CLF), 최갑인 변호사
전화번호	010-8435-0313
이메일	mildjubilee@gmail.com

## ■ 이주 난민 분야의 현실과 개혁방향

한국에서 살고 있는 이주민의 수는 250만 명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이는 전체 인구의 4%에 해당된다. 그러나 정부는 이주민을 우리와 함께 살아가는 이웃이 아닌 생산력의 수단으로만 여기고 법과 제도를 통한 구조적 착취와 차별을 지속하고 있다.

정부는 이주노동자를 저출산과 고령화에 따른 노동력 부족을 해소하기 위한 수단으로 적극 활용하며 열악한 노동조건으로 내국인을 구할 수 없는 업종과 인구소멸로 위기를 맞은 지역에 이주노동자를 묶어두는 정책을 도입하고 있다. 이주노동자는 사업주 동의 없이 사업장 변경이 어려운데 최근에는 추가적으로 사업장 변경을 특정 권역 내로만 제한하였다. 농축산 어업에 종사하는 이주노동자는 법정근로시간의 적용을 받지 않아 장시간 저임금으로 노동착취를 당하지만 송출입과정에 개입된 기관의 이탈보증금 및 강제저축 등을 통해 사업장에 묶이게 되어 강제노동 및 인신매매를 당하고 있다.

이주노동자 체불임금 규모는 연 1,200억원을 넘어섰으며 한국인 대비 산업재해 발생 비율도 높다. 그러나 이주민 권리 보장에는 전혀 무관심한데, 정부는 2024년 이주노동자들의 도입 규모와 업종을 크게 늘리겠다고 발표한 후, 이주노동자 지원을 위한 외국인노동자지원센터의 예산은 0원으로 전액 삭감하였다. 이주민들은 건강보험 가입에서도 차별을 당하고 있어 고액의 보험료로 인하여 건강권을 보장받지 못하는 경우도 많다.

한편 미등록 이주민에 대한 단속추방은 날로 강화되어 단속 과정에서 인권 침해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 단속이 된 미등록 이주민은 외국인 보호소에 구금이 되는데, 구금에 상한기간을 두지 않은 법이 위헌이라 판단이 되었음에도 여전히 장기간 구금이 되거나 아동이 구금되는 일도 일어나고 있다.

이주노동자 외에도 한국의 경제, 정치적 위상 변동 및 불안정한 국제 정세로 인하여 한국을 찾는 난민들의 수도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한국은 난민인정에 인색하며, 어렵게 난민으로 인정받거나 인도적 체류자가 되어도 여전히 한국 사회의 일원으로 살아가는 것은 요원한 상황이다.

우리 사회는 본격적인 이민 사회가 되어 가고 있다. 이주민을 한국 사회의 이웃으로 환대하고 더불어 살아가기 위해 이주민을 존엄과 인격, 고유한 개성을 가진 각자의 존재로 대하는 정책과 제도가 절실한 시점이다.

# 1. 사업장변경 지역제한 철폐 및 사업장 변경 자유 보장

## ■ 제안 배경 및 필요성

- 고용허가제를 통해 입국하는 이주노동자들은 원칙적으로 사업주의 동의 없이 사업장 변동이 불가능함. 예외적으로 사업주의 근로계약 해지 또는 갱신 거절이나 사업장이 휴업이나 폐업을 할 때, 혹은 이주노동자의 책임이 아닌 사유로 일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에만 3회까지 사업장 변동이 가능.
- 이러한 규정은 이주노동자 개인의 의사에 따라 근로계약을 해지할 수 없게 만들어 강제노동을 야기하는 조항으로 비판을 받고 있음.
- 실제로 이주노동자가 본인의 책임이 아닌 사유로 일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에도 이를 입증하는 것은 매우 어려워 사업장 변경이 매우 어려움.
- 정부는 지난 10월부터 신규 입국하거나 재입국하는 이주노동자들이 자신이 일하는 사업장이 속한 권역 안에서만 사업장 변경이 가능하도록 함. 이는 기존의 사업장 변경 제한에 더욱 강한 제약을 둔 것으로 강제노동의 성격이 더욱 강해짐.

## ■ 세부 정책 내용

- 사업장 변경 지역제한 철폐 및 이주노동자 사업장 변경 자유 보장

## ■ 기대 및 파급 효과

- 이주노동자들의 기본권 보장

## 2. 농어촌 이주노동자들에 대한 인신매매 근절

### ■ 제안 배경 및 필요성

- 노동인구 감소 및 취업 기피로 농축산어업 현장은 이주노동자의 노동에 크게 의존하고 있음. 그러나 농축산어업 노동자에게는 근로기준법 상의 법정 근로시간과 휴게, 휴일 규정이 적용되지 않아 이주노동자들은 노동시간에 제약이 없이 장시간 노동을 요구 받음.
- 지자체에서는 해외 지자체와 협약을 맺고 농축산어업 현장에 인력을 파견하는 방식의 계절노동자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데 이주노동자의 이탈을 막기 위해 지자체에서 임금 일부를 강제 적금하거나 중도이탈을 하면 받을 수 없는 이탈보증금을 징수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음.
- 20톤 이상 연근해 어선에서 일하는 이주노동자의 경우에도 송출입업체의 개입으로 한국 어선 취업을 위해 1,000만 원 이상의 수수료와 이탈보증금을 지급하고 취직을 하게 됨.
- 이탈보증금 및 강제적금은 이주노동자가 노동착취를 당하거나 문제가 발생한 경우에도 사업장을 떠날 수 없게 만들어 강제노동을 만드는 장치로 작용하고 있으나 인신매매의 정의의 한계 및 처벌법의 부재로 인신매매 관련 제도가 농축산 어업 이주노동자 보호를 위해 적용되지 않고 있음.

### ■ 세부 정책 내용

- 농축산 어업 종사 이주노동자에게 법정 근로시간과 휴게, 휴일 규정 예외 없는 적용
- 이주노동자 임금 강제적금 및 이탈보증금 부과를 법으로 금지하고 송출입 과정을 공공기관에서 담당
- 인신매매의 정의를 팔레르모 의정서에 부합하도록 개정하고 인신매매 피해자 보호 및 가해자 처벌 이행

### ■ 기대 및 파급 효과

- 농축산 어업에 종사하는 이주노동자들에 대한 인신매매 근절

### 3. 이주노동자의 주거권 보장

#### ■ 제안 배경 및 필요성

- 2020년 12월, 캄보디아에서 온 숙행씨가 비닐하우스에서 한파에 사망하면서 이주노동자의 열악한 주거환경에 대한 문제점이 드러나고 정부도 대책을 마련하려고 함.
- 그러나 임시 가설건축물을 기숙사로 활용하는 것이 전면 금지되지 않았고, 사업주가 지자체에 등록하면 허용이 되기 때문에 이주노동자의 주거환경은 여전히 열악하고 위험함.
- 고용노동부 지침은 사업주가 숙식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월 통상임금에서 최대 20%까지 공제가 가능하도록 되어 있어 사업주가 숙식 상태와 무관하게 급여에서 숙식비를 선공제를 하며 임금 삭감의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음. 이러한 관행은 임금 전액 지급 원칙이 명시된 근로기준법에도 위반됨.

#### ■ 세부 정책 내용

- 숙식비 선공제를 법령으로 금지하고 숙식비 공제를 허용하는 고용노동부 지침 폐지
- 이주노동자 주거환경 실태조사를 통한 합리적인 숙식비 기준 마련

#### ■ 기대 및 파급 효과

- 이주노동자들의 주거권 보장 및 근로기준법 준수

### 4. 이주노동자 임금체불 근절 및 대책 마련

#### ■ 제안 배경 및 필요성

- 2017년 이주노동자 체불임금 규모는 780억이었는데 2019년 이후 한 해 평균 1200억을 넘고 있음. 전체 임금체불 사건 노동자 가운데 이주노동자 비율은 약 12%로 전체 노동자 중 4% 정도인 이주노동자가 임금체불은 세 배나 더 발생하고 있음.
- 그러나 이주노동자는 임금체불을 당해도 임금체불보증보험이나 대지급금 적용도 받지 못해 체불임금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음. 대지급금제도는 5인 미만 농어업 사업장은 임금채권보장법이 적용되지 않아 농어업 사업자 노동자들은 대지급금 신청이 불가능하고, 이주노동자들을 위한 임금체불보증보험 한도는 1인당 400만원으로 한정이 되어 있음.
- 어렵게 체불임금을 받기 위한 절차를 시작하는 경우에도 체류자격 변경이 어렵거나 절차가 지연되어 체불임금 수령 절차를 포기하고 본국으로 귀환하는 경우도 있음.

#### ■ 세부 정책 내용

- 임금체불 보증보험 한도 증대 및 정부의 대지급제도 적용 확대
- 근로시간 기록 의무화 및 진정 및 소송 중 체류자격 부여와 취업활동 보장

#### ■ 기대 및 파급 효과

- 이주노동자들의 임금체불 해결에 기여

## 5. 미등록 이주민 단속추방 중단 및 체류권 부여

### ■ 제안 배경 및 필요성

- 이주민들은 정부의 경직된 행정절차와 출입국 정책 실패 및 사업주의 동의 없이 사업장 변경이 어려운 구조적 문제로 미등록 체류자가 되기 쉬움.
- 법무부는 상시적인 단속에 5개 부처를 동원한 합동단속을 대대적으로 실시하고 있는데, 2023년 단속 수는 사상 최대에 이룸. 그러나 이 과정에서 인권침해가 다수 발생하고 있음.
- 2023년 초, 합동단속 시에는 교회에 경찰이 난입하여 이주민을 체포하거나 젓먹이를 둔 싱글맘이 잡혀가기도 하였고, 단속과정에서 부상당한 노동자가 치료도 받지 못한 채 강제출국이 되었음. 지난 11월에는 태국 출신 여성 이주노동자가 출입국 직원에게 목이 졸린 채 끌려가는 장면이 공개되어 국제적으로 공분을 사기도 하였음.

### ■ 세부 정책 내용

- 정부 합동단속 중단
- 미등록 이주민 체류자격 부여

### ■ 기대 및 파급 효과

- 미등록 이주민 체류 안정화

## 6. 이주노동자 지원 인프라 확충

### ■ 제안 배경 및 필요성

- 정부는 지속적으로 이주노동자의 유입을 확대하고 있는데, 2024년에는 고용허가제 시행 이후 최대 규모인 16만 5000명으로 도입규모를 확정 발표하였음.
- 또한 기존에는 이주노동자의 근무를 허용하지 않았던 음식점업, 임업, 광업에도 이주노동자가 일할 수 있도록 하였고, 조선업 인력난 해소를 위해서 고용허가제 외에도 일반기능인력 비자를 발급하여 이주노동자를 도입하고 있음. 서울시는 시민단체 및 노동계의 반대 의견을 무시하고 이주가사노동자 도입을 시범적으로 시행할 예정임.
- 그러나 이주노동자들의 권리 보호를 위한 지원정책 및 인프라는 현저히 부족한 실정. 더욱이 노동부에서 민간위탁으로 운영 중이던 9개의 거점 외국인노동자지원센터와 운영비를 지원하고 있던 35개 소지역 이주민지원단체에 대해 내년 예산을 기존 71억에서 0원으로 전액 삭감함. 이에 따라 이주노동자의 고충상담, 한국 생활 적응 지원 및 취업활동 촉진 등에 공백 예상.

### ■ 세부 정책 내용

- 이주노동자 지원센터 설치와 운영 법제화 및 예산 확보
- 이주노동자 사회적 지원체계 및 인프라 확충

### ■ 기대 및 파급 효과

- 이주노동자 지원 인프라 기반 마련 및 지원 체제 안정화

## 7. 이주민 건강보험 차별 근절

### ■ 제안 배경 및 필요성

- 국내에서 6개월 이상 체류한 경우 지역건강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하는데 이주민은 한국인과 달리 동일세대로 인정되는 부양가족의 범위가 배우자 및 미성년 자녀로 한정되어 동거하는 친족을 부양하고 있더라도 동일세대로 인정받지 못해 보험료의 부담이 크게 발생. 또한 가족을 피부양자나 세대원으로 등록하기 위한 서류요건이 강화되어 어려움을 겪는 이주민이 많음.
- 또한 이주민은 한국인과 달리 소득과 재산에 무관하게 전년도 평균보험료 이상의 지역가입 보험료가 부과되고 있음. 이에 저소득층 이주민 지역가입자들이 보험료 체납을 하게 되자 보건복지부와 법무부는 급여제한과 체류연장 조치를 동원함. 즉, 보험료를 선납하지 않으면 급여를 받을 수 없게 만들고, 보험료를 체납한 이주민의 체류연장을 불허하고 있음.
- 보건복지부는 국민에 대한 역차별 해소 및 도덕적 해이 방지를 주장하며 차별적인 제도를 유지하고 있음. 그러나 실제 외국인 가입자의 건강보험 재정수지는 흑자임.

### ■ 세부 정책 내용

- 보험료 하한규정과 동일세대 인정 가족 범위에 대한 차별 철폐
- 보험료 체납 시 체류자격 제한 지침 폐지

### ■ 기대 및 파급 효과

- 이주민에 대한 건강보험 차별 철폐로 건강권 보장 확대



## 8. 국제기준에 부합하는 난민지위심사 실시

### ■ 제안 배경 및 필요성

- 난민법 시행 이후 한국의 난민인정률은 지속적으로 하락하여 2022년의 경우 약 2.04%에 불과한데, 엄격한 이민정책으로 유명한 미국마저도 난민인정률은 약40%. 세계 평균 난민인정률이 30%인 것에 비하여 한참 낮고, OECD에서는 최하위 수준임.
- 난민정책은 법무부 산하의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에서 관할하여 외국인을 통제하는 관점의 출입국관리의 하위정책으로 다뤄지고 있어서, 난민보호라는 선명한 정책을 집행할 단위가 ‘한국에 난민은 거의 존재하지 않고’, ‘한국정부의 역할은 난민의 유입을 차단하는 것이며’, ‘이미 들어온 난민들은 대부분 난민이 아니기 때문에 신속한 추방을 시도해야 한다’라는 형태의 출입국관리 위주의 관점에만 매몰되어 있음.
- 그 외에도 난민심사관수의 독립성의 미보장, 부족한 교육, 국가정황정보에 관한 조직부재, 통역지원체계의 부재에서 공정성의 흠결의 문제, 협소한 난민인정기준으로 인하여 난민협약 상 난민임에도 난민인정을 받지 못하는 난민의 수가 증가함.
- 증가하는 난민 심사건수에 비해 난민심사관의 인력부족으로 인해 심사건수가 적체되고, 심사기간이 1-2년에 달하게 지연되어, 난민들의 불안정한 체류기간이 장기화되고, 제도의 건강성도 훼손되는 악순환이 반복됨.

### ■ 세부 정책 내용

- 난민보호의 관점에서 포괄적이고 독립된 난민정책계획수립
- 각 지역 출입국사무소의 난민심사관과 통역인 충원 및 난민심사관 대상 난민보호 교육

### ■ 기대 및 파급 효과

- 난민인정절차의 공정성 및 인프라 확보로, 국제기준에 부합하는 난민지위심사 실시

## 9. 인도적체류자의 처우 보장

### ■ 제안 배경 및 필요성

- 난민법은 “고문 등의 비인도적인 처우나 처벌 또는 그 밖의 상황으로 인하여 생명이나 신체의 자유 등을 현저히 침해당할 수 있습니다고 인정할 만한 합리적인 근거가 있는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법무장관으로부터 체류허가를 받은 외국인”을 “인도적 체류 허가를 받은 사람”, “인도적체류자”로 용어 정의를 내리고 있음.
- 그러나 이러한 정의에 부합하는 적합한 용어는 해외 입법례 및 국제기준 등에 비추어 보았을 때 “보충적보호”임. 국제기준에서의 “보충적 보호”는 “고문방지 협약 및 자유권 규약 등에 의해서 보호해야 할 의무가 있으나, 난민의 5가지 박해사유에 포섭되지 않는 사람들을 보충적으로 추가 포섭하여 보호하는 것”을 의미함.
- 결국 인도적 체류지위는 보충적 지위로 용어를 변경하고, 난민에 준하는 보호를 해야 하는 “보충적 보호지위”와 시혜적 의미에서 임시적 체류 허가를 부여하는 “인도적 체류지위”를 구별하여 규정하는 것이 그 국제적 기준 및 제도 운영에 더 적합한 입법임.
- 그러나 당장 이러한 법개정이 어렵다면 최소한 인도적 체류지위자의 처우에 대해서 만이라도 난민에 준하는 보호를 하도록 개정이 시급함. 난민법은 인도적체류지위자에게 강제송환되지 않을 권리와 취업할 권리만 규정해 놓고 있음. 인도적체류지위자에게 G-1-6 비자를 부여하여 단순 임시체류와 구분이 잘 되지 않고, 국적법 상 영주자격을 획득할 수 없고, 가족결합도 불가함. 인도적체류지위자에게도 난민과 동일한 처우를 할 수 있도록 난민의 처우에 관한 규정을 준용할 수 있도록 개정 필요함.

### ■ 세부 정책 내용

- 난민법 제39조를 개정하여, 난민의 처우에 관한 규정을 인도적 체류지위자에게도 준용.
- 난민법 개정 전이라도 시급히 인도적 체류지위자의 체류자격 타입을 임시비자인 G-1이 아닌 장기 거주 가능한 비자로 변경할 것. 장기적으로는 인도적체류지위자를 보충적 보호지위자로 변경하는 난민법 개정이 필요함.

### ■ 기대 및 파급 효과

- 인도적 체류지위자의 처우를 개선함으로써 한국이 국제법상 인권 준수 의무를 다하게 됨.
- 인도적 체류지위자들의 처우가 개선됨으로써 한국 사회에서 인도적체류지위자들의 사회통합의 진전이 있을 것임.

## 10. 이주민에 대한 자의적 구금 금지

### ■ 제안 배경 및 필요성

- 이주민에게 강제퇴거명령이 내려지면 구금의 필요성이나 기한에 대한 판단이 이루어지지 않은 채 기계적으로 구금을 명하는 보호명령이 발부됨.
- 이로 인하여 본국으로 돌아갈 수 없는 난민신청자, 임금체불 등으로 국내 구제절차가 진행 중인 이주민이 장기간 구금이 되는 경우가 발생하게 됨. 올 초에는 미등록 체류자 단속 과정에서 체포된 남성이 자녀를 돌봐야한다고 요청하자 아이도 아버지와 함께 구금을 시키는 일이 발생함.
- 또한 독방 구금 중 난민신청자가 새우 껍기 고문을 당하는 등 학대가 발생하기도 하였고, 1년 이상 장기간 구금되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음. 지난 3월 헌법재판소는 무기한 구금을 가능하게 하는 출입국관리법 제63조가 위헌이라는 판단을 내렸으나 관련 법은 아직 개정되지 않음.

### ■ 세부 정책 내용

- 이주민에 대한 구금이 최후의 수단으로 활용되도록 하고, 구금 기간을 제한하고, 구금의 필요성과 구금이 끼칠 해악을 비교형량하고, 구금에 대해 법원에 이의신청할 수 있도록 관련 법 개정

### ■ 기대 및 파급 효과

- 이주민에 대한 자의적 구금 금지

---

## 제22대 총선 정책·비전 제안

# - 정치개혁 -

---

분야	정치
목차	<ol style="list-style-type: none"><li>1. 유권자의 표현의 자유 보장</li><li>2. 국회의원 선거제도의 비례성 향상 방안</li><li>3. 정당설립요건의 완화 및 지역정당제도의 도입</li><li>4. 대통령 및 지자체 단체장 결선투표제 도입</li><li>5. 선거공영제 확대</li><li>6. 근로자 및 장애인의 투표권의 실질적 보장</li><li>7. 국회의원의 과도한 특권 축소</li><li>8. 고위공직자 인사청문회 제도의 개선</li></ol>
단체 및 담당자명	기독교윤리실천운동 모두를위한정치운동, 이상민 본부장(변호사)
전화번호	02-794-6200
이메일	selight2@hotmail.com

## Ⅰ 정치 개혁 방향

선거의 계절이 왔다. 2024년 4월 10일 국회의원 총선거가 불과 4개월 밖에 남지 않은 2023년 12월 5일야 선거구 획정안이 국회에 제출되었다. 법정시한은 2023년 3월 10일이었다. 이것이 우리 정치의 현실이다. 그러나 정치 현실을 이유로 정치에 대해 관심을 끊거나 아예 투표마저 포기하기에는 정치가 우리의 삶에 너무도 큰 영향을 미친다. 그러므로 조금이라도 나아질 가능성이 있으면 그 가능성을 붙잡고서 제도를 바꾸고 선거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한다. 우리는 ‘우공이산’(愚公移山, 어리석은 노인이 산을 옮긴다)을 떠올리며, 좀 더 나은 선거제도와 정치문화를 만들기 위해 무엇을 바꾸어야 할 것인지에 대해 제안하고자 한다.

선거에서 말은 풀고 돈은 묶어야 한다. 유권자의 표현의 자유를 더 잘 보장하기 위한 공직선거법의 개정이 필요하다.

21대 선거에서 사표를 방지하고 비례성을 최대한 보장하기 위해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했는데, 거대 양당의 위성정당이 출현했다. 반드시 위성정당을 막는다는 목표를 정하고 여야가 머리를 맞대면서 효과적인 방법을 찾으면 될 듯한데, 이참에 준연동형을 포기하고 병립형으로 돌아가겠다고 한다. 거대 양당의 이와 같은 야합시도는 중지되어야 한다.

대부분의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정당의 설립이 자유로운데 우리 정당법은 정당설립의 요건을 지나치게 엄격하게 정하고 있다. 글로벌 스탠다드에 따라 정당설립요건을 완화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근로자들과 장애인들이 투표권을 제대로 행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추가적인 법적,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 더 많은 사람들이 투표장에 나와서 접근성의 제약을 받지 않고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게 해야 한다.

국회의원 선거제도를 잘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선거로 뽑힌 국회의원들이 국회의원직을 특권 행사의 도구로 사용하도록 해서는 안 된다. 국회의원의 입법활동비와 특별활동비를 폐지하라는 목소리가 높고 관련 법안도 제출된 바 있지만, 국회의원들은 그 요구에 귀를 닫고 있다. 그러면서 입법활동비와 특별활동비에 대해서 법적 근거도 없는 비과세 혜택을 받고 있다.

고위공직자 인사청문회는 이제 올림픽 레슬링 결승전처럼 종료 부저가 울릴 때까지 버티기만 하면 장관 등 고위공직자 타이틀을 거머쥌 수 있는 제도가 되었다. 비리 백화점이라고 할 만한 후보자도 청문회장 책상을 매트처럼 붙잡고 버티기만 하면 고위공직자가 될 수 있다. 이런 제도는 바뀌어야 할 것이다.

※ 본 정치개혁 분야 정책 제안서는 <2024정치개혁공동행동 10대과제>를 참고하여 작성하였습니다.

# 1. 유권자의 표현의 자유 보장

## ■ 제안 배경 및 필요성

- 현행 공직선거법은 선거운동의 주체, 방법, 시기에 대해 매우 강한 규제를 두어 유권자의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심각하게 제약하고 있음. 그러나 그 어느 때보다 선거 시기에는 시민들의 정치에 대한 자유로운 토론이 보장되어야 함. 선거운동의 자유는 최대한 보장하고, 선거자금만 엄격하게 규제하는 방식으로 전환해야 함.

## ■ 세부 정책 내용

- 공직선거법은 ‘선거운동’을 ‘당선되거나 되게 하거나 되지 못하게 하기 위한 행위’로 모호하게 정의하고 있는데(공직선거법 제58조 제1항 본문), 이를 개정하여 선거운동을 ‘특정 후보자’에 대한 ‘직접적·구체적·능동적·계획적인’ 행위로 보다 명확하게 규정할 필요가 있음.
- 투표참여 권유활동을 제한하는 공직선거법 제58조의2 단서를 삭제함으로써 자유롭게 투표참여 권유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함.
- 현행 공직선거법 제108조의3에 의하면 언론기관 등은 정당·후보자의 정책이나 공약에 대한 비교평가를 할 수 있으나, 점수를 부여하거나 순위나 등급을 정하는 방식은 금지되어 있음. 이로 인해 정책 및 공약에 대한 비교평가가 제한되고 유권자의 알 권리가 침해되므로, 이러한 규제도 폐지하는 것이 타당함.

## ■ 기대 및 파급 효과

- 정치에 대한 시민의 자유로운 토론이 보장되고 유권자의 정치적 표현의 자유가 신장됨.

## 2. 국회의원 선거제도의 비례성 향상 방안

### 가. 국회의원 비례대표 비율의 명문화 및 비례대표 의석의 확대

#### ■ 제안 배경 및 필요성

- 국회 비례대표 의석수는 17대 56석, 18대·19대 54석, 20대·21대 47석으로 지속적인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음. 헌법상 예정되어 있는 비례대표제를 지역선거구의 선거구획정의 편의를 위한 야합을 통해 별다른 근거 없이 지속적으로 축소하는 것은 부당함.

#### ■ 세부 정책 내용

- 감소 추세인 비례대표 의석수를 늘림으로써 국회 구성에 비례성이 더 구현되도록 하는 것이 필요함.
- 지역구 국회의원과 비례대표 국회의원 사이의 비율을 공직선거법에 명문화함으로써 비례대표 의석수 감축을 방지할 필요가 있음.

### 나.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유지 및 위성정당 방지법 제정

#### ■ 제안 배경 및 필요성

- 사표를 방지하고 비례성을 최대한 보장하기 위해서는 현행 준연동형 비례대표제가 아니라 독일식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임. 그런데 독일식 연동형 비례대표제의 경우에는 어떤 정당의 지역구 당선자 숫자가 비례대표 득표비율에 따라 그 정당에 할당되는 의석수를 초과하는 경우(이른바 “초과의석”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고, 이에 따라 전체 국회의원 숫자가 증가하게 될 수도 있음. 그렇지만 아직은 여론이 의석수 증가에 대해 부정적인 상황임.

#### ■ 세부 정책 내용

- 현행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당분간 유지함으로써 비례성을 증진하는 것이 현실적인 대안임. 다만, 그 경우에는 실효성 있는 위성정당 방지규정을 반드시 도입함으로써 거대 양당의 위성정당이 출현하는 것을 막아야 할 것임.

#### ■ 기대 및 파급 효과

- 국회 구성에 비례성이 보장되고 사표로 인한 민의 왜곡이 방지됨.

### 3. 정당설립요건의 완화 및 지역정당제도의 도입

#### ■ 제안 배경 및 필요성

- 현행 정당법은 중앙당을 수도에 두도록 하고(정당법 제3조), 5개 이상 시·도에서 각각 1,000명 이상의 당원이 있어야 정당을 설립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정당법 제4조, 제17조, 제18조). 그러나 대부분 민주주의 국가들에서는 정당의 설립이 자유롭고, 특히 법률에서 정당의 당원숫자를 특정 숫자 이상으로 요구하는 사례도 찾기 어려움. 또 우리 정당법은 인구가 많은 서울, 경기와 인구가 적은 제주의 차이를 인정하지 않고, 시·도당의 최소요건을 무조건 1,000명의 당원으로 정하고 있음. 헌법에 보장된 정당설립의 자유를 확대하기 위해서는 정당법은 최소한의 요건만을 규정해야 함.
- 중앙당 중심의 구조로 인하여 지역사회의 독립적이고 독자적인 정치활동의 폭이 대단히 좁은 것이 현실임. 한국사회가 수도권 중심의 불균형 발전과 지역소멸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지역의제를 충실하게 다루고 관련 정책을 추진하기 위한 정치구조가 절실하며, 이를 위한 제도적 방안으로 지방 선거에만 대응하는 지역정당 제도를 허용할 필요가 있음.
- 최근 헌법재판소는 정당법 중 전국정당조항이 합헌이라고 결정하였으나(2023. 9. 26. 선고 2021헌가23 결정), 합헌의견 4인, 위헌의견 5인으로 위헌의견이 더 많았지만 위헌정족수 6인에 미치지 못해 합헌으로 결정한 것임. 위헌의견은 '전국정당조항은 지역정당이나 군소정당, 신생정당이 정치영역에 진입할 수 없도록 높은 장벽을 세우고 있고, 각 지역 현안에 대한 정치적 의사를 적극적으로 반영할 수 있는 정당의 출현을 배제하여 풀뿌리 민주주의를 차단할 위험이 있다'는 점 등을 지적하였음.

#### ■ 세부 정책 내용

- 정당법을 개정하여 중앙당은 반드시 수도에 두도록 하는 규정을 삭제해야 함.
- 1개(현행 5개) 이상의 시·도에서 500명(현행 1천명) 이상의 당원을 모집하면 정당을 설립할 수 있도록 설립요건을 대폭 완화해야 할 것임

#### ■ 기대 및 파급 효과

- 헌법에 보장된 정당설립의 자유가 확대되고 각 지역 현안에 대한 정치적 의사가 적극적으로 표현될 수 있음.



## 4. 대통령 및 지자체 단체장 결선투표제 도입

### ■ 제안 배경 및 필요성

- 현재 공직선거법은 대통령과 지방자치단체의 장 선거에서 당선인의 결정방식으로 유효투표의 다수를 얻은 자를 당선인으로 결정하는 상대다수투표제를 채택하고 있음(공직선거법 제187조 제1항, 제191조 제1항). 그러나 상대다수투표제에 의하면 지지하는 사람보다 반대하는 사람이 더 많은 경우에도 당선될 수 있어, 대통령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 당선인의 민주적 정당성이 문제될 수 있음. 또한 과도한 단일화 논의 등 많은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음.

### ■ 세부 정책 내용

- 대통령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 선거에 결선투표제를 도입하여 당선인의 민주적 정당성을 강화하고, 선거 과정에서 더욱 폭넓은 민의를 수렴하도록 할 필요가 있음. 헌법 개정이 필요 없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선거에서 우선적으로 결선투표제를 도입하는 것이 바람직함.

### ■ 기대 및 파급 효과

- 당선인의 민주적 정당성이 확보되고, 선거 과정에서 과도한 단일화 시도로 인한 부작용이 발생하지 않게 됨.

## 5. 선거공영제 확대

### ■ 제안 배경 및 필요성

- 공직선거법은 각 공직선거마다 후보자가 납부해야 하는 기탁금을 정하고 있음(공직선거법 제56조). 현행 기탁금 제도는 경제력에 따라 피선거권을 제한한다는 비판을 받고 있음. 전반적인 기탁금 액수를 대폭 낮춤으로써 기탁금 제도가 재력이 없는 정치신인 등을 배척하는 도구로 악용되는 것을 막을 필요가 있음.
- 선거비용 보전의 경우, 득표율 15% 이상은 선거비용의 전액, 10% 이상 15% 미만은 선거비용의 50%를 보전 받고, 10% 미만은 선거비용을 전혀 돌려받지 못하도록 하고 있음(공직선거법 제122조의2 제1항). 이와 같은 선거비용 보전 기준은 정치 기득권층에 의한 장벽으로 작용하고 다양한 정치세력과 정치신인의 도전을 가로막고 있음.

### ■ 세부 정책 내용

- 국회는 2022. 4. 20. 공직선거법 개정을 통하여 장애인 및 청년 계층에 대하여 기탁금 및 기탁금 반환 기준을 일정 비율 감액하였는데, 전면적인 하향 조치가 바람직함.
- 선거비용 보전에 관한 반환 기준의 획기적인 하향 조정이 필요함.

### ■ 기대 및 파급 효과

- 당선인의 민주적 정당성이 확보되고, 선거 과정에서 과도한 단일화 시도로 인한 부작용이 발생하지 않게 됨.

## 6. 근로자 및 장애인 투표권의 실질 보장

### 가. 근로자의 투표권의 실질적 보장

#### ■ 제안 배경 및 필요성

- 공직선거법은 노동자의 투표시간 보장을 규정하고 있으나(공직선거법 제6조의2), 그 실효성은 늘 문제가 됨. 근로기준법은 공직선거법에 따른 임기만료에 의한 선거의 선거일(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 제10의2호)을 유급휴일로 정함으로써 노동자의 투표권을 보장하고 있으나(근로기준법 제55조 제2항, 동법 시행령 제30조 제2항), 현재 근로기준법 해당 조항을 적용받지 못하는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는 약 360만 명으로 추산되고 있음. 종사하는 사업장이 영세하다는 이유로 가장 기본적인 공민권 행사가 방해받는다는 것은 타당하지 않음.
- 장시간 근로, 교대제, 원거리 출퇴근, 근로형태 등의 이유로 인하여 선거일이 법정공휴일이라고 하더라도 투표하러 갈 시간을 보장받지 못하는 유권자도 상당히 많음. 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함.

#### ■ 세부 정책 내용

-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에 대해서도 투표권 보장을 가능하도록 하는 근로기준법 개정이 필요함.
- 실질적인 투표권 보장을 위해서 재보궐 선거처럼 적어도 오후 8시까지로 투표시간을 연장하는 것이 바람직함.

### 나. 장애인의 투표권 보장

#### ■ 제안 배경 및 필요성

- 공직선거법은 각급선거방송토론회가 개최하는 대담, 토론회의 경우에만 청각장애인선거인을 위한 자막방송 또는 한국수어통역을 의무사항으로 정하고 있음(공직선거법 제82조의2). 청각장애인선거인이 후보자에 대한 정보를 충분히 얻을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임.
- 공직선거관리규칙은 장애인 등 이동약자의 투표소 접근 편의를 위하여 투표소는 1층 또는 승강기 등의 편의시설이 있는 곳에 설치하도록 정하면서도 원활한 투표관리를 위하여 적절한 장소가 없는 경우는 예외로 하고 있음(공직선거관리규칙 제67조의2 제1항). 예외조항으로 인해 장애인 등 이동약자의 투표권이 제한되고 있음.

#### ■ 세부 정책 내용

- 각급선거방송토론회가 개최하는 대담, 토론회 이외 기타 방송광고, 방송연설, 대담, 토론회 등의 경우에도 자막방송 또는 한국수어통역을 의무사항으로 정할 필요가 있음.
- 이동약자의 투표권 보장을 위해서 공직선거관리규칙 제67조의2 제1항 단서를 삭제하거나 그 적용범위를 대폭 축소해야 할 것임.

#### ■ 기대 및 파급 효과

- 근로자와 장애인의 투표권이 실질적으로 보장되고 더 많은 유권자가 투표에 참여할 수 있게 됨.

## 7. 국회의원의 과도한 특권 축소

### ■ 제안 배경 및 필요성

- 국회의원의 과도한 특권이 계속 문제되고 있음. 국회의장 직속 자문기구인 ‘국회의원 특권내려놓기 추진위원회’는 2016. 10. 7. 불필요하거나 과도한 국회의원의 특권을 폐지하는 내용으로 활동결과보고서를 발표한 적이 있고, 그 이후 ‘불체포특권 남용방지, 묻지마 증인채택 방지, 친인척 보좌직원 채용 제한 등’의 개선안이 담긴 법률안이 국회에서 의결되기도 했음. 그렇지만 아직도 국민의 눈높이에 맞지 않는 과도하고 불필요한 국회의원의 특권을 축소해야 한다는 요구가 많음.
- 특히 국회의원 세비 중 입법활동비와 특별활동비를 폐지해야 한다는 지적이 많음. 입법활동비는 입법 기초자료의 수집·연구 등 입법활동을 위하여 매월 지급되는 수당이고, 특별활동비는 회기 중 회의참석시 지급되는 수당임. 2023년 기준으로 국회의원은 매월 입법활동비로 3,136,000원을 지급받고 있고, 특별활동비로 회기 중 1일당 31,360원을 지급받고 있음.
- 입법활동비와 특별활동비는 ‘실비변상적 급여’로 취급되어 소득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되지만, 실비변상적 급여를 열거하고 있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2조 각 호에는 국회의원의 입법활동비와 특별활동비가 열거되어 있지 않음.
- 정치후원금의 경우 현역 의원은 매년 1억5천만원씩, 선거가 있는 해에는 3억원씩 후원금을 모집할 수 있으나(정치자금법 제13조 제1항 제2호), 원외 신인은 (예비)후보로 등록한 경우에만 연간 1억5천만원을 모금할 수 있음(정치자금법 제12조 제1항 제4호). 또한 원외 신인은 사전선거운동이 제한되지만, 국회의원은 의정보고 명목으로 사실상 4년의 임기 내내 선거운동이 가능함(공직선거법 제111조).

### ■ 세부 정책 내용

- 입법활동과 회의참석은 국회의원의 당연한 의무이므로, 이에 대해 별도 수당을 지급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으므로, 해당 세비는 폐지해야 할 것임. 만일 입법활동비와 특별활동비를 한꺼번에 폐지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렵다면, 1단계로 특별활동비라도 먼저 폐지하는 것이 바람직함.
- 입법활동비와 특별활동비의 비과세에 대한 법적 근거가 없으므로 입법활동비와 특별활동비는 마땅히 소득세 과세대상에 포함해야 할 것임.
- 정치후원금 모금과 의정보고회 등 선거운동에 대하여 국회의원과 원외 신인 간에 존재하는 차이를 없앨 필요가 있음.

### ■ 기대 및 파급 효과

- 국회의원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높아지게 되고, 현역 국회의원과 원외 신인이 기울어지지 않은 운동장에서 선거를 준비하게 됨.

## 8. 고위공직자 인사청문회 제도의 개선

### ■ 제안 배경 및 필요성

- 고위공직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가 형해화되고 있음. 문재인 정부에서 인사청문경과보고서가 채택되지 않았음에도 대통령이 임명한 장관급 인사는 23명이었고, 현 정부 들어서는 2023. 11. 20. 기준으로 벌써 19건에 이르고 있음. 또한 인사청문회가 도덕성 검증을 위한 이른바 ‘신상털이’에 치중하면서 정작 후보자의 정책수행능력이나 자질에 대한 검증은 소홀히 이루어진다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음.

### ■ 세부 정책 내용

- 후보자에 대한 도덕성 검증을 위한 사전 검증제도를 도입하는 것이 필요함. 사전 검증의 세부항목(도덕성, 공직윤리 관련한 항목으로 구성), 기준 등을 법령에 정하고, 국회에 설치된 사전 검증 위원회에서 그 항목 및 기준에 따라 후보자의 적격 여부를 1차적으로 판단하게 함. 다만, 사전 검증위원회는 공직 후보자의 사생활을 보호하기 위하여 비공개로 진행함. 사전 검증절차 이후 진행되는 인사청문회에서는 사전 검증절차의 결과보고서를 반드시 고려하도록 정하고, 나아가 사전 검증을 통과하지 못한 후보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고위공직자로 임용되지 못하도록 하는 방안도 고려할 수 있을 것임.
- 국회에서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채택하지 않은 후보자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대통령이 해당 공직에 임명할 수 없고, 예외적으로 추가적인 절차를 통해 적절한 소명이 이루어진 경우에만 임명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검토할 수 있을 것임.

### ■ 기대 및 파급 효과

- 도덕성과 정책수행능력을 갖추지 못한 후보자가 고위 공직에 진출하는 것을 실질적으로 방지할 수 있게 됨.



---

## 제22대 총선 정책·비전 제안

# - 청년 -

---

분야	청년
목차	<ol style="list-style-type: none"><li>1. 참여•권리<ul style="list-style-type: none"><li>- 정부부처 및 자치단체, 국회자문단, 사회문제 해결 기구에 청년 참여 확대</li><li>- 청년 정책 제안 플랫폼 운영</li></ul></li><li>2. 교육<ul style="list-style-type: none"><li>- 온라인 학습포털 운영</li></ul></li><li>3. 일자리<ul style="list-style-type: none"><li>- 청년 일경험 보장제도 신설 및 기업의 근로기준법 교육 실시</li></ul></li><li>4. 주거<ul style="list-style-type: none"><li>- 청년주거혁신: 주거안정성과 질적 향상을 위한 지역별 대응 정책</li></ul></li><li>5. 복지•문화<ul style="list-style-type: none"><li>- 마음건강검진을 통한 청년 정신건강 향상과 사회적 인식 제고</li><li>- 1인 가구 소외를 막는 건강한 지역 공동체 문화 형성</li></ul></li></ol>
단체 및 담당자명	(사)기독교윤리실천운동 청년운동본부, 김현아 사무국장
전화번호	02-794-6200
이메일	cemk@hanmail.net

## ■ 청년 분야의 현실과 개혁방향

기윤실 제22대 총선-국회의원선거 정책비전제안에 앞서

그 어느 때보다 세대 간 반목과 극도의 상호 불신이 표면에 드러난 이때, 총선을 앞두고 청년정책에 '비전'을 제시하는 것은 청년 문제에 대한 깊은 이해와 실질적인 해결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중요한 작업일 것이다.

본 정책 제안의 방향성은 다음과 같다. :

첫째, 정당 간 숙의와 협력을 통한 청년 정책의 타당성 및 실효성 증진을 촉구한다.

둘째, 각 지자체별로 청년 정책 수요를 파악하고, 정부 차원의 정책 방향성과 계획을 검토하여 청년 참여를 통한 조례 및 세부 계획 수립을 촉구한다.

셋째, 지역문제 해결 및 정책 수립 과정에 청년 민간위원의 의무 도입을 촉구한다.

본 제안은 주거, 일자리, 교육, 복지문화, 그리고 참여권리에 이르는 각 영역에 대한 기윤실 청년위원들의 전문성과 관심을 바탕으로 작성되었다.

본 정책비전 제안의 내용들은 청년이 단순한 정책의 수혜자가 아니라, 정책 설계의 핵심 참여자로서의 역할을 강조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실수요자인 청년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경험의 공유가 정책의 효과성과 실효성을 높일 수 있다는 믿음 하에, 본 제안서에 포함된 제도와 조치의 타당성을 확인하고, 입법화하고, 수행하는 모든 과정에서 청년 당사자가 정책 설계자로서 적극 참여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중앙정부와 정당, 지자체의 각 무대에서 청년들이 청년위원회 혹은 청년위원으로 별개로 존재하는 것에 그쳐서는 안 된다. 청년들의 참여와 목소리가 정책 수립의 핵심이 되려면 이 제안서에서 다루는 주거, 일자리, 교육, 한반도평화, 생태환경 등 모든 정책분야의 의사결정의 주요 장면에 청년이 항상 있어야 한다. 이 제안서의 내용이 총선 국면에서 구호로 외쳐지는 데 그치지 않고 생명력을 가지려면, 선거 이후에도 주요 정책의 추진에 본 제안서에 담긴 '청년(미래세대)의 시각', '지속가능한 한국사회'가 선출된 국회의원의 의정활동의 근간이 되어야 할 것이다.

# 1. 참여·권리 – 정부부처 및 자치단체, 국회자문단, 사회문제 해결 기구에 청년 참여 확대

## ■ 제안 배경 및 필요성

- 국무조정실은 청년의 목소리를 정책 수립 과정에 반영하기 위해 정부 부처에 ‘2030자문단’과 ‘청년보좌역’을 신설하여 기획재정부, 교육부, 행정안전부, 문화체육관광부, 보건복지부, 고용노동부, 국토교통부, 중소벤처기업부, 금융위원회 등 9개 부처를 대상으로 시범운영을 시작해 지난 2023년 8월에는 24개 장관급 기관 전체<sup>2)</sup>로 확대함. 청년보좌역들과 2030자문단은 청년 당사자 입장에서 직접·수시로 장관과 소통하고 정책과정에 적극 참여해 그동안 정책과정에서의 청년소외 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간담회, 정책 과제 제시, 정책 홍보 등을 수행해 왔다고 밝힘.<sup>3)</sup>
- 다만 기관 당 소속되어 있는 청년보좌역은 1명으로, 해당 기관의 정책 수립과 운영 과정에서 청년의 인식과 수요를 파악하고 반영하는 등 수행해야하는 역할에 비해 역량의 한계가 존재함. 국정 과제 추진에 있어 ‘청년 참여’의 가치와 지향이 실효성있는 과정과 결과로 드러나기 위해서는 청년보좌역 및 자문단의 수와 관련 예산을 확대하고, 회의록 및 수행보고서를 공개하는 등 ‘청년 참여’의 양과 질을 높이는 것이 필요함.
- 또한 각 부처에서는 청년 정책 수요조사, 정책 수립 타당성 검토, 청년의 삶 변화 추적 및 분석 등 관련 연구가 동반되어야 하며, 청년 정책이 청년들의 삶 깊숙이 영향력을 가질 수 있도록 청년들이 피부로 체감하고 있는 현실의 문제는 물론, 기후위기, 동아시아 평화 등 장기적 관점의 사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을 청년 주체적으로 수립, 운영해야하며 청년친화적이고 직접적인 전달체계가 확립되어야 함.
- 대한민국 21대 국회 기준 청년 국회의원 비율은 4.3%로 OECD 국가 중 최하위권으로 나타남(국회 입법조사처, 2021 - 북유럽국가 30%안팎, 한국은 프랑스, 미국, 일본보다 낮음). 40세 미만 청년 유권자 비율이 전체 유권자의 33.8%임을 생각할 때, 청년 층을 대리하고 대변할 수 있는 국회의원의 수가 턱없이 적음. 이는 입법기관과 국정에서 청년의 삶의 현장과 청년 정책 관련 문제가 제대로 반영되지 못하고 소외될 수 밖에 없는 구조임을 보여줌. 청년의 입법 기관 참여를 높이고 청년 정책이 법제화 될 수 있도록 하는 구조로의 개혁이 시급함.

## ■ 세부 정책 내용

- ‘청년보좌역’ 및 ‘2030자문단’ 확대 및 정보공개 : 정부부처 청년 인원 확대, 기초자치단체 및 공공기관 ‘청년보좌역’ 및 ‘2030자문단’ 신설 및 확대, 회의록 및 수행보고서 기명 공개
- 자치단체의원 청년비례제 도입 : 전체 의원수 또는 지역 내 인구수 대비 청년의원 최소 비율 지정
- 사회적 문제해결 기구에 청년 참여 확대: 전 세계적, 전 세대적 장기 과제인 기후위기 대응 및 동아시아/전쟁반대 평화 행동을 위한 공론장 및 의사결정기구에 청년 세대의 주도적인 참여 기회 보장

2) 기재부·교육부·행안부·문체부·복지부·고용부·국토부·중기부·금융위원회·과기부·외교부·통일부·법무부·국방부·보훈부·농식품부·산업부·환경부·여가부·해수부·방통위·공정위·권익위·개인정보위

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www.korea.kr, 2023.08.07, 국무조정실)



- 국회의원 선거제도 개혁 및 국회 상임위원회 청년감사단(監査團) 신설: 청년의 국회의원 출마 문턱을 낮추기 위한 기탁금 지원제도 마련 및 정치후원금 모금 관련 제도 개선, 국회 상임위원회 기능 강화를 위한 청년 자문단 및 감사단 운영

### ■ 기대 및 파급 효과

- 청년 참여 확대를 통한 왜곡되고 협소한 정책 보완 및 청년 목소리와 권리 보장
- 공동체의 일원으로서 사회 문제 해결 능력 및 주인의식 배양
- 청년의 인식과 관점을 전 정책, 전 세대와 동등한 부분으로 수용하는 사회 문화 형성
- 청년들이 현재 삶의 터전이자 미래 생존 공간으로서 대한민국 및 지구공동체를 올바르게 건설하는 주도성 획득

## 2. 참여·권리 - 청년 정책 제안 플랫폼 운영

### ■ 제안 배경 및 필요성

- 시도별, 시군구별 청년 네트워크가 제각기 운영되고 있으며 청년모임과 행사를 통해 정책제안 활동
- 서로 중복되는 영역의 사업을 제각기 운영하고 있어서 상호 정보공유 및 정책제안 일원화가 필요함
- 국무조정실 청년정책조정실 “청년포털”은 청년신문고에서 개인적인 의견만 게시판 형태로 작성 가능
- 교육부는 “함께학교” 홈페이지를 통해 교육 3주체 간 상호 소통 및 새로운 교육정책 제안 활성화

### ■ 세부 정책 내용

- (가칭) ‘청년함께’ 청년정책 제안 플랫폼 운영
  - 전국의 20대와 30대 청년을 대상으로 운영
  - 시도별, 시군구별 운영되는 청년정책 사업 및 정책효과 비교
  - 새로운 청년정책 상시 제안 및 투표 가능

### ■ 기대 및 파급 효과

- 청년정책에 대한 사회적 관심 증대 및 상호 소통 확대
- 지역별 청년정책 제안 및 청년 네트워크 운영 활성화

### 3. 교육 - 온라인 학습포털 운영

#### ■ 제안 배경 및 필요성

- 시도별, 시군별 청년 교육 프로그램 지원 및 참여대상 청년수가 적어서 참여에 어려움이 있음.
- 오프라인 청년 교육활동의 경우 기수 당 보통 10명 내외의 소규모로 운영함.
- 디지털 신기술 교육과 같은 특정 기술 분야에 편중되어 있음. (예, 서울시 청년취업사관학교)
- K-MOOC의 경우, 다양한 온라인 강좌를 방송사 및 해외와 연계하여 제공하고 있음.

#### ■ 세부 정책 내용

- (가칭) '청년공부' 청년 온라인 학습포털 운영
  - 전국의 20대와 30대 청년을 대상으로 운영
  - 자신의 삶을 되돌아보는 특강과 강의
  - 실시간 강의와 다시보기 강의를 함께 제공
  - 오프라인 강의 정보를 공유하며 홍보 가능

#### ■ 기대 및 파급 효과

- 비대면 시대에 적합한 온라인 학습 활성화
- 청년 교육정책 참여자 증대

## 4. 일자리 - 일경험 보장제도 신설 및 근로기준법 교육 실시

### ■ 제안 배경 및 필요성

- 기업의 경력직 채용 선호로 실업률 상승
  - 코로나19로 인한 경제 불황과 부동산 임대료 및 인건비 상승이 기업의 경력직 채용 선호로 이어짐.
- 체계적인 일 경험을 위한 일 경험 보장제도 필요
  - 경력을 쌓기 위해 일경험이 필요하지만 현실적으로 취업하지 않으면 일경험이 어려운 청년들을 위한 『대학 - 기업 - 기관』이 함께 연계한 양질의 일 경험 보장제도 필요.
- 한국 청년실업률은 전체 실업률 대비 2.8배로 OECD 5위이다.(한겨레 21.10.20.) OECD(2013)에서는 청년 일자리 정책을 청년 실업률을 감소시키는 정책과 청년의 장기적인 고용전망을 확대하는 정책으로 나누었다.(세계와 도시 15호, 2016, 김주일)
- 청년 실업률을 감소시키는 정책의 특징
  - 청년일자리 수요를 발굴하고 창출
  - 실직 청년에게 적절한 수입 제공
  - 저 숙련 청년의 취업 장벽 해소 지원
  - 인턴과 같은 일자리 탐색 기회 확대
  - 인적자원 개발 기회를 확대하여 개인 역량 강화
- 청년의 장기적인 고용전망을 확대하기 위한 정책 방향
  - 직업세계에 대한 교육과 체험을 통한 진로 설계
  - 직업 교육의 실효성 높임
  - 학교에서 직장으로 이전이 원활하도록 함
  - 취약계층 청년을 위한 제도 정비
- 청년 실업률 감소와 장기 고용전망 확대를 기본 골자를 하되, 한국의 제도와 상황에 맞게 개혁방향을 잡고, 아래와 같이 일자리 정책을 제안함.
  - 청년 일경험 보장제도 신설
  - 국민취업지원제도 내에 근로기준법 교육 포함
  - 취업·창업 준비생 심리상담 바우처 제공, 공공시설 개방, 전세대출 확장

## ■ 세부 정책 내용

- 청년 일 경험 보장제도 신설
  - 산발적으로 퍼져있는 청년인턴사업(예. 고용노동부의 디지털 일자리 사업, 서울시의 서울형 뉴딜일자리 사업 등)을 정리 및 통합하여『대학 - 기업 - 기관』이 함께 연계한 체계적인 청년 일 경험 보장제도 신설 필요.
- 국민취업지원제도와 연계하여 청년의 실질적인 일 경험 보장
  - 취업 교육 후 바로 취업이 불가능한 현 상황에서 구직자의 취업을 위한 노력만을 요구하는 국민취업지원제도의 부족한 점을 보완. 교육 후 청년 일 경험까지 이어지도록 제도 마련 필요.
- 청년 일 경험 제도 도입 기업에 인건비 지원
- 대학 인턴십 프로그램과 연계하여 학교 수업으로 기업에서 일 경험을 할 수 있도록 지원
- 청년 일 경험 내 근로기준법 교육 필수 이수
  - 현재 국민취업지원제도 내에 근로기준법 교육이 없어 청년들이 산업현장에서 부당한 상황에 어떻게 대처해야할지 어려워함. 근로기준법 교육으로 어떤 권리와 책임을 가지고 있는지 알 수 있도록 함.

## ■ 기대 및 파급 효과

1. 청년 실업률 감소 및 직업 경험 향상
  - 경력직 선호에 의한 청년 실업 문제 해결 기여
    - 청년들에게 다양한 산업 분야에서 실질적인 일 경험을 제공하여, 취업 시장에서의 경쟁력을 향상시킴.
    - 청년들이 양질의 일자리에 접근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장기적으로 국가 전체 실업률 감소에 기여.
  - 전문성 및 실무 능력의 향상
    - 실제 업무 환경에서의 경험을 통해 청년들이 전문적인 기술 및 실무 능력을 키울 수 있음.
    - 구직자들의 취업 준비 과정을 보다 목적에 맞게 조정하고, 실질적인 직무 수행능력을 개선하는 데 도움을 줌.
2. 산업계와 교육계의 연계 강화
  - 학교 교육과 산업 현장 간의 간극 줄임
    - 대학과 기업, 기관 간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이론과 실무가 결합된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 이를 통해 학생들이 학교에서 배운 지식을 실제 업무에 어떻게 적용할 수 있는지를 배우고, 직업 세계에 보다 쉽게 적응할 수 있도록 지원.
  - 실무 경험과 교육의 통합
    - 대학생 및 졸업생 구직자들에게 기업 환경에서의 인턴십 기회를 제공하여 실무 경험을 교육의 일부로 통합.
    - 이러한 경험은 학생들이 직업 세계에 대한 현실적인 이해를 갖게 하고, 졸업 후 취업 준비에 있어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

### 3. 기업의 인재 채용 효율성 증대

#### ○ 기업의 인재 발굴 및 양성 과정 강화

- 청년 일 경험 프로그램을 통해 기업들은 잠재적인 인재를 사전에 발굴하고, 실무에 적합한 방식으로 훈련시킬 수 있는 기회를 가짐.
- 이는 채용 과정을 보다 효율적으로 만들고, 장기적으로 기업의 인력 관리 및 개발 전략에 기여.

#### ○ 기업과 청년 간의 상호 이해 증진

- 청년들이 기업 환경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기업은 청년 구직자들의 잠재력과 능력을 평가할 수 있음.
- 이 과정을 통해 기업과 청년 간의 상호 이해가 증진되며, 장기적으로는 보다 매끄러운 채용 및 근무 환경이 조성됨.

### 4. 법적 지식 및 권리 인식의 증진

#### ○ 근로기준법 및 직장 내 권리에 대한 교육 포함

- 청년들이 근로기준법 및 직장 내 권리와 책임에 대해 배우며, 부당한 대우에 대처하는 법을 배움.
- 이는 청년들이 직장 내에서 자신의 권리를 옹호하고, 건강한 근무 환경을 유지하는 데 기여.

### 5. 국가 경제에 대한 긍정적 영향

#### ○ 취업률 증가 및 경제 성장 촉진

- 국민취업지원제도의 실질적 취업률을 높이고 부족한 지점을 보완.
- 청년들의 취업률 증가는 국가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 소비 활동을 촉진함.
- 기업의 생산성 향상과 인재 채용의 효율성 증가는 경제 성장에 기여함.
- 산발적인 일 경험 제도록 통합하고, 실업률 해소를 위한 『대학 - 기업 - 기관』의 상호 연계가능

### 6. 사회적 통합과 다양성 증진

#### ○ 다양한 배경의 청년들이 프로그램에 참여

- 다양한 배경과 전문성을 가진 청년들의 참여는 사회적 통합과 다양성을 증진시킴.
- 이는 사회 구성원 모두에게 더 폭넓은 기회를 제공하고, 다양한 관점과 아이디어의 교류를 촉진함.

## 5. 청년주거혁신 : 주거안정성과 질적 향상을 위한 지역별 대응 정책

### ■ 제안 배경 및 필요성

#### ○ 주거 안정성의 부재

- 2021년 기준, 청년 가구의 자가보유율은 13.8%로 전체 가구의 60.6%와 비교하여 현저히 낮음<sup>4)</sup>. 최근 정부의 정책기조는 공공임대(공공분양(내집 마련) 확대임. 청년 청약통장과 청년 주택드림 대출(청년주담대) 정책으로 청년의 내집 마련을 유도하고 있으나 내집마련을 할 금전적 여유가 없는 청년을 위한 공공임대 예산은 지속해서 삭감되고 있음.<sup>5)</sup>
- 비정상적인 부동산 구조로 인해 사회적 재난이라 할 수 있는 전세사기 청년 피해자가 속출하고 있으나, 이에 대한 실효성 있는 대책이 나오지 않는 실정임.

#### ○ 질적 측면의 주거 개선

- 청년 최저주거기준<sup>6)</sup> 미달 가구 비율은 7.9%로, 일반 가구(4.5%)보다 높으며, 1인당 주거면적은 30.4㎡로, 일반가구(33.9㎡)보다 좁음.<sup>7)</sup>
- 공공임대아파트 단지 중 임차인대표회가 구성된 단지는 50.6%이며, 그 중 청년이 구성원의 대부분인 행복주택의 경우 28.9%의 단지에서만 임차인 대표회가 구성됨. 임차인 대표회가 구성되지 않음으로 인해 작은도서관, 피트니스센터 등 편의시설로 활용할 수 있는 공간을 사용할 수 없게 됨.<sup>8)</sup>

#### ○ 지역적 차이를 고려하지 않은 천편일률적 주거정책

- 서울 및 주요 거점 수도권 도시의 주택가격 상승은 청년층이 주택을 구하는 데 큰 장벽이 됨. 서울 중심의 일자리로 인해 과도한 주거비용을 내고 서울에 살 수 없는 청년은 쉽사리 일자리를 구하기 어려워지고, 설령 일자리를 구하더라도 주거비용으로 인해 일터와 먼 거리에 거주하게 됨. 이는 장시간의 출퇴근으로 인한 삶의 질 저하로 이어짐.<sup>9)</sup>
- 반면, 지역의 경우 수도권에 비해 주거비용이 저렴함에도 불구하고 청년은 지역을 떠나고 있는 것이 현실임. 이는 주거환경 뿐 아니라 청년에게 필요한 다양한 인프라(문화, 일자리 등)의 부재로 인한 것으로, 여러 인프라를 고려하지 않은 단순한 주거공급의 확대, 주거비용 절감만으로는 청년들이 지역에 남게 하는 유인책이 될 수 없음.

4) 2021년 주거실태조사 결과

5) 세입자·청년·주거·빈곤·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내나라 공공임대'가 발표한 2023~24년 공공임대주택 예산안 의견서에 따르면, ①2018년 2.8조원→2022년 9.1조원으로 연평균 34.7%씩 증가했던 장기공공임대 용자 예산이 윤 정부에선 연평균 18.8% 줄어 6조원으로 축소, ②주택도시보증금 출자 예산이 윤 정부 2년 만에 약 2조원 삭감. 정부의 직접 지원인 출자를 줄이면 공공임대주택을 짓더라도 임대료가 높아져 저소득층을 위한 물량은 사실상 감소 예상. ③공공택지 확보가 어려운 도심 저소득층에게 꼭 필요한 매입임대 예산이 2022~24년 동안 용자 2.2조원(37.8%), 출자 0.9조원(27.3%)씩 삭감. ④기존 유형 통폐합(통합공공주택: 기존의 임대주택인 영구·국민·행복주택 등을 하나로 통합한 것으로 소득 기준 등 자격을 완화해 최대 30년까지 거주가 가능한 주택)을 계기로 건설형 장기공공임대주택 출자 예산도 계속 축소(2022년 3.3조원→2023년 2.1조원→2024년 1.9조원) 전망. 반면, 분양주택·민간임대지원 예산은 40.4%나 증가(2023년 3.2조원→2024년 4.3조원).

6) 최저주거기준의 면적: 1인가구 기준 14㎡

7) 2021년 주거실태조사 결과

8) LH 공공임대주택 절반 이상 '임차인 대표회' 구성 안 돼

: <https://www.edaily.co.kr/news/read?newsId=01886006632464384>

9) 수도권 출퇴근 계산기: <https://www.donga.com/news/Society/article/all/20231130/122412701/1>

## ■ 세부 정책 내용

### ○ 주거안정성 개선을 위한 세부 정책

- 전세사기 전세사기는 집값 하락 리스크를 대비하지 못한 사회적 재난임에도 불구하고 국가는 이에 대한 책임을 방기하고 구조적인 문제로 인한 비용을 개인이 오롯이 떠안게 됨. 특히 자가보유율이 13.8%에 불과한 청년계층의 경우 전세사기 피해자가 많고, 피해를 회복할 자원이 제한적임.  
따라서 ①전세사기 및 깡통전세 피해자를 위한 법률 및 금융상담, 정부의 대위변제 및 채권 양수 등의 실질적 방안 모색 ②추후 발생할 수 있는 유사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대책 마련, ③전세사기로 인한 HUG 대위변제에 대한 낮은 회수율의 개선안 마련 등이 요구됨.

### ○ 질적 측면의 주거개선을 위한 세부 정책

- 2011년 이후 개정되지 않은 최저주거기준 상향 및 청년의 특성을 고려한 청년표준주거기준안 마련.
- 공공임대 및 행복주택의 경우 임차인 대표회 활성화를 위한 제도 마련. 임차인 대표회 구성이 어려운 경우에는 대체 수단 도입.
- 다양한 형태의 사회적 주택<sup>10)</sup> 지원 정책을 통해 주거와 연계된 교육, 문화 인프라 향유 및 청년 주도적 공동체성 회복.

### ○ 수도권 청년 주거 세부 정책

- 공공임대 예산 증액 및 효율적인 재원 운용을 통해 공공임대주택 공급 확대.  
: 전술한 내용과 같이 최근 정부의 기조는 공공임대→공공분양 및 내집마련으로 전환하고 있으나, 대출은 분양가 6억원 이하의 주택에 한정되어 서울 및 거점 수도권 도시의 경우 대출이 불가하며, 내 집마련비용의 20%도 마련할 수 없는 청년의 경우 정책혜택을 받을 수 없음. 또한 수도권 특성상 공공택지 확보가 어려운 점, 최근 건축 자재비 폭등 이슈 등으로 인한 미승인 물량 폭증을 고려했을 때 수도권의 경우 주택 분양 및 공급 확대보다는 기존에 있던 주택을 활용한 청년매입임대 정책을 확대하는 것이 바람직한 수도권 청년주거정책임.

### ○ 지역 청년 주거 세부 정책

- 실효성 있는 일자리 연계형 지원주택 정책 확대  
기준에 '일자리 연계형 지원주택' 정책이 있으나, 실질적으로 일자리 정책과 연계된 주거정책이 아닌, 공공임대주택을 제공하는 수준의 정책적 한계가 있음. 이는 지역산업 육성과 연계한 청년주거정책으로 이어져야 청년을 지역에 남고, 지역으로 유인하는 효과를 가져올 수 있음.
- 도시재생과 연계한 청년주거정책(주거-생활SOC-일자리가 결합된 모델<sup>11)</sup>)  
지역의 경우 구도심 공동화 현상 등으로 더 이상 사용하지 않는 유휴공간이 발생. 이를 국가는 매입 혹은 장기임대하여 청년을 통한 도시재생 및 청년 주거공간으로 활용하는 것이 필요함.

## ■ 기대 및 파급 효과

- 전세사기 대응, 공공임대 예산 증액 및 실효성 있는 일자리 연계형 지원주택 정책으로 인한 주거안정성 확보.
- 최저주거기준 상향 및 청년표준주거기준안, 실효적인 공공임대 임차인대표회 정책, 사회주택 지원 정책 확대를 통한 주거환경의 질적 향상 도모.
- 수도권-지역의 특성을 고려한 별도 정책 마련을 통한 청년주거정책의 실효성 향상.

10) 서울시 사회주택 플랫폼: <https://soco.seoul.go.kr/soHouse/main/contents.do?menuNo=300007>

11) '우리가 함께 만들어가는 군산형 도시재생 실현': <https://www.jjn.co.kr/news/articleView.html?idxno=824248>

## 6. 복지·문화

### – 마음건강검진을 통한 청년 정신건강 향상과 사회적 인식 제고

#### ■ 제안 배경 및 필요성

- OECD 국가들 중 최고 수준의 우울, 불안을 겪는 청년들
  - 청년들의 우울, 불안으로 인해 고립, 은둔, 구직 포기 청년이 늘어나고 있음. 개인적인 문제를 넘어서 사회적인 현상으로까지 이어지는 추세
  - 장기화되는 취업 둔화와 과도한 경쟁 사회 속에서 시달리는 청년들의 정신 건강 상태를 주기적으로 확인하고 관리해야 할 필요가 있음
- 정신 건강의 중요성 대두에 비해 실제 조치는 미비
  - 현재 전 국민을 대상으로 실시되고 있는 국민건강검진제도에는 정신 건강을 점검할 수 없는 항목이 거의 없음. 국민건강검진 항목에 포함되어 있는 '정신건강검사\_우울증' 항목은 10년에 한 번씩 시행되어 실효성이 떨어짐
  - 각 구 가족센터 프로그램 대상이 다문화 가정, 임산부 등 특정 계층에 치우친 경우가 많아 일반 청년들이 이용 가능한 프로그램이 적음

#### ■ 세부 정책 내용

- 마음건강검진 도입
  - 국민건강검진제도 항목에 불안, 스트레스 등 마음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기본적인 정신건강 항목들을 필수 검진 항목으로 지원하고 최소 2년에 한 번씩은 검사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
  - 검진 결과에 따라 저렴한 금액으로 심리 상담 및 정신과 치료를 받을 수 있게 후속 조치 시행
- 각 구 가족센터의 프로그램 다양화와 역할 강화
  - 지역 청년들의 정신건강 서비스 수요 및 현황을 조사해 이들이 실질적으로 겪는 정신 건강 문제, 스트레스 요인 등 도움이 필요한 영역 파악
  - 가족 센터가 지역 청년들 정신건강 케어의 주체가 되어 수요에 맞는 다양한 정신건강 증진 프로그램을 개설을 통해 접근성 강화
- 정신건강 의료 인프라 개선
  - 정신건강 치료를 위한 병원 및 시설을 확충하고 전문가 양성 지원
  - 정신건강 장애를 가진 청년들을 위한 특화된 시설을 운영하여 개인 맞춤형 치료 제공

#### ■ 기대 및 파급 효과

- 청년세대의 심리 문제 예방 및 사회적 효과 증진
  - 정신건강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이 증가하여 사회 전반에 건강한 정신건강 문화가 확산됨. 또한 정기적으로 마음건강검진을 받음으로써 정신건강에 대한 인식과 실제 조치 사이의 간극을 줄이고, 필요 시 조기에 대응 가능
  - 정신건강 서비스의 확대로 사회적으로 취약한 청년들의 지원이 강화되어 사회적 평등 증진
- 저렴한 심리 상담 및 정신과 치료로 치료비용 절감
  - 마음건강검진 결과에 따라 저렴한 비용으로 심리 상담 및 정신과 치료를 받을 수 있게 되어 국민들의 치료비용 부담 감소
- 일자리 창출을 통한 경제적 기여
  - 저렴한 치료 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면서, 심리 상담사와 정신과 의사의 수요도 증가할 것이므로 일자리 창출에 기여



## 7. 복지·문화

### - 1인 가구 소외를 막는 건강한 지역 공동체 문화 형성

#### ■ 제안 배경 및 필요성

- 1인가구 증가와 지역과 단절된 삶
  - 통계청의 2022년도 1인 가구 합계는 7백5십만 명으로, 전년 대비 4.7% 증가. 약 33만 6천 명으로 해마다 꾸준히 늘고 있음.
  - 주거지 이동은 주거 지역의 역사, 문화, 선주민 등에 대한 관심보다는 학업 또는 직장, 결혼을 위한 필요에 의해 사는 주거 공간의 의미가 큼.
  - 주거환경 자원부족, 이웃 주민 간의 유대, 혼잡한 물리적 환경은 스트레스 요인으로 작용하여 거주민 우울에 영향을 미치며, 우울증 유병률을 높임(Cutrona et al., 2006)
  - 주변 이웃이나 친구와의 관계가 심리적 안녕감 증진, 선행 연구 결과(Walker & Hiller, 2007)

#### ■ 세부 정책 내용

- 지역 내 교류를 위한 품앗이 문화 형성을 위한 문화센터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 취미, 취향, 성향, 관심사 등 단기부터 주기적으로 소모임을 조성하여 지역 내 교류 활성화
  - 개인의 품앗이를 강제하는 것이 아닌, 주민센터 혹은 청년센터, 플랫폼을 통해 서로 물품, 지식, 재능 등을 공유하고 주민 간 소식을 직·간접적으로 알 수 있도록 함
- 지역 내 사회문제해결 프로젝트 지원
  - 지역 청년의 아이디어를 기반으로 교통, 환경, 주택, 시설, 사회 등 지역 내 사회문제에 동의하는 청년들이 함께 모여 해결할 수 있도록 공동체 프로젝트 지원
  - 살기 좋은 지역사회를 만드는 것을 목표로 청년의 건강한 사회 공헌 활동과 더불어 건강한 지역 문화로 발전할 수 있음
- 청년 활동가 및 창업가를 위한 초기 활동 지원
  - 청년 활동가 및 창업가가 경력을 쌓을 수 있도록 서울청년센터 오랑, 창업센터 등 다목적 공간에서 지역 주민들을 대상으로 하는 강의 및 세미나 활동을 지원
  - 지역 청년과 주민들이 함께 특정 주제로 모여 교류하고 소통할 수 있도록 함
  - 지역 청년과 지역 소상공인 연결을 통해 소상공인은 기업에 직·간접적인 도움을, 청년은 지역 활동과 취/창업에 필요한 포트폴리오를 만들며 지역 경제 활성화에 도움
- 지역 내 교류 활성화를 위한 지역 포인트 제도
  - 주거 지역 기관 및 센터, 모임 참여 시 포인트 제공으로 지역 내 활동 장려
  - 지역 포인트 제도 : 지역 활동을 포인트로 환산하여 지역상품권 및 교환권 등으로 제공

#### ■ 기대 및 파급 효과

- 주거 지역에 대한 관심과 지역별 문화 형성
  - 지역에서 동일한 관심과 목표를 가진 청년의 커뮤니티를 조성하여, 1인 가구 소외 현상을 낮추고 공동체 의식을 장려함
  - 지역 공동체 안에서 보호와 응원을 받았을 때 느끼는 건강하고 안전한 소속감 형성
  - 지역 내 커뮤니티에서 경험을 쌓고 경험자의 도움을 받아 안전한 발돋움할 수 있는 기반 제공

## 총선정책제안 기독교시민운동연대 참여 단위 소개

### 기독교환경운동연대

기독교환경운동연대는 산업화로 인한 공해가 사회 문제로 등장한 1982년 '한국공해문제연구소'로 첫발을 내딛었습니다. 1997년부터는 기독교환경운동연대로 조직을 확대개편하여 부설기관인 (사)한국교회환경연구소와 함께 기독교 신앙을 바탕으로 '교회를 푸르게 가꾸고 세상을 아름답게 만드는' 운동을 펼쳐가고 있습니다.

<http://www.greenchrist.org>  
02-711-8905 greenchurch@hanmail.net

### 기독교윤리실천운동

(사)기독교윤리실천운동은 복음에 합당한 윤리적 삶을 살아가는 정직한 그리스도인, 신뢰받는 교회가 되도록 섬기며, 정의롭고 평화로운 사회를 만드는 것을 사명으로 하는 시민단체입니다. 자발적불편운동/ 교회신뢰운동/ 좋은사회운동/ 청년운동/ 청년센터WAY/ 좋은나무 웹진 등의 활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https://www.cemk.org>  
02-794-6200 cemk@hanmail.net

### LifeHope 기독교 자살예방센터

(사)생명문화 라이프호프는 자살예방 활동을 통해 상처 입고 소외된 이웃들을 섬기고 개인과 사회의 생명 가치를 회복하기 위해 설립되었으며 교육, 연구, 유가족 지원 및 상담 등의 활동을 통해 사회 일반의 공익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https://lifehope.or.kr>  
02-2632-2005 lifehope21@hanmail.net

### 좋은교사 GOOD TEACHER

(사)좋은교사운동은기독교교사를 깨워 좋은교사로 세우고 기독교적 운동을 전개함으로써 복음으로 다음세대를 책임지고 국민에게 희망을 주는 교직사회를 만들며 교육과 사회를 새롭게 하고자 하는 기독교사 단체 연합 운동입니다.

<https://www.goodteacher.org>  
02-876-4078 jimgal@naver.com



**기독법률가회**는 법률 직역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인정하고 선포하며, 기독 법률가로서의 정체성을 확립하고 대안적인 삶의 모델을 세워나감으로써,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기독 법률가들의 운동입니다.

<http://www.clf.or.kr>  
010-2886-6112 clfkorea@gmail.com



**영등포산업선교회**는 노동 현장에 복음을 전파하며 정의와 평화를 위한 선교적 사명을 수행합니다. 일하는 사람들의 고통을 눈물로 보듬어 안고 그들과 함께 어려움을 헤쳐 나가며, 소외되고 억압당하는 노동현장에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실현하기 위해 헌신하고 있습니다.

<https://www.ydpuim.org>  
02-2633-7972 ydpuim@gmail.com



**희년함께**는 모두에게 평등한 토지권을 보장하는 지공주의(地公主義)에 기초한 토지가치세제(Land Value Taxation)를 실현하여 더불어 사는 사회공동체를 세우고, 남과 북이 평화롭게 통일하도록 자본주의와 사회주의를 희년에 기초한 공정국가대안체제로 통합하도록 힘쓰는 운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https://www.landliberty.org>  
02-736-4907 hgakor@hanmail.net

**윤환철 활동가**는 한반도평화연구원의 연구위원이며 전 남북나눔운동 교육국장으로 대북, 통일, 한반도 등 분야에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ynhc@nate.com

담당 사무국 02-794-6200 ccmk@hanmail.net 김현아 사무국장(기윤실)



**2024년 제22대 총선(국회의원선거)**  
**정책·비전 제안을 위한 기독교시민운동연대**

